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1-13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방안 연구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옥준필(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은구(한 남 대 학 교)

통 일 연 구 원

머 리 말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국제적인 환경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통일환경은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이에 따른 학계의 학술적 연구와 정부차원의 실무적 준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준비에서 인적자원과 관련한 직업교육훈련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본 연구는 분단된 우리 나라의 현실과 최근 변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인식하면서 그 동안 남북관계의 불안정과 불신을 줄이고, 상호 평화공존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남북 연합단계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남북한 연계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사실 남북한은 반세기가 넘게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 동시에 모든 분야의 이질화를 초래하는 민족적 비극을 이어오고 있다. 직업교육훈련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남북한의 직업교육훈련분야는 제도와 정책, 체제와 과정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통일과 민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남북한은 상호 신뢰감 구축을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를 통한 남북한간 보완 및 기능적 파급효과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남북한 연계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우선 남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향후 북한의 개방 정도와 성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남북한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재정적 부담에 기초한 연계가 바람직할 것이다. 연계의 주요 영역은 직업교육훈련 추진의 주체적인 측면에서 교육훈련기관과 정부 및 기업·종교단체·NGOs·국제기구 등의 역할을 들 수 있고,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한 모든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훈련 대상의 연계와 상호 공동으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비와 기자재 지원도 남북한간 연계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정책적으로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를 위해서

전담기구의 설치와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가 필요하고, 시범적으로 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국 남북한간 평화공존과 남북연합단계 추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는 당분간 남한의 지원을 통한 연계가 주를 이루고, 북한은 이를 수용하여 북한 주민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남북한의 신뢰감 축적과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파급효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본 연구 결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남북한의 평화공존 정착과 남북연합 단계를 추진하는데 일조가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 및 관계자들에게도 미진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연구에 협조해 주신 국내외 관계자와 전문가 및 공동연구진들에게 감사드린다.

2001년 11월
연구책임자 강 일 규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1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산하 7개 국책연구기관과 2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요 약

지난 세기는 동서간의 냉전과 이데올로기에 따른 남북한의 반목과 경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상호 공감대의 형성과 통일시대를 이룩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민족의 당면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와 목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변화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안과 발표는 대부분 상호 의견의 불일치와 북측의 일방적인 파기로 무산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포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한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이 점차 증진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화해 협력의 분위기와 더불어 남북한 평화공존의 확보와 연합단계로 진일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분단의 경험을 겪은 국가들이 통일과정에서 보여준 사례는 각기 환경의 차이와 역사·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그 결과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의 경우도 외국의 사례와 다른 방식의 통일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은 평화적이고 단계적이며, 민족적 화해와 연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우리의 모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경제협력과 함께 상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민족적 경쟁력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즉 남북한간 평화공존과 함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분야의 하나가 바로 상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라고 볼 수 있다.

□ 북한 직업교육훈련의 특성과 동향

첫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당의 역할 강화와 중앙과 지방 및 산업체의

연계를 들 수 있다. 북한의 노동당과 정부 당국은 소위 혁명과 건설의 수요에 의하여 매 시기마다 직업교육훈련의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직업교육훈련사업을 완전히 국가교육사업 안에 두고 있으며, 또한 국가에서 책임지고 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은 중앙과 지방 및 산업체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국가의 교육경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에서 기초교육과 기술교육의 연계 강조이다. 북한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소위 문화수준이라고 하는 기초 능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야만 근로자들이 기술교육을 더욱 잘 받을 수 있으며, 문화기술수준을 제고하여야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습득하여 발명·창조를 하고, 근로자계급의 역사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직업교육의 다양화와 업여교육 및 정규교육의 연계 강화를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각 지방의 조건과 직장근로자들의 지식수준에 의하여 다양한 형식의 직업교육을 조직하고 있다.

넷째, 기술교육과 사상교양의 결합이다. 북한의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은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사상교양에 관한 과목과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직업교육훈련에서 사상교양과목의 비중을 일반학교 교육정도로 중시하고, 직업교육훈련에서 각종 강습회, 강의회, 자습회 등을 통해 간부들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학습교육과 재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기술교육과 관리교육의 결합 및 간부교육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은 간부들의 정치사상수준, 과학기술수준, 경영관리수준의 제고에 큰 관심을 갖고, 각급·각 유형의 간부 재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양성교육과 장기적인 연수교육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섯째, 기술(자격)심사제도의 도입을 통한 고찰(심사)와 승급(혹은 강급)의 연계 추진이다. 북한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함과 동시에 소위 기술고찰(기술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승급 혹은 강급(기술심사제도)에 활용하고 있다.

□ 남북한의 직업기술교육과 자격 체제 비교

○ 교육 전반의 비교

먼저 남한과 북한의 교육 이념 및 목표를 비교해 보면 유사성보다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남한은 민주주의 교육 이념을 지향하고, 북한은 공산주의 교육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남한은 교육 기본법에서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공민으로서의 자질,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에 기여할 것을 교육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한과 북한의 교육 제도를 비교해 보면, 학교 단계별 교육 연한에 있어서 남한은 초등 교육 6년, 중등 교육 6년, 고등 교육 4년인데 비하여, 북한은 초등 교육 4년, 중등 교육 6년, 고등 교육 4(6)년으로 초등학교 단계가 남한보다 2년 짧게 편제되어 있다. 의무 교육 연한에 있어서는 남한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인데 비하여 북한은 유아 교육 높은 반 1년부터 고등중학교까지 11년으로 남한보다 2년이 더 길다.

유아 교육 단계에서 남한은 개인의 성장 발달을 중시하고 자율 선택적 교육으로 의무 교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공산주의적 인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의무 교육에 포함시켜 국가 사회적 지원을 통해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중등 교육 단계에서 남한은 전기와 후기를 각각 3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은 전기와 후기 구분 없이 6년 동안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다.

고등 교육 단계에서 남한은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합 대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목적으로 특성화된 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 체계로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발달해 있다. 남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내 기술 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북한에 비해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다. 남한은 계속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교육 기관이 발달해 있다.

한편으로 남한과 북한의 교육과정 및 내용을 보면, 남한은 주지주의적

학습 능력의 함양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에, 북한은 실제 생활에서의 응용 능력을 중심으로 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진리 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 창조적 활동과 합리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교육 행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과 북한 모두 중앙 집권적인 교육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 교육 자치를 지향하여 많은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교육 행정을 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교육 행정의 전문성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교육 행정의 전문성보다는 당의 정치 방향을 우선시 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경우 지방의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데 반해 북한은 통합되어 있다.

○ 직업기술교육 체제 비교

남한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교양적 차원에서 기초적인 직업기술교육을 하며, 중등 교육 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단계부터 졸업 후 직업 세계에 취업하고자 하는 실업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직업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반해 북한은 의무 교육 단계인 고등중학교 때까지는 기초 직업기술교육에 중점을 두며 중등 이후의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전문 직업기술교육을 한다.

학교 급별로 전문 직업기술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를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늦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령으로 보면 같은 시기(남북한 모두 만 16세)에 전문적인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교육 내용을 보면, 일반 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의 결합을 통한 통합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 초·중등 교육에서 직업기술교육을 소홀히 다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한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기초 직업기술교육을 강조하는 추세여서 엄밀한 의미에서 남북한 모두 본격적인 전문 직업기술교육은 중등 교육 이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등 교육 이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직업기술교육을 보면, 남한은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을 중심으로 산업대학·일반대학에서 실시하

고 있고, 북한의 경우에는 유사하게 고등전문학교·단과대학·종합대학 및 중앙급 대학 등에서 본격적인 전문 직업기술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는 계속 직업기술교육 차원에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고등 교육 체계를 중시하여 공장대학·농장 대학·어장대학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해, 남한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교육 훈련 기관으로 사내 기술 대학이나 기술 대학 등이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에는 공공 기관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직업훈련원·기술계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기술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자격 체제 비교

남북한 자격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은 응시자격과 자격의 등급에 있다. 북한의 경우 장기간의 현장경력을 갖고 있어도 전문학교 및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기능에서 준기사나 기사 자격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력에 관계없이 현장 실무경력만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은 정부에 의해서 동일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북한은 자격종목에 따라 다양하게 자격의 급수가 나누어져 있다.

검정방법에 있어서도 북한의 기능 자격은 필기시험과 실제 작업의 평가를 통해 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학교 및 양성소를 졸업하지 않고 경력을 통해 자격에 응시하는 종목 가운데에는 실기만 실시하는 종목도 있으나 자격 수준의 특성상 이론보다 실기능력의 중요함을 이해한다면 남한 자격으로 인정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남한의 경우도 대부분 기능자격은 필기와 실기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미장·조적·건축목공·비계 등의 종목과 같이 이론적인 면보다 기능이 중요한 분야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준기사 및 기사 자격은 졸업 시 해당분야에 대한 이론시험·외국어·논문등을 통과해야만 무급의 자격 취득하고, 급수의 자격은 1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학력·자격·산업현장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자격체제를 남한의 자격체제와 비교하였을 때 두 체제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북한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남북한간 각 분야에서 추진 된 연계의 시사점

첫째, 남북한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계에서 정치적 변수가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사례가 대부분 비정치적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교류 및 협력에 변수로 작용하는 정치적 환경의 변동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그 동안 남북한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계는 지속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일회성이거나 한 두 번의 접촉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남북한간 연계의 연례화나 제도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남북한 평화공존과 연합단계를 추진하는데는 우선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하다. 문화·체육 등 비정치적이면서 남북한 주민의 접촉을 통한 민족적 동질감 확보에 수월성이 높은 분야일수록 연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남북한 연계는 우선 남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남북한 연계는 남한의 재정적 지원과 양보가 연계를 성사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의 경제적·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후에는 연계에 필요한 비용을 상호 대등하게 지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에서 남북한의 당국자간 접촉을 통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교류 및 협력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책임 있는 관계자간 양해각서 등 관련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여섯째,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의 선정과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일곱째, 남북한간 각 분야의 연계는 우선 상호 적극적인 자세와 신뢰감

의 구축이 필요하다.

□ 방안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는 북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한 연계가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남북한 주민 모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참여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재정적인 측면은 지원과 연계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의 결과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는 주체적 차원에서 크게 기관과 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과 단체는 남북한 연계의 주체가 됨으로 이들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정부, 기업, 종교단체, NGOs, 국제기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연계를 위해서 어느 장소를 사용하느냐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즉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가하는 문제이다. 물론 북한이나 남한의 생산현장이나 교육훈련기관이 가장 좋겠지만, 현재 남북관계 및 기타 변수로 인하여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연변지역이나 개성공단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휴전선지역을 통한 연계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차원의 연계는 북한 당국에서 당 성향 등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제한된 요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훈련과정 차원의 연계는 남한의 직업훈련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 양성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재훈련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산업수요에 의해 예상되는 훈련직종과 북한체제에서의 사회진출 분화과정 등을 고려하여 양성훈련·향상훈련·주부 및 여성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연계 직종 선정은 북한의 개방 속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 북한의 개방 수준에 따라 우리 나라의 과거 1970년부터 21C 현재의 산업

이 모두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도 그 준비를 위해 단순 임가공에서 단순조립·중화학 공업·신기술 및 지식기반분야 이르기까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계층별 다양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장기적 발전측면에서 특히 신기술 및 지식기반분야의 인적자원개발에도 강한 희망을 표할 것으로 보여진다. 남북한 연계를 위한 각 직종별 교육훈련내용은 북한 수준에 맞게 별도로 과정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될 수 있으나, 현재의 북한 경제·사회·교육수준 등 광범위한 연구 검토가 요구됨으로 현 단계에서는 남한 내에서 기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에 준용하여 운용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훈련방법 차원의 연계는 교육훈련을 남한 교사가 주체가 되어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훈련방법도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론, 실기 4단계 지도 기법에 의한 모듈 훈련방법이 유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 장비분야의 연계는 북한의 인력양성을 위한 기존 장비나 북한 내 생산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으나, 북한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관련 장비가 매우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북경협(또는 제3국)에 의해 신설되는 현장의 장비와 크게 상이할 것으로 보아 남한에서 대부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훈련교재는 훈련교과내용이 남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의해 실시될 것이므로 남한에서 기개발된 교재활용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남북한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외국어·언어·기초학력 수준 등이 고려된 교재로 재편되었을 때 훈련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교사의 연계는 현재 남한의 유경험 교사(구조조정시 퇴직자 포함) 및 현장경력자 중 유자격자를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나, 학습성과를 한층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준비된 교사가 참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재교육 및 훈련 후 배치(교사 또는 보조교사 형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한 연계는 북한 당국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북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은 체제의 안정을 우려하여 모든 교육훈련에서 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 연계는 기술·기능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직업의식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남북한간 관련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 목적	4
2. 연구문제 및 내용	5
3. 연구 방법과 범위 및 한계	6
가. 연구 방법	6
나. 연구 범위와 한계	7
4. 연구의 배경과 연계 접근 틀	9
가. 남북한 평화공존 문제의 제기	9
나.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10
다.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남북한 연계를 위한 접근 틀	15
II.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17
1. 남북한 관계의 변화	17
가. 남북한 관계의 전개양상	17
나. 국민의 정부 : 대북포용정책의 추진과 남북정상회담	22
다. 남북한 관계의 전망	30
2. 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기본적 환경 요인	36
가. 교육의 기본 이념과 목표	37
나. 교육 제도	39
다. 북한 인구	44

Ⅲ. 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전반적 분석	45
1. 북한 직업교육훈련 제도와 정책의 변천 및 방향	45
가. 해방 초기의 직업교육훈련	45
나. 6.25전쟁시기의 직업교육훈련	46
다. 「산학 연계형」근로자 기술교육강화시기의 직업교육훈련	46
라. 「전사회의 인테리화」실현의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훈련	47
2. 북한 직업교육훈련 체제	49
가. 일반학교 교육단계의 직업교육훈련	49
나. 공장·광산·기업소 기능공학교의 직업교육훈련	51
다. 「일하면서 배우는」교육체계의 직업교육훈련	54
3. 북한 직업교육훈련 기관과 시설 및 내용	57
가. 기능공학교와 각종 업여전업학습반	57
나. 근로자고등중학교	58
다. 공장대학과 공장고등전문학교	58
라. 농장대학과 어장대학	59
마. 간부 재교육체계	59
바. 일반대학의 야간 및 통신학부	61
사. 재직 통신연수생 교육	61
아. 텔레비전방송대학	62
자. 기타 직업교육훈련 기관	62
4. 북한의 자격 체제	63
가. 자격 체계	63
나. 자격 종목 및 등급	65
다. 자격 응시 요건 및 검정	67
라. 자격의 운영 및 관리	70
5. 북한 학생들의 진로 경로	71

IV. 북한 직업교육훈련의 특성과 남북한 비교 74

- 1. 북한 직업교육훈련의 특성과 동향 74
 - 가.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당의 역할 강화와 중앙과 지방 및
 기업체의 연계 74
 - 나. 직업교육훈련에서 기초교육과 기술교육의 연계 강조 75
 - 다. 직업교육의 다양화와 업여교육 및 정규교육의 연계 강화 75
 - 라. 기술교육과 사상교양의 결합 76
 - 마. 기술교육과 관리교육의 결합 및 간부교육의 강화 76
- 2. 남한과 북한의 직업기술교육과 자격 체제 비교 분석 77
 - 가. 교육 전반의 비교 78
 - 나. 직업기술교육 체제 비교 81
 - 다. 자격 체제 비교 83
 - 라. 학생들의 진로 경로 비교 86

V. 남북한의 각 분야에서 연계 사례와 시사점 88

- 1. 남북한 연계사업의 의의 88
- 2. 남북한 연계사업 현황 88
 - 가. 학술·교육 분야 88
 - 나. 문화예술분야 90
 - 다. 종교분야 91
 - 라. 체육분야 91
 - 마. 언론·출판분야 94
 - 바. 관광분야 95

VI.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상호 연계 방안 99

- 1. 연계의 기본 목표 99

가. 새로운 직업의식 전환 유도	99
나. 전반적인 직업능력 향상	99
다. 기능 및 기술 수준의 적정화	100
라.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	100
2. 연계의 기본 방향	101
가. 인도적 차원의 북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101
나. 정치적 성향의 배제	101
다. 다양성과 연계성의 존중	102
라. 남북한 인력의 구조적·질적 발전을 통한 보완효과 극대화	102
3. 단계별 지원 연계 전략	103
가. 1단계 -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를 위한 상호 교류의 추진과 활성화	103
나. 2단계 -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103
다. 3단계 - 북한 인적자원의 활용과 관련 제도의 정착화	104
4.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연계의 주요 방안과 내용	104
가. 직업교육훈련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및 개최의 정례화	104
나. 직업교육훈련 대상의 상호 교류를 통한 연계	105
다.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기준과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을 통한 연계	106
라. 직업교육훈련 직종 및 훈련기간의 공동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연계	106
마. 직업 훈련 내용 및 방법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연계	107
바. 훈련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연계	108
사. 직업교육훈련 관련 교재의 공동 개발 및 활용과 교원 연계 ..	108
아.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훈련 주체간 연계	109
자. 자격의 상호 연계	110

VII. 결론 및 정책 제언	112
1. 결론	112
2. 정책 제언	114
가. 전담기구의 설립	114
나. 전문인력의 양성	115
다. 재정 확보	115
라. 북한 당국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관련 협정 체결	119
마. 타 분야 및 재외동포와 연계	119
바. 시범기관의 선정과 준비	120
참 고 문 헌	121
부 록	130

표 차례

<표 II-1>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남북회담 개최현황	26
<표 II-2>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29
<표 II-3> 북한 내각의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과업	31
<표 III-1> 북한의 자격 종목 및 등급(북한 이탈 주민 면담 조사 결과) 66	
<표 IV-1> 남한과 북한의 교육 전반 비교	79
<표 IV-2> 남한과 북한의 직업기술교육 체제 비교	82
<표 IV-3> 남한과 북한의 자격 체제 비교	85
<표 V-1> 금강산 관광사업 협력사업 승인현황	96
<표 V-2> 월별관광객현황	96
<표 VI-1>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비교	105

그림 차례

<그림 I-1>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접근 모형	16
<그림 II-1>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의 추이	28
<그림 II-2> 북한의 교육 제도	39
<그림 II-3> 북한의 교육 행정 체계	43
<그림 III-1> 북한의 학력에 따른 자격 체계	64
<그림 IV-1> 남한과 북한의 자격 체제 비교(기능·기술분야)	8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지난 세기는 동서간의 냉전과 이데올로기에 따른 남북한의 반목과 경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상호 공감대의 형성과 통일시대를 이룩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민족의 당면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와 목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변화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은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독일은 통일이 되었다. 우리와 같은 분단 상황을 겪고 있는 동북아 대륙의 경우도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성공적인 발전을 지속함은 물론 대만과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상호 교류·협력과 함께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다양한 측면에서 긴밀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분단 이후 정부 차원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구체적인 방안¹⁾을 제시해 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안과 발표는 대부분 상호 의견의 불일치와 북측의 일방적인 파기로 무산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많이 변화되고

1) 남북한 통일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은 1970년대 초반 국제냉전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는데, 1970년 8월 15일 박정희대통령은 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평화통일구상선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가 있었고, 1981년 전두환 정부는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1988년 노태우 정부는 “7·7특별선언”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도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였다.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포용 정책²⁾을 추진하면서 남북한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이 점차 증진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북포용 정책의 주요 내용 중에서 남북한간 교역이나 경협 등 민간기업의 상업적 거래는 정경분리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개방하고 있다.³⁾ 이러한 경제분야는 모든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현실에서 남북한의 경제적 협력은 민족생존과 번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남북한은 과거와 같은 상호 비방과 경쟁에 따른 손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와 국가경쟁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여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현실적이며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제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짐은 물론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화해 협력의 분위기와 더불어 남북한 평화공존의 확보와 연합단계로 진일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분단의 경험을 겪은 국가들이 통일과정에서 보여준 사례는 각기 환경의 차이와 역사·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그 결과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의 경우도 외국의 사례와 다른 방식의 통일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은 평화적이고 단계적이며, 민족적 화해와 연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우리의 모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경제협력과 함께 상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민족적 경쟁력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즉 남북한간 평화공존과 함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2) 대북포용 정책의 추진 배경은 탈냉전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의 변화와 현실적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남북한간의 현격한 국력의 차이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원칙은 첫째,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둘째, 흡수통일 배제, 셋째, 남북간 화해협력 적극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통일부, 2000).

3)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간에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의 장점과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토록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을 기대하는 것이다(통일부, 2000).

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분야의 하나가 바로 상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기업들이 북한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성공 여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민간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몇몇 기업은 이미 북한에 진출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대북 진출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⁴⁾이다. 이러한 추세는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와 더불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에 진출한 기업이 어떤 형태이든 북한지역에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북한 근로자들을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북한 근로자들의 직업교육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진출한 기업의 경험 및 조사에 의하면, 북한 인력의 기능·기술 수준과 노동생산성 및 작업몰입도의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강일규, 2000). 예외적으로 몇 기업은 북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및 작업몰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 혹은 민간차원에서 북한 근로자의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정책 및 양성방안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넘어 상호 연계를 통한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는 남북한 모두 부존자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주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의 경우, 일체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힘은 바로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점은 앞으로도 남북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지식기반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는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증진과 활성을 위하여, 앞으로 다가

4) 예컨대 현대와 삼성·LG 등 대기업은 물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회원사의 경험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을 통일국가시대의 국가경쟁력확보 차원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전략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본문은 이러한 연구의 배경에서 남북한간 평화공존을 확보하고, 나아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연합단계에서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이를 수행할 경우, 영향을 미치는 직업교육훈련분야의 환경을 살펴보고,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실태와 남북한간 비교 등을 통해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주요분야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연구 목적

이상의 연구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남북연합을 통한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 동안 남북한은 오랜 분단의 세월과 상호 불신 등으로 항상 평화를 위협하는 과정을 겪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국내외적 통일환경의 변동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통일의 단계적 접근으로 남북한간 평화와 연합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남북한간 평화공존과 연합단계를 추진하는데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한반도의 통일환경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협동적으로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일문제는 특정 영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통일준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즉 독일의 경우 갑작스런 통일에 따른 각 분야의 준비 부족으로 엄청난 통일 비용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각 영역에서 미리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직업교육훈련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예상하여 이 분야에서 상호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준비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셋째, 정부의 대 북한 정책에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각 부처는 통일원을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적 준비를 구상하고 있지만, 직업교육훈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한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전문 영역별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등에 활용할 목적이 있는데,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남북한 연계 방안도 이러한 목적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그 동안 남북한간 오랜 세월의 분단으로 인하여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직업교육훈련분야도 남북한간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가 필요한데, 본 연구를 통하여 남북한의 구체적인 직업교육훈련분야의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여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및 내용

본 연구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연구 문제와 내용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의 개념과 규범적 성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남북한 평화공존 문제와 남북연합의 개념은 남북한 당국과 관련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협동연구에서 이 문제를 좀더 명확히 하고, 더불어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남북한이 연계하여 상호 평화공존과 연합에 기여할 수 있는 당면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이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연계를 통한 상호 보완·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직업교육훈련 환경 검토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 및 상호 교류협력은 주변 환경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간 관계 변동과 산업발전 및 제반 기간 시설 등은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남북한이 연계하는데 방법과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는 우선 북한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은 어떠한 정책과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제도와 체제는 어떠한지, 또한 그 시설과 수준과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요한 문제는 자료와 정보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실태를 파악하여 남한과 비교하는데 있다.

넷째, 그 동안 남북한이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 혹은 협력을 하면서 각 분야의 상호 연계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여러 변수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단발적인 협력과 교류 및 연계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과거 남북한간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계의 경험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남북한 연계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다섯째,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남북한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남북연합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과 범위 및 한계

가.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문헌 연구의 주요 내용은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직업교육훈련 및 기존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남북한 교류협력과 연계 등 개념적 논의와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정리하였다. 또한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남북한의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가능한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문헌 수집 방법은 국내외의 도서관 및 북한연구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수

집하였고, 특히 북한 관련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지역의 학자와 전문가를 활용하여 북한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에 대한 규범적 논의를 하였다.

(2) 국내외 출장을 통한 면담

국내외 출장 및 방문 면담은 연구진이 북한 진출 기업을 방문하고, 담당자와 면담을 통하여 북한의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실태와 경험 및 문제점 등을 수렴하였다. 또한 중국 지역을 방문하여 중국 및 조선족 학자와 전문가 등을 통한 면담과 자료·의견 등을 수집하였다.

(3) 전문가 협의회 개최

전문가 협의회는 연구의 방향과 내용 등에 관한 의견 수렴, 인적자원개발 및 북한문제전문가를 통한 의견 수렴, 탈북자 및 북한 방문 경험자를 통한 북한의 실태 파악 등이다.

(4)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본 연구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방안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간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각 분야별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업교육훈련분야는 중국 연변지역의 전문가와 국내외의 관련 학자들이 참석하여 토론하였다.

나. 연구 범위와 한계

(1) 연구 범위

우선 연구의 기본 전제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연합을 추진하기 위한 것

이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 정부 당국자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은 없지만,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연합단계 추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즉 남북한 관계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방안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의 확대를 통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가 주 범위가 된다.

시기적으로는 현 단계에서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 남북연합단계를 기초로 한다. 즉 앞으로 가능한 통일단계 등은 연구에서 제외한다.

(2) 연구의 한계

우선 연구 대상의 특수성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의 분단 현실은 같은 분단국이지만 독일과 중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배경과 진행 과정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간 전쟁이 없었고, 중국은 지리적으로 해협을 끼고 있어 군사적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 동족간의 극단적인 전쟁을 치렀고, 휴전선을 경계로 항상 긴장과 대결의 양상을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북한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데 북한 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와 분석은 물론 정보와 자료의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북한의 인구 통계 조차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특히 직업교육훈련과 관계된 최근의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의 한계가 있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등 제3국의 유관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지만, 이 역시 충분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 변화에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제안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한의 대북 및 대남 정책의 변동으로 남북한간 각 분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서 제안되는 방안들이 유동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의 남북한 교류 활성화는 우리 경제

의 여건과 기업의 경영전략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예측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방안 제시가 규범적이거나 실행 가능성에 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4. 연구의 배경과 연계 접근 틀

가. 남북한 평화공존 문제의 제기

남북한 평화공존의 실현은 다른 측면에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는 지난 1945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양 진영간의 적대적 대결 상태가 지속되면서 남북한과 주변 4강의 관계가 뒤엎혀지면서 만들어져 온 것으로 최근 탈냉전의 추세와 교차하면서 상대적으로 준 냉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이종석, 1999). 이는 한반도 문제가 이중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가 당위적으로 ‘민족내부의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것이다(동북아평화연구회, 1999).

결국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해체된다는 것은 남북한간에 정치 군사적인 적대적 대결이 종식되고 평화정착이 실현된다는 것을 뜻하며, 바로 이러한 상황의 실현을 위하여 한국정부가 대북 정책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햇볕 정책(Sunshine Policy) 즉,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다.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과는 달리 대북 포용정책에서 포용 그 자체는 대북 정책의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전쟁억지 및 비핵화를 통한 국가안보, 교류 확대를 통한 화해·협력,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또는 과정이다.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이라는 대북 포용정책의 실천과제는 바로 이러한 한반도의 이중성을 반영한다(동북아평화연구회, 1999).

과거 남북관계를 ‘적대적 의존관계’라고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남북관계의 지향은 남북한 평화공존이며 공영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교류, 이산 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 각 부문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간의 화해·협력의 추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항목이 있어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음은 국제법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합제(confederation)와 연방제(federation) 개념을 살펴보고,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본다.

(1) 국제법상의 연합제와 연방제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국제법상 독립국가간에 상호 대등한 국제법적 지위를 보유하면서 공동 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조약에 의해서 합의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는 국가 결합 형태이다. 따라서 연합정부(a confederal government)가 갖는 권한은 제한되고 구성국 정부(the component parts)들이 공동 이익의 추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만 국한된다. 결국 국가연합의 구성국 정부들은 그들의 주권과 독립권을 국가연합에 이양함이 없이 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국 정부는 완전한 주권국가로서 국제인으로 남아 있다(G. Fenwick, 1983: 46, 241-242).

국가연합은 대개 구성국들 상호간에 ①군사적 불안감 해소나 동맹의 필요성, ②외세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요구, ③경제적 이익, ④지리적 인접성, ⑤인종, 종교, 문화 등의 유사성, ⑥의사소통 범위의 증대 등의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다(조민, 2001: 3).

위와 같은 국가연합의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연합은 구성국간의 필요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국가연합 내에 가입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둘째, 외교적 주권을 연합정부에 이양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연합의 구

성국들은 국제법 주체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셋째, 국가연합의 구성은 구성국간의 합의(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그 변경도 구성국들이 합의를 해야 한다.

넷째, 국가연합 하에서 각각의 국민들은 공통 국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자 구성국의 국적을 유지한다.

다섯째, 국가연합 정부는 독자적인 군사권을 가지지 않고 필요할 경우 각 구성국가에 필요한 병력을 요청하여 연합군을 조직한다.

이에 비해서 연방국가(federation)란 국제법상으로 복수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국가이며 중앙정부가 완전한 국제법상의 주체적 능력을 갖고 지방정부는 극히 제한된 특정사항에 관해서만 국제법상의 능력을 갖는 복합적 국제인이다. 다시 말해 연방국가의 지방정부는 국제법상 국가로서의 자격을 잃고 연방정부만이 국가의 자격을 갖게 되는 국가결합의 한 형태이다 (I. Bernier, 1973: 13).

역사적으로 연방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연방제는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⁵⁾ 모든 연방제에 공통된 몇 가지 일반적 기초적 특징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제 특징의 하나는 성문 헌법(written constitution)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는 정치제도상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의 분배를 성문의 형식으로 규정하게 되므로 성문헌법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대외적 대표권과 군통수권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보유하며 지방정부는 대외적 대표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정부만이 전쟁을 선언하고 정치적 조약을 체결하며 동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방국가내 지방정부간의 무력충돌은 국제법상의 전쟁이 아닌 내란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외국의 개입은 내정 간섭이 된다(H. Kelsen, 1967: 263-264).

5) 실제로 존재하는 연방국가 또는 국가연합의 명칭은 극히 다양하며 명칭만으로 연방국가인지 또는 국가연합인지를 판별하기는 어렵다. 명칭의 구체적인 예는 양홍모,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분석” 『민족지성』(1988.4) 85~86쪽; 동국대 안보연구소, 『안보연구』 제13호(1983) 21~38쪽

셋째, 연방정부의 권력구조는 국가연합보다는 강력하게 중앙집권화 되었지만 단일국가(unitary state)보다는 중앙과 지방간에 일정한 권력분권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연방국가 전체에 대한 대내적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정부도 자체의 내부적 통치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통치권의 분할문제가 제기된다(W. L. Gould, 1957: 200).

넷째, 국가연합과는 달리 연방국가내 지방정부들은 자의적으로 탈퇴할 수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 탈퇴할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승인아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물리적 강제가 뒤따른다.

다섯째, 연방국가의 국민 전체는 공통 국적을 가지며 연방국가는 연방국민 전체를 직접 지배한다.

이상에서 보는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형태는 국가성립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역사상 국가연합은 대부분 국가성립의 과도기적 형태로서 중앙조직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종종 연방국가의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연합의 주요한 예로서는 대륙회의가 존재했던 1776~1788년까지의 미국, 1815~1866년까지의 독일, 그리고 1813~1847년까지의 스위스(Vernon Bogdanor, 1987: 129)의 경우에는 국가연합에서 연방으로 전환된 역사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1958년 이집트, 시리아의 아랍공화국과 북예멘의 결합으로 형성된 통일아랍공화국(United Arab States)은 3년만에 해체되고 말았다. 현재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국가 연합적 성격을 띠고 출발했으나 국가간 통합 수준이 강화되면서 연방국가형태로 나아가고 있다(조민, 2001: 3-4). 현재 연방국가를 취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스위스 외에도 소련,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다.

(2) 남한의 '국가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남한의 통일정책은 김대중정부에 와서는 '햇볕정책,' '포용정책,' 또는 '화해협력정책,'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국회에서 공포된 1989년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1994년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반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3원칙 3단계’의 통일론이 주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 남북연합 → 통일헌법을 통한 통일민주공화국 수립이라는 과정이었으며 김영삼정부의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형태로 단계를 확정하여 대동소이하다.

김영삼정부에 이은 김대중대통령의 「3원칙 3단계 통일론」은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 하에서 ①남북연합(1연합 2정부) → ②연방제(1연방 2지역자치정부) → ③완전 통일(1민족 1국가 1정부)을 예상하고 있다(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 1994: 46-52).

남한에서 주장하는 남북연합의 형태에 대해서 통일원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 단계로서 국제법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국가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주권 국가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국가연합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통일원, 1992: 85). 이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은 대외적 측면에서 국제법적 주권 국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연합은 분명히 연방과는 다르지만,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이 통일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일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협력의 범위를 넓혀 간다는 의미에서는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연합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연합은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공존 공영의 통일과정의 정치적 표현으로서 다분히 통일의 중간단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 주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주장한다⁶⁾.

한편 북한의 연방제 방안은 1960년 과도적 형태로서의 남북한 연방제에

6) 통일원은 남북연합을 ‘commonwealth’로 규정하고 ‘commonwealth’에 대해서 “각 주권국가가 공동의 이익이나 이상 추구를 위하여 상징적 통일체로서 정치·경제 등 공동의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국제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국내법 또는 국내법에 준하는 특수한 법적 유대를 갖춘 특별한 결합체”라고 정의하였다. 통일원, 위의 책, p. 85; 남궁영, “남북한 통일방안 재고찰: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경제』 (2000년 10월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p. 87에서 재인용.

서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the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DCRK)』안으로 정착되었는데 여기에서 연방제는 단일 국호에 의한 UN가입과 단일의 민족연합군 조직 등의 시정방침은 모두 국제법상의 연방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⁷⁾ 그러나 이념적 의미에서 북한의 연방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에 차이가 있다. 『정치사전』에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연방제(실례로 소련)는 민족문제해결의 중요한 수단인 하나로서 민족자결권의 원칙에 기초하여 매개 민족의 자주적인 발전을 보장한다. ...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방제(실례로 미국)는 형식상 성원국들에게 일정한 주권을 인정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국내외적인 모든 문제를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연방적인 주권기관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단일화된 ‘연방제’에 불과하며 강대 민족부르주아지가 약소민족들에 대한 억압과 약탈을 보장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정치사전, 1973: 313)고 주장한다.

2000년 6월 15일 『남북한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1991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표명했는데 이는 연방제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연합제가 도입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1991년 5월 3일 윤기복 최고인민회의 조국통일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남북한의 2개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잠정적으로 외교 군사권을 보유할 수 있다.”(『조선일보』, 1991.5.5)고도 했다. 특히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 된다고 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북

7) 북한의 『정치사전』에 의하면 ‘연방제 국가’란 “나라의 전 지역에 걸쳐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과 그의 최고집행기관이 있으면서 해당 지역에서 일정한 범위의 주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집행하는 성원국들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313.

한이 완전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종합해 본다면 북한의 통일정책은 ①낮은 단계의 연방제(국가연합) → ②연방제(『고려민주연방공화국』) → ③완전한 통일 국가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①남북연합(1연합 2정부) → ②연방제(1연합 2지역자치정부) → ③완전 통일(1민족 1국가 1정부)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다.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남북한 연계를 위한 접근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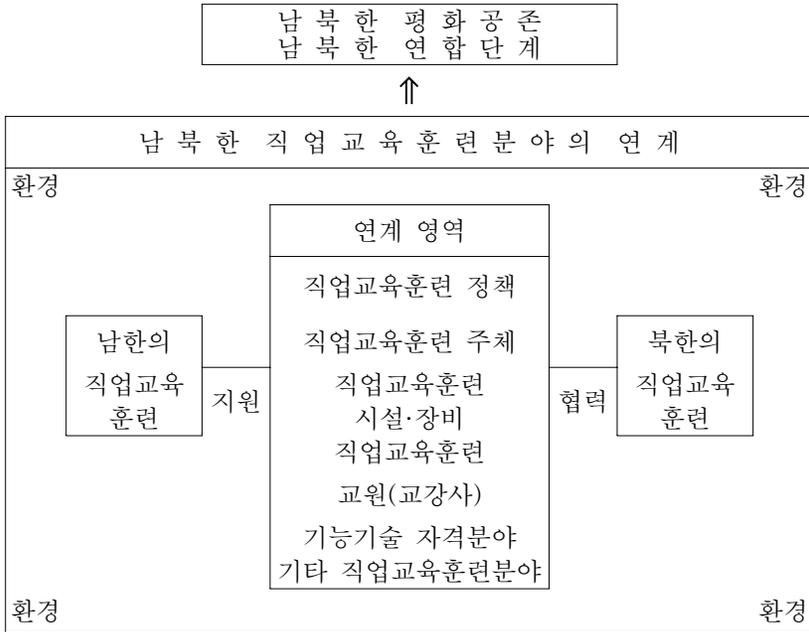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는 목표와 수단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즉 남북한 평화공존과 연합단계는 목표가 되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남북한간 협력과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직업교육훈련분야는 이러한 수단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아래 접근 틀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연계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제도와 정책, 직업교육훈련 주체, 시설 및 장비, 교사 및 학생 등이 연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주요 요인들은 남북한간의 이질적인 특성을 극복하고, 상호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상호 신뢰감 확보와 보완성 추진 및 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통한 남북한간 평화공존과 통일을 향한 연합단계 등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환경은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교육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 연계는 현 단계에서 볼 때, 남한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룰 것이고, 북한은 이에 대한 협력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⁸⁾. 따라서 연계 방안으로 제시되는 내용의 대부분은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남한이 얼마나 현

16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방안 연구

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또한 북한은 이러한 지원에 대하여 얼마나 수용·협력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보인다.



<그림 I-1>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접근 모형

- 8) 그러나 연계의 본래 의미는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인적·물적 등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전 분야에서 상호 보완이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호혜적인 원칙이 중요함으로 여기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지원과 협력의 관계는 향후 수정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접근 모형을 제시할 밖에 없는 현실이 남북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II.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환경(environment)은 정책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외부변수들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어느 정책이든 정책문제가 발생하여 정부나 정책결정 단위가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검토한 후 하나의 최적 안을 선택(결정)하여 이를 집행하며, 집행된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정책문제의 해결과정은 독립적 혹은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문제에 관련된 주변의 상황변수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남북한 연계도 남북한의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환경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사람과 장소,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 욕구와 아이디어, 재난, 인성) 등을 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많은 변수 중에서 남북한 관계 변화와 북한의 내부적인 요인 중에서 직업교육훈련과 가장 밀접한 일반교육 부문과 인구문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남북한 관계의 변화

가. 남북한 관계의 전개양상⁹⁾

해방이후 90년대 말까지 남북관계는 ‘적대’와 ‘갈등’, ‘대결’의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왔으나 한편으로는 ‘의존’과 ‘화해’, ‘협력’의 관계도 함께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실로서의 남북관계는 당시의 국제정세와 남북간 역학관계 등의 환경적 요소에 따라 달라져 왔으며, 특히 다소

9) 남북관계의 전개양상에서 남한측의 입장은 대부분 통일부의 통일백서를 참고로 했음을 밝힌다.

시차는 있지만 크게 볼 때 국제적인 냉전흐름의 확산·조정·해체 과정과 궤를 같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 냉전과 분단질서의 등장, 1945-1953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정부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UN 결의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또한 만일 북한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통일을 위해서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이는 정부수립 당시의 국제법적, 도덕적 우월성에 기초하여 북한당국을 철저히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방법론적으로는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특히 UN을 통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북한지역에서의 자유선거 실시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반면 북한은 45년 이후,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대남정책을 펴왔다. 레닌 시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이 전술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이 가능한 북한을 민주기지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남한을 적화통일 한다는 정책이다 (전현준, 2001).

(2) 냉전의 확산기: 정전협정 ~ '70년대 초반

우선 분단 이후 '70년대 초반까지는 국제냉전의 확산과 함께 남북한이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가운데 치열한 대결로 일관했던 기간이라 하겠다.

1960년 4·19혁명으로 출범한 장면 정부도 ‘UN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하는 등 약간의 변화는 보였으나, 기본적으로 이승만 정부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초기 ‘반공태세의 재정비·강화’와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에 주력한다는 즉, 『선 건설, 후 통일』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64년 1월 10일 연두교서를 통해 정부의 통일방안은 UN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통일, 실지회복에 의한 국토통일임을 밝히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1966년 1월 18일 국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근대화야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목표이다. 통일의 길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첫 단계가 된다” 고 밝히고 있다.

(3) 냉전의 조정기: '70년대 초반 ~ '80년대 후반

그러나 '70년대 초반 국제냉전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1968년 7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1970년대에 들어 미·중, 일·중의 접촉, 미·소·일·중 4국간 새로운 세력균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1960년대 우리 경제성장에 힘입어 남북간 역학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갖게 됨에 따라 대북정책도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평화통일구상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어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를 북한적십자회가 수락함으로써 분단 26년만에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남북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 양측의 당국자간 비공개 접촉과 상호방문을 거쳐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간 합의 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남북대화 진행과정에서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이른바 대화환경의 개선, 군사문제의 우선 해결 등을 요구함으로써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남북관계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북한은 1973년부터 그 이전의 남북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직접적 대화에 의한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남한의 ‘신식민지론’이 자리잡고 있다. 남한은 ‘미국의 종속국’이기 때문에 ‘실질적’ 힘을 가진 미국과의 대화만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유지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전현준, 2001).

1981년 3월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을 통

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1982년 2월 1일 후속 실천 조치로서 20개항에 걸친 구체적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1984년 9월 8일 북한의 대남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우리측이 수락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84년 11월 15일 남북경제회담을 필두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열리고, 특히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이후에도 남북간 대화는 계속되었으나,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내세우며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처럼 이 시기 남북관계는 국제냉전이 조정국면에 들어섬과 함께 남북관계도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한 시기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기본적으로 체제경쟁에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모색하였던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그 결과 때로는 대화를 통한 화해분위기가, 때로는 북한의 도발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는 ‘대결과 대화가 교차되는 관계’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4) 냉전의 해체: '80년대 후반 ~ 문민정부

1980년대 후반 국제냉전이 해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도 또 한번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우선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 급속히 진전되는 등 세계적으로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국제 냉전의 해체에 부응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1988년 「7·7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또한 그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1989년 9월 11일 대

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또한 제7차 회담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분야별 부속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북한이 우리의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1993년 1월 29일 모든 남북당국 사이의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김영삼 정부도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였으나,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제재조치에 ‘서울 불바다’, ‘전쟁 불사’ 등의 발언으로 위협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후 미·북한간에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94.10.21)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일단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한편,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호응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톤 직접 지원 등 북한 동포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전개하고 대북 경수로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북한의 회피적인 자세와 한·미의 북한에 대한 ‘조용한 붕괴정책’이 상호 작용하여 남북관계는 경색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나. 국민의 정부 : 대북포용정책의 추진과 남북정상회담

(1) 대북포용정책

(가) 추진배경

1980년대 말 이후 탈냉전의 흐름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확산되면서 세계는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 등 장벽을 넘어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상호 실리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남북한을 비롯하여 미·일·중·러 등 주변 4국은 협력이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상호 실리를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국가이익에 긴요하다는 입장에서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7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는 남북의 경제력 격차는 남한의 대북정책에 일종의 자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¹⁰⁾은 이와 같은 역사적 인식에 기초하여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 한반도문제 해결의 모든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관계의 기본틀을 불신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려는 시도이다. 대북포용정책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체제는 이미 실패했고 변화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지만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점진적 변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며, 이미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10) 대북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은 과거에 햇볕정책(Sunshine Policy)으로 불려졌었다. 햇볕정책이란 이솝우화에서 빌려온 용어로서 일본에서는 ‘태양정책’, 중국에서는 ‘양광정책’ 등으로 불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용어다. 햇볕정책이란 용어는 1998년 6월 북한의 잠수정 침투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함 이후 ‘포용정책’이라는 말로 대체해 사용되어 왔다(주정연, 1999).

할 때까지는 대남혁명전략과 군사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점과 ‘안보위협은 상존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위협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즉,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부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켜 나가려는 것이라 하겠다(통일부, 2000, 『통일백서』).

(나) 목표 및 원칙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이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즉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닫힌 북한사회를 열고 북한주민들의 대남 적대의식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대남 적대정책을 포기하게 하고 반세기에 걸친 대결과 불신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간 화해협력 적극추진을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¹¹⁾

11)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잠수정 침투, 서해교전 등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사건들이 있었으나,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였다. 역대 정부들이 북한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체체경쟁의 대상 혹은 붕괴하고 흡수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온 것과 비교해보면 현정부의 대북관은 과거와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해야 할 것이다.

(다) 추진경과

국민의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어 왔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위기 관리를 통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포용정책은 ‘분단의 안정적 관리’와 ‘분단 해소를 위한 평화정착’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분단의 안정적 관리 측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²⁾ 이 과정에서 미·일 등 우방국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대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도록 권고하여 한반도 냉전종식을 추진해 나가는 전기를 마련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다.

당국간 교류협력은 1998년에 차관급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1999년에도 비공식 접촉과 공식 차관급회담이 각각 열렸다. 비록 성공적인 결실을 맺지는 못했으나, 이러한 회담은 이전 몇 년 동안과 비교해 볼 때,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1999년의 차관급당국회담은 서해교전 사태로 결렬되기는 했으나 남북이 의제로 기본합의서 이행문제를 상정하는 데까지 의견접근을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2)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가)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는 분단이후 남북간의 최고 당국자가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혔다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합의·발표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협

12) 이종석(2000: 256-262)은 그 동안 대북정책이 일부 감성적 여론이나 정치적 야심에 이용됨으로써 일관성을 잃고 혼란되어 왔다고 평가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관된 포용정책의 추진은 국민들과 주변 국가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상대방인 북한에게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토록 함으로써 그들의 돌출행동을 상대적으로 억제해왔다고 주장한다.

력시대의 본격적 개막이라는 성과를 거둔데 있다. 특히 한반도 해결의 주체가 남북한이라는 주체적 접근은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하겠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가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먼저 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신뢰형성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보여진다. 둘째로는 포스트 김일성 시대에 걸맞은 김정일의 위상체고 및 새로운 노선정립의 필요성, 셋째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개선의 상호 보완적 성격에 관한 북한 지도부의 경험적 인식, 네 번째로 북·미 관계 중심의 한반도 문제 전개 방향에 대한 중국 및 러시아의 우려,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남북경협 불가피성을 들 수 있다(오승렬, 2000).

(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정상회담과 함께 남북관계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었다. 첫째, 남북한간 과잉 긴장고조의 제거와 현실주의적 협상 국면의 개시이다.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간에 고조되어 있는 과잉 긴장고조 상태를 제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현실주의적 갈등의 차원으로 환원함과 동시에, 남북간에 의사소통 통로를 확보하고, 현실주의적 차원에서 남북간의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협상과 거래의 방법을 탐색하고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박형중, 2000).

먼저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남북관계의 성과는 남북한 당국간 회담이 다양화되고 정례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북당국간 관계가 과거의 불안정과 불투명을 벗어나 정상화의 궤도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차례에 걸친 남북장관급회담,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방지 논의를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김용순 특사 방문,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남북경협실무접촉 등 지난 한 해의 남북당국간 회담은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I-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해에는 무려 25회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이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것이다.

<표 II-1>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남북회담 개최현황

년도	1998년	1999년	2000년
회담 회수	총 2회	총 2회	총 25회
회담 내용	○남북당국 대표회담(1회) ○대북구호물자 제공관련 남북적십자대표 접촉(1회) ※4자 회담(2회)	○남북차관급 당국회담(2회) ※4자 회담(3회)	○남북정상회담(1회) -남북특사접촉(3회)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5회) -통신·보도 실무접촉(2회) -의전·경호 실무접촉(1회) ○남북장관급회담(4회) ○남북국방장관회담(1회) -남북군사실무회담(3회) ○남북경협실무접촉(2회) ○남북적십자회담(2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1회)

자료: 통일부,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산가족의 상봉 및 생사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산가족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단의 가슴아픈 상처이다. 게다가 이산 1세대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의 문제는 다른 어떠한 사안보다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하겠다.

남북공동선언 3항에서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한 후, 남북은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및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8.15~8.18에 제 1차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진 이후 2차례 더 이루어졌으며, 서신교환도 한차례 이루어 졌다.

지난 정상회담이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이산가족들의 상봉과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은 비록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남북 모두가 그 필요성과 의미를 절감하고 정례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하겠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협 추진방식에 대한 정치적이고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상회담은 남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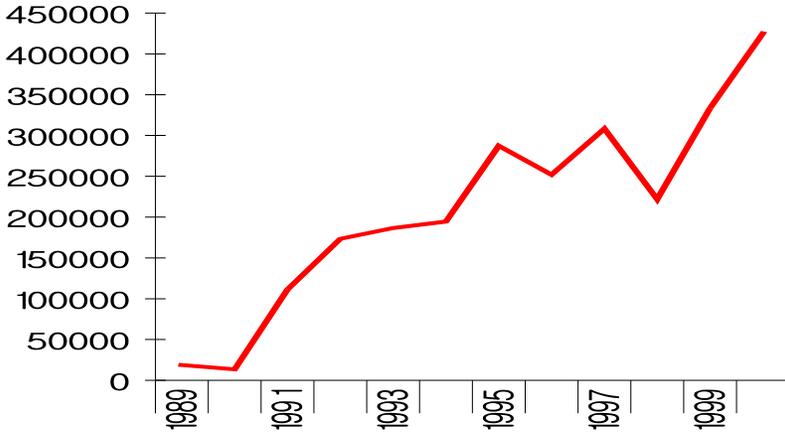
협 확대가 남북한 상호 위협 배제와 불간섭 정책을 기초로 추진된다는 것, 궁극적으로 남북한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실제로 2000년도 남북교역액은 4억2천5백만 달러 규모로 '99년 3억3천3백만 달러 규모에 비해 27.5%가 증가한 것으로 '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사상최대규모이다¹³⁾. 이러한 교역 증가의 주된 원인은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와 농림수산물 등 북한산 물품반입이 증가하는 등 거래성 교역이 29.2% 늘어나고, 비료 등 대북지원 증가와 경수로 사업 및 기타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비거래성 물자의 반출이 25.3%증가('99년 대비) 했기 때문이다.

<그림 II-1>과 <표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교역은 89-90년까지는 시험단계로서 1천만달러 대에서 시작되었다. 1991년부터 본격화된 교역은 1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1997년에는 3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냈다. 1998년도에는 한국의 IMF관리체제 영향을 받아 2억 달러대로 감소하였으나 1999년 이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4억2천5백만 달러를 넘어섬으로써 '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사상최대의 규모를 기록하였다.

13) 그렇지만 2000년 남북간의 교역은 4억 2514만 달러로 한국 전체교역규모의 약 0.13%에 지나지 않는다. 내국간 거래로서 북한의 대외무역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교역규모 면에서는 중국, 일본에 이어 제3위의 규모이며 북한의 수출시장으로서는 일본에 이어 제2위의 시장이다.

<그림 II-1>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의 추이 (단위: 천 달러)



<표 II-2>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Unit: \$1,000)

년도	반 입 (Import)			반 출 (Export)			합 계 (Total)		
	건수 Cases	품목수 #of Items	금액 Amount	건수 Cases	품목수 #of Items	금액 Amount	건수 Cases	품목수 #of Items	금액 Amount
1989	66	25	18,655	1	1	69	67	26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4	105,719	23	17	5,547	323	61	111,266
19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19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1	186,592
1994	827	73	176,298	495	92	18,249	1,322	159	194,547
1995	1,124	105	222,855	2,720	174	64,436	3,844	265	287,291
1996	1,648	122	182,400	2,980	171	69,639	4,628	280	252,039
19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385	308,339
19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810	486	221,943
1999	3,089	172	121,604	3,421	398	211,832	6,510	525	333,437
2000	3,952	203	152,373	3,442	505	272,775	7,394	647	425,148
2001.1	253 (284)	81 (66)	9,316 (11,148)	164 (232)	97 (154)	6,348 (18,988)	417 (516)	170 (205)	15,664 (30,136)
2001.2	212 (333)	58 (69)	8,178 (13,104)	200 (183)	123 (108)	12,965 (10,006)	412 (516)	174 (169)	21,143 (23,111)
2001.3	333 (340)	82 (74)	13,281 (12,089)	306 (246)	173 (128)	26,475 (10,631)	639 (586)	242 (184)	39,756 (22,720)
소 계	798 (957)	114 (101)	30,775 (36,342)	670 (661)	252 (238)	45,788 (39,625)	1,468 (1,618)	342 (311)	76,563 (75,967)
총 계 Total	16,763		1,649,321	18,947		953,459	35,710		2,602,780

주 1 : () 안은 해당 해의 전년도 동기 실적임.

2 : '95년 교역금액에는 대북 쌀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자료 :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이러한 남북교역은 지난해 말 남북한이 투자보장 등 4개항에 합의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마련은 지난 시기 남북경협 불안정성을 떨쳐버리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협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현저히 완화되고, 북한이 미국 및 일본 등 서방국가와 적극적 관계개선에 나설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새로운 형성에 따른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 완화, 남북간의 과잉긴장의 제거와 현실주의적 협상의 개시, 남북경협을 위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공감대 형성 등 이 모든 사항은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한층 전향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박형중, 2000).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우리는 앞으로도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국간 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시킴으로써 남북간 상호 의존도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간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상호 실리를 확보하고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식량난 등 북한동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다. 남북한 관계의 전망

(1) 북한의 정세

올해 들어서 북한의 행보는 남북관계의 진전과는 별도로 더욱 빨라지고 있다.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북한은 ‘신사고’를 주창하며 보다 실용적인 경제정책, 적극적인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은 한편으론 김정일 체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의 발로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론 변화의 필요성을 북한지도부가 실감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표 II-3>은 북한 지도부의 변화된 시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표 II-3> 북한 내각의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과업
(2001년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내용)

	내 용
2000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라의 강성부흥을 위한 경제적 토대 마련 - 경제건설, 석탄공업, 기초화학공업, 철도수송, 농업생산, 경공업기술 등에서 큰 성과 이룸
2001년 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이념, 우리식 정치체제, 우리식 경제체제’를 고수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강력한 국가경제력 건설 ○인민경제의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건, 먹는 문제 해결 등 인민생활 향상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경제를 활성화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 운용방법을 ‘우리식’으로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에서의 근본적 전환 ○세계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국제기구 사업에 적극협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년 공동사설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과감한 실리추구 원칙을 강조 ○일한 것만큼 보수를 주는 분배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경제관리체계 속에서 장려금, 상금 등 물질적 인센티브의 적극 시행을 시사 ○금년도 「연간계획」을 종전과 달리 최고인민회의에 상정, 심의함으로써 「전망계획」 차원으로 비중 격상 ※ 과업수행을 위한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를 강조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제4차 회의결과,” 2000.

현재 북한은 미국의 대북강경론과 MD강행 등 보수적 세계전략에 반발하고 있으며, 일본과도 과거배상문제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북·미간 북·일간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특히 유럽과의 외교관계수립을 통해 미·일의 압박에 대항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반도 전문가인 우드로 윌슨 연구센터의 셸리그 해리슨 선임연구원은 북한 내에서 현재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협상파인 ‘비둘기파’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북한 내에선 여전히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라며 “김 위원장과 행정부 각료들을 비롯한 비둘기파는 남북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개발 등에 적극적이지만, 보수파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지난해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된 이후, 북한 내부의 강경파가 득세하기 시작했고, 부시행정부가 장기간의 대북 정책 검토에 들어간 뒤에는 온건파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 등 6.15공동선언의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연합뉴스』, 2001.6.19.).

(2) 남한의 정세

그 동안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포괄적 접근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일관되게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억지와 대량 살상무기 개발문제 해결이라는 단기적 정책목표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북한의 변화와 개방여건 조성, 평화체제 전환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추구해 왔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사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들끓어 올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적인 대북정책은 야당과 보수주의자들의 동의를 쉽사리 이끌어내지 못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현정부의 대북관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대승적 차원의 합의 도출보다는 우려와 비판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대북 정책을 둘러싼 정책과 이념의 차이, 그리고 주도권 다툼은 남북관계의 소강상태와 더불어 국민들의 남북관계 전망에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계기가 되었다.

‘속도조절론’이나 ‘피겨기론’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 가운데서도 다수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특히 젊은 세대의 눈길이 따듯해졌다. 전국교직원노조가 지난해 7월 전국 중·고교생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 북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10명 가운데 3~4명 정도가 “부정적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길은 기대만큼 순탄하지 않았다. 3차 장관급회담 이후 북은 핵심적 요청사항인 전력지원이 벽에 막히자 남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부시 미 행정부의 등장은 남북의 행동 반경을 극도로 좁혔다. 올 3월 제5차 장관급회담이 무산된 뒤 남북은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앉을 계기를 좀처럼 찾아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김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의 영예를 안았지만, 남북관계에서 보면 그 영광은 반쪽의 것이었다. 또 남쪽에서만 보더라도 그것은 정쟁의 대상일 뿐이었다(『한겨레』, 2001.6.11).

그러므로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이러한 ‘불안한 공존’을 ‘안정적인 공존’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대북포용정책의 기초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가속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한사회 내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념과 의지가 필요하다.

(3) 주변국들의 대한반도정책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동북아에서 국제적 주도권을 증대시켰고, 향후 동북아질서는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 탈냉전의 신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부시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기존 클린턴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부시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정책조정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부시행정부는 원칙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수용하되, 향후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상호주의와 검증을 요구하는 방향의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묶어두고 북·미 대화의 의제로 재래식 무기문제를 거론하는 미국의 행동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국은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간에 실질적인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나)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일본의 전통적인 한반도 정책은 한편으론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연동되어 왔으며, 한편으론 평화를 지향하되 통일은 바라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현재의 북·일 관계 개선 역시 북·미 관계에 연동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해 국교수립을 위한 북·일간 회담이 재개된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보상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가 일괄 타결될 경우 북·일 수교 역시 진전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일본의 우익화와 관련하여 역사교과서 왜곡과동으로 남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당분간 북·일 관계의 급진전은 불투명하다고 여겨진다.

(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화해에 대한 적극지지를 바탕으로 과거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회복하는 한편, 남북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 확대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MD추진, 미 정찰기의 추락사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러시아와 미국, 중국과 미국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 나라간의 관계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4) 남북한 관계의 전망

최근 남북관계는 그 속도가 늦추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는 화해·협력의 시대가 개막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남북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한 실질협력 관계가 증진되고 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경의선 연결사업이 추진되는 등 질적으로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새로 들어선 미국의 부시행정부와 북한이 마찰을 빚고 있고, 남한 내에서도 일부 언론을 비롯한 보수론자들의 대북정책 비판이 거세어지면서 남북관계는 주춤거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현실주의적 정책과 개혁개방정책노선을 지향, 신중한 변화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1월에 있었던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대내적으로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사례를 적시함으로써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신사고와 태세를 고무하는 한편, 대남관계개선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의지를 재공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양영식, 2001). 또한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대외적 외교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더 이상 고립되어있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과 북 공히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으로써, 남북화해와 협력의 폭과 깊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말 마련한 투자협정 등의 4대 합의서는 경협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북한의 SOC확충 등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남북경협이 안정적 토대 위에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실현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문제) 등 한반도 냉전체제의 근본적인 종식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한은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국제적 협력지원을 적극 이끌어 내야한다. 먼저 북·미 관계가 우선시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북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데, 남한당국은 북·미 관계의 추이를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협조로 4자 회담 재개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사안별로 진행속도의 완급조절과 해결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입장차이로 갈등과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정세의 흐름, 북한의 변화, 남북관계의 발전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남북한의 화해·협력의 흐름은 역사적 대세라고 보여진다.

2. 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기본적 환경 요인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일반교육과 관련한 기본 내용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업교육훈련은 가장 가까운 일반교육과 연관성이 많고, 이러한 일반교육과 관련한 기본 이념과 교육제도 등은 직업교육훈련 체제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문제도 직업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환경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즉 북한의 일반교육 제도 및 이념의 변화는 바로 직업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남북한간 연계에 과급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북한의 일반교육과 관련한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고, 동시에 북한의 인구를 기본적 환경 요인으로

14) 사실 직업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넓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반적인 영역들을 환경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기본적 환경으로 북한의 일반교육 제도와 이념, 그리고 인구 등을 살펴보았다.

로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가. 교육의 기본 이념과 목표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교육 이념과 목표도 기본적으로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시켜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간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온 사회를 노동 계급화, 혁명화, 인텔리화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고, 교육의 원리로서 ①이론과 실천 또는 교육과 생산의 결합 원리, ②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결합 및 병진, ③당적 지도의 강화, ④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결합, ⑤혁명 유자녀 및 특기자 우대 원칙에 근간을 두고 운영된다.

또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교육 정책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우월성·공산주의 사상 교육의 우선 원칙을 모든 교육과정에서 강조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산당 혹은 노동당 등, 일당 독재의 집권적 통제에 의해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전면적 기술 교육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3가지는 공산주의 교육 정책의 기본 특징이며, 그 구체적인 적용이나 표현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리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전용선, 1993).

북한이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목표를 살펴보면,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1992년에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제43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교육 이념과 목표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가, 자·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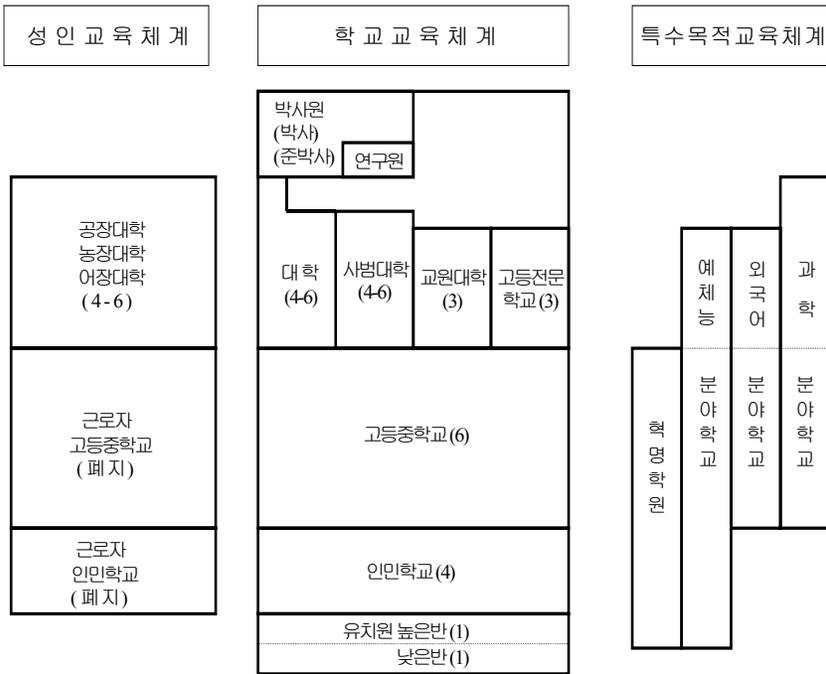
이를 위해 ‘국가는 인민 교육 사업과 민족 간부 양성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 교육과 생산 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고(제44조),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 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 교육과 사회 과학, 기초 과학 교육의 과학 이론 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제46조)’고 명시하여, 교육과 생산 노동,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을 결합하는 교육 원리와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 전 의무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 교육을 현대 과학 기술 발전 추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키며(제45조),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 대학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고(제47조), 사회 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하며(제48조), 학령 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제49조)’고 규정하여, 교육의 기본 방침으로서 11년제 의무 교육, 무료 교육, 사회 교육, 학령 전 유아 교육 등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의 책무성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교육의 기본 방향과 지침을 집대성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제도, 교육 기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이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교육 원칙으로서 혁명화, 로동 계급화, 공산주의화의 3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 사업의 원칙으로서 당성, 로동 계급성, 주체, 교육과 혁명의 결합을 제시하고 있다. ‘당성’과 ‘로동 계급성’은 교육의 계급적 성격을 말하며, ‘주체’는 교육이 북한 자신의 환경과 조건에 알맞아야 함을 뜻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은 혁명 실천과 결합함으로써 공산주의 혁명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혁명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한만길, 1997).

나. 교육 제도

북한의 교육 제도는 학교 교육 체계, 성인 교육 체계, 특수 목적 교육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교육 체계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정규 교육 체계이며, 성인 교육 체계는 일하면서 배우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 체계이다. 그리고 특수 목적 교육 체계는 예체능, 과학, 외국어, 혁명유자녀 등 특수 목적을 위한 별도의 교육 체계라고 할 수 있다(<그림 II-2> 참조).



[그림 III-1] 북한의 현행학제

<그림 II-2> 북한의 교육 제도

자료: 한만길(1998). 북한 교육 현황 및 운영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북한의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정규 학교 교육 체계는 기본적으로 4-6-4(6)제로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6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령 전 교육 단계인 유치원은 낮은 반 1년, 높은 반 1년으로 구분하여 높은 반 1년은 의무 교육 단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인민학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초등 교육 단계로서 수업 연한은 4년으로 우리보다 짧다. 고등중학교는 우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한 형태로서 우리와 달리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없다. 1972년 학제 개편 당시에는 중등반 4년, 고등반 2년으로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있었으나 현재는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등 교육 단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북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등 교육 단계까지 진로를 나누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이수하도록 하여 우리와 같이 실업 계열의 중등학교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1974년부터 의무 교육 기간을 취학 전 1년(유치원 높은 반: 5세),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합쳐 모두 11년으로 설정하고 무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우리가 초등학교 6년을 포함하여 중학교 3년까지 총 9년을 의무 교육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2년이 더 긴 것이다.

정규 고등 교육 기관으로는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3년제의 고등 전문학교(또는 전문학교), 4~6년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등의 일반 대학, 3년제 교육 대학, 4~5년제의 사범 대학 등이 있다.

북한의 교육 제도에 있어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정규 학교 체계 이외에 일하면서 배우는 성인 교육 체계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두고 '전 인민의 인텔리화'를 위한 사회주의 교육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로서 운영되는 교육 기관으로는, 근로 성인을 대상으로 산업체 부설 형태로 운영되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고등전문학교 등이 있고, 방송 통신 매체 활용 형태로 운영되는 김일성방송통신대학, 텔레비전방송대학,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부설의 야간 및 통신 교육 기관 등이 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 단계에도 미학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인민학교와 근로자 고등중학교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폐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 주민의 학력 수준

이 전반적으로 중등 교육 단계까지 높아져 별도의 교육 기관이 필요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는 일반 학교와는 별도로 특수 목적을 위한 학교 체계가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분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수 목적 교육 체계의 학교는 영재 교육 기관과 특수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재 교육 기관으로는 11년제로 운영되는 무용학교, 음악학교, 조형예술학교가 있고, 7년제인 외국어학교, 4년제인 체육학교, 과학 영재 학교인 제1고등중학교가 있다. 특수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는 11년제로 운영되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등이 있다.

최근 북한은 2001년부터 컴퓨터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 제1고등중학교와 금성 제2고등중학교에 ‘컴퓨터 수재 양성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각급 학교 및 재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4>와 같다.

**<표 II-4> 북한의 각급 학교 및 재학생 현황
(1999년 6월현재)**

학교별	학제(년)	학교수(소)	재학생수(만명)
유치원	2	17,000	73.00
인민학교	4	4,886	153.60
고등중학교	6	4,774	214.60
고등전문학교	3	430	18.80
대학교	4-6	310여개 (113)	41.40 (18.00)

주: 1. 자료는 북한교육성 자료임(공장대학).

2. 유치원은 1년은 의무교육임.

3. ()안은 공장대학 학생과 학교수임(농장대학, 어장대학 포함).

자료: 손계림(1999). 김정일의 ‘선군 정치’와 ‘수재-엘리트’ 교육 체제. 김정일 체제 관리론의 분석과 전망.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 창립 1주년 국제 학술 대회 발표 논문집.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교육 제도는 우리와는 달리 특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김동규(1999)는 북한 교육 제도의 특징을 ①취학 전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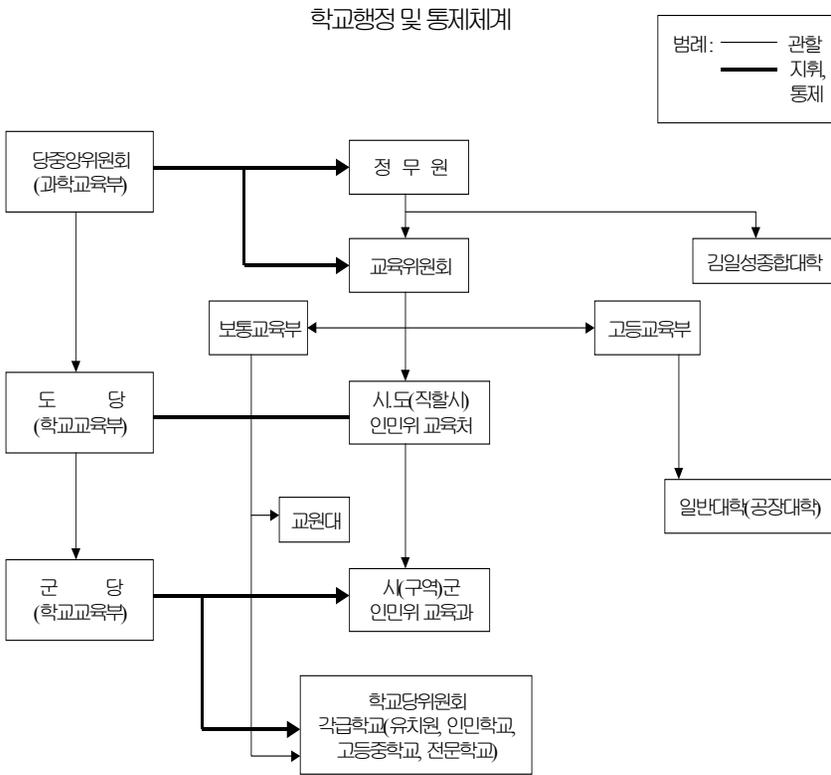
육의 발달, ②자연 부락 단위의 소규모 초등 교육 기관의 발달, ③예체능 계의 조기 교육 기관의 발달, ④사상 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 기관의 발달 (김일성고급당학교, 금성정치대학), ⑤산업별 기술 교육 제도의 발달 (1956년경부터), ⑥각종의 조직과 집회를 통한 사회교육의 발달, ⑦ 1986년부터 각 시도에 ○○제1고등중학교라는 이름의 천재 교육 기관의 설립, ⑧제1학기(4. 1~8. 31), 제2학기(9. 1~3. 31), ⑨김형직사범대학(5년제), 일반사범대학(4년제), 교원대(3년제), ⑩종합대학(김일성대학, 김책공대, 고려 성균관대), ⑪일하면서 배우는(이론과 실천의 결합 원리) 성인 고등교육기관의 발달(공장 고등전문학교, 공장·농장·어장대학), ⑫이공계 대학(약 70%)의 발달, ⑬초·중등학교의 남녀 공학의 원칙, ⑭1990년대 들어 10개의 중심 대학의 설치, ⑮각급 학교 명칭의 김일성가계 인명화(김정숙 유치원, 김일성대학, 김혁직사범대 등) 1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한만길(1998)은 북한 교육 체제의 특징으로 다음의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북한의 교육 체제는 소정의 학력을 인정하는 교육 체계로 일반 교육 체계, 성인 교육 체계, 특수 교육 체계로 나뉘어져 있다. 특수 교육 체계에 해당하는 예능계와 특수 계층의 자녀를 위한 교육은 초등 교육 수준에서 별도로 선발하고 특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②북한의 의무 교육 연한은 11년간이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의 노동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무료 교육의 대가를 학생들이 직접 치르고 있는 셈이다. ③조기 교육의 제도화를 일찍부터 시도하고 있다. ④일년 중 일정 시간이 학생의 노동력 동원을 위해 공식화되고 있는 점이다. ⑤당의 교육 통제 기능의 강화를 제도화하고 있다. ⑥고등교육의 정책면에서 고등전문학교와 단과대학의 수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교육 행정 체계에 있어서도 우리와는 다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II-3> 참조). 노동당의 과학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지도·통제한다. 당은 행정기관과 일선 각급 학교의 학교당 조직¹⁵⁾을 통해 교육 정책을 관장한다. 그리고 내각(행정부)의 경우

15) 북한의 각급 학교에는 학교당위원회와 소년단 및 김일성주의청년동맹이 조직되어 있다.

중앙의 교육성은 각급 도(직할시) 및 시군 행정기관(지방인민위원회) 및 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 행정을 집행한다. 또한 교육 행정은 지방 행정 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앙의 내각 교육성에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있으며, 고등교육부는 대학 교육을 담당하고, 보통교육부는 고등중학교 이하의 교육 행정을 분담한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시·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교육처와 시·군·구 인민위원회의 교육과의 지도·감독 하에 각급 학교에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통일교육원, 1999).



<그림 II-3> 북한의 교육 행정 체계

자료: 통일교육원(1999). 북한 문제 이해: 실태와 변화 가능성.

다. 북한 인구

북한은 지난 1964년 이후 인구통계를 일절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89년 이례적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에 46년부터 87년까지의 인구통계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는 북한 중앙통계국과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가 공동 주관하는 새로운 주민등록제에 의거해 1970년 이후의 인구총계에서 군인과 건설돌격대와 같은 유동인구를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이어 1994년 1월 광복이후 최초로 인구센서스를 실시, 그 결과를 ‘인구일제조사자료집’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중앙통계국이 UNFPA의 도움을 받아 12일간 호별방문을 통해 조사한 이 자료에 따르면, 1993년 12월 31일 자정 현재 북한인구는 2121만 명이고, 여자 100명당 남자 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94.9%로 집계됐다.

국가정보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001년 현재 북한인구를 2225만 명, 평균수명은 남자 62.9세, 여자 67.35세로 추정했다. 국정원은 “북한 인구추계에서는 북한이 발표한 ‘93년 인구센서스’를 기초로 하여 북한당국의 국제기구 보고자료와 국제회의 발표자료, 귀순자 면접조사 등 가능한 모든 자료가 활용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미중앙정보국(CIA)은 2001년 7월 1일 현재 북한인구를 2196만 8228명, 평균수명은 남자 68.04세, 여자 74.15세로 추계했다. 하지만 산출 근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밖에 UNFPA·세계보건기구(WHO)·헤리티지재단 등 해외의 여러 기관·단체와 기구들도 나름대로 인구추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 인구통계와 관련한 북한당국의 발표자료가 외국의 추계치보다 신뢰할만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박사는 “북한이 통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발표되는 통계수치마저 ‘우리식’으로 작성하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99년 9월 대전에서 열린 국제통계포럼)고 지적했다(김광인기자, 2001.10.14. kki@chosun.com).

Ⅲ. 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전반적 분석

북한은 해방 이후 소위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기술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줄곧 강조하여 발전시켜 오고 있다. 북한은 직업교육훈련에서 직장 근로자의 문화수준의 보급과 제고뿐 아니라 직업교육훈련의 형태와 규모 및 수준의 다양화에 관심을 갖고 직장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을 제고시키고 있다.

본문에서는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 방안 도출에 앞서 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를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북한 직업교육훈련 제도와 정책의 변천 및 방향, 둘째로 북한 직업교육훈련 체제, 셋째로 북한 직업교육훈련 기관과 시설 및 내용, 마지막으로 북한 직업교육훈련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밝히려고 한다.

1. 북한 직업교육훈련 제도와 정책의 변천 및 방향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은 국가교육정책의 주요 구성부분으로서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서는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제도와 정책의 변천 및 방향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해방 이후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은 크게 네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제 1단계는 소위 민주건설시기라고 하는 해방 초기의 직업교육훈련, 제 2단계는 6.25전쟁시기의 직업교육훈련, 제 3단계는 산학연계형 근로자 기술교육강화 시기의 직업교육훈련, 제 4단계는 전 사회의 인테리화 실현의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훈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 해방 초기의 직업교육훈련

해방 당시 북한에는 소학교 1,372개교, 중학교 50개교에 중등전문학교 3개교가 있었으며, 고등학교와 대학은 하나도 없었다. 또한 230만 9,089명의 성인문맹자가 전체 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많은

공장과 광산 및 기업소에 기술자가 없었다. 이런 열악한 조건하에서 북한 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문맹퇴치운동과 직장 근로자의 기술교육 사업에 전력하였다.

1946년 5월 25일 북한임시인민위원회 교육국지시 제65호로 『성인교육지도요강』을 발표하여 북한 당국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문맹퇴치운동을 추진하였다. 북한 당국은 근로자들이 생산현장에서 떨어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새로운 성인학교형태를 설립하였다. 한편 1947년 4월 8일에는 『성인교육 및 직장교육 체계에 관한 결정서』를 발표하여 성인교육과 직장교육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이 시기 북한에서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일제 대학에 야간대학과 통신대학을 병설하였다. 1950년 초에 이르러 야간대학 3개교 18개학과, 통신대학 5개교 32개학과에 학생 수는 6,015여명에 달하였다. 즉 이 시기 북한에서는 일제 식민지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직장 근로자들의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6.25전쟁시기의 직업교육훈련

북한에서는 기술간부의 양성과 직장 근로자의 문화기술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6.25전쟁 중에도 직업교육훈련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전쟁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전시교육체제로 개편하고, 직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전선지원사업 가운데서 기술을 학습하게 하였다. 동시에 반년동안의 준비사업을 거쳐 1951년 7월 15일에 평안남도 성천군 군 소재지의 한 공장에 북한의 첫 半工半讀의 공장대학을 창설하였다. 전시 직업교육체계는 전후의 경제 회복에 공헌하였으며, 많은 민족간부와 기술자를 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산학 연계형」근로자 기술교육강화시기의 직업교육훈련

1953년 7월 27일 휴전 후, 북한에서는 교육재건운동이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 전쟁 전, 1950년 1월, 북한에서는 일반대학에 3년제 「노동학원」을 부설하여 혁명자유가족 및 노동자, 빈농출신의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1950년 3월에는 기술전문학교에 야간기술전문학교를 부설하여 15세 이상 근로청년들의 진학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동년 3월에는 정규 중학교와 고등중학교에 야간중학교와 야간고중을 부설하여 사회청년들의 문화수준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기초하에서 1953년 7월에는 원래의 3년제 노동학원을 3년 6개월 제로 연장하였으며, 야간기술전문학교의 학제도 4년제로 연장하였다. 1958년 11월에는 「근로자학교와 근로자중학교를 설립할 데 관한 결정」을 통과하였으며, 이 결정에 근거하여 근로자학교와 근로자중학교를 새로 설치하였다. 1959년에는 소위 사회주의건설 발전의 수요에 의하여 「인민교육체계의 개조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교육체계를 새로 개조하였다. 새 교육체계는 교육과 생산노동,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밀접한 연계를 강조하였으며, 근로자중학교와 통신학교의 졸업생들이 대학시험을 거쳐 고등교육단계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1966년 12월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관한 법령」을 발표한 후, 북한의 직업교육체제는 중대한 변혁을 가져왔다. 즉 모든 성원들이 국민경제의 현대적 생산에 필요한 1가지 이상의 기술기능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70년대에 들어 소위 100만 지식인대군의 분투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종업원 중의 기술원과 전문가의 비율을 부단히 높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1976년에 이르러 전체의 19.2%를 점하였다. 농촌에서는 각 집단농장의 기술원과 전문가의 비율이 1969년의 17.5명에서 1976년에는 55명으로 늘어났다.

라. 「전사회의 인테리화」실현의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훈련

북한은 학교교육의 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의 수요에 따라 직업고등교육도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1960년 9월 1일에 24개교의 공장대학이 개교하였으며, 공장고등기술전문학교도 많이 설립되었다. 1960년에 설립된 공장고등기술전문학교는 47개교에 달하였다. 동시에 일반고등교육기

관에 통신 및 야간대학이 설치·운영되었다. 야간대학교 수는 1959년의 12개교에서 1960년에는 30개교로 급격히 늘어났고, 통신대학교 수도 1960년에는 36개교에 이르렀다. 80년대부터 북한에서는 농장대학, 어장대학, 텔레비전방송대학 등이 연이어 신설되었다. 1985년 이후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의 완전실현은 직업교육사업에서도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었다. 즉 직업고등교육체계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더욱더 커져 갔다. 전일제 일반고등교육체계만으로는 사회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워지자 북한은 직업고등교육체계를 확대하게 되었다. 공장대학을 비롯한 직업고등교육체계를 각 기업소와 단위의 종업원들이 국가의 계획적인 조직 하에 일터에서 고등교육을 받게 하였다¹⁶⁾.

북한은 이러한 노력을 거쳐 9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180만의 지식분자대군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 교육사업의 추진 목표는 「전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 의무화」는 전일제 일반고등교육체계 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우며, 반드시 직업교육의 확대와 사회성원의 교육수준 제고에 의해 실현하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하여 북한에서는 1999년 현재 각종 전문학교 430개교에 41.4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공장대학(농장대학과 어장대학을 포함) 113개교에 18만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¹⁷⁾.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체계를 추진함으로써 양과 질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은 사상·기술·문화 등 3대혁명의 기치아래 모든 사업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청소년들의 기술교육을 강조하여 일반중등교육단계에서 기본기술교육을 실시하

16) 예컨대 룡양광산금광갱의 근로자들은 단체로 공장고등전문학교와 공장대학의 교육을 받았으며, 졸업 후 모두 준기사와 기사가 되었고, 평안남도 양덕군 은하리의 청년분조원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집단적으로 합동농장에 내려가 단체로 성인고등교육체계의 학습에 참가하였으며, 졸업 후 준기사·기사·농예사가 되었다(이영복, 1984: 36).

17) 이 자료는 중국의 사교수가 1999년 6월 30일 북한을 방문했을 때 조선교육성이 제공한 것임.

고 있으며, 학생들이 11년제 의무교육단계에서 현대적인 공농업생산의 기본지식과 현대적인 생산 및 기술 중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교육학습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에서 정치사상교양을 앞세운 기술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은 주체사상, 자력갱생, 당과 정부의 방침·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북한 직업교육훈련 체제

현재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체제에는 일반학교 교육체계에 속하는 중등교육단계의 기본생산기술교육과 고등교육단계의 전문기술교육, 공장·광산·기업소 기능공학교의 직업교육훈련, 「배우면서 일하는」 교육체계에 속하는 산업체 부설형의 직업교육훈련과 통신교육형의 직업교육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일반학교 교육단계의 직업교육훈련

북한의 일반학교 중등교육과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재적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의 성질을 띤 기본생산기술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일반중등교육단계에는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실업계학교가 없다. 그러나 일반중학교에서 실시하는 기본생산기술교육은 종합기술교육에 그치지 않고 직업교육 또는 직업기술훈련의 성질을 띠고 있다. 또한 북한 일반고등교육단계의 고등전문학교, 공업대학 등 실업계 학교에서는 기초기술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일반중학교에서 실시하는 기본생산기술교육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기본생산기술교육은 중등 의무교육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지식교육의 주요한 구성부분이며, 학생들이 현대적인 공농업생산의 기본지식과 현대적인 생산과 기술 중에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중학교 과정에서 물리·화학·생물 등 학과의 실천내용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교육과 생산실제를 결합시켜 오고 있다. 1956년 4월, 북한 노동당 제 3차 대표대회에서는 일반 중학교에 기본생산기술교육방면의 과정을 증설하였다. 초급중학교에서는 「실습」과목을 설치하였으며, 고급중학교에서는 「생산상식」과목을 설치하였다. 60년대에는 새로운 교육체계에 적응하여 일반중학교의 교수계획에서 기초지식교육과 기초기술교육, 이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노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침을 추진하였으며, 생산노동교육과목의 비중을 늘렸다. 1968~1969학년도에는 일반 중학교에 「制圖」, 「생산상식」, 「실습」, 「여학생 실습」과목 등을 증설하였다. 1979~1980학년도의 교수계획으로 보면, 1973~1974학년도에 폐지하였던 「기초기술」과목을 회복하였으며, 이 과정에 「제도」, 「기계기초」, 「전기기초」, 「농업기초」등을 설치하였다. 1985~1986학년도에 이르러 기초기술교육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었다. 예컨대 중학교 5~6학년의 「전자기계」는 필수과목이며, 「자동차」, 「림업」, 「통신」등은 선택과목이다.

현재 북한의 중등의무교육단계의 기본생산기술교육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사회생산과 기술의 전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본원리와 기초지식이다. 여기에는 현대적 생산의 동력학기초원리, 전기기초기술지식, 기계가공의 기본원리, 현대적 기계기술수단의 기초기술지식, 농업생산의 기본원리, 전자공학의 기본원리 등이 포괄된다. 이는 현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특히 생산과 기술의 각 영역 내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전자공업, 자동화공학의 최신성과 및 전자계산기의 전면적 보급의 객관형세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북한 국민경제의 현대적 생산에 필요한 한 가지 이상의 기술기능이다. 여기에는 자동차, 트랙터(트랙터), 공작기계, 통신, 전자기계 등 방면의 기술기능이 포괄된다. 이는 사회생산의 각 영역에서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수단이다.

현재 북한의 중등교육단계의 기본생산기술교육은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논리상으로 볼 때, 전면발전교육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통일적인 교수

계획과 교수요강에 따라 계획적으로 순서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도시와 농촌의 모든 중학교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기초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대적 농공업생산의 기본원리 지식교육과 국민경제의 현대적 생산에 필요한 한 가지 이상의 기술기능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학생들의 취업에 유리하게 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생산기술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실시됨과 동시에 각 학교의 실정과 각 지역의 기술인재에 대한 수요에 근거하여 선택과목으로도 설치됨으로써 각 지역의 사회생산과 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교육(普通教育)의 직업화, 직업교육의 일반화가 세계교육발전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기본생산기술교육은 사회생활과 생산, 일반교육과의 연계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공장·광산·기업소 기능공학교의 직업교육훈련

북한은 해방 이후 기술교육에서 줄곧 기술자와 기능공 양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능공 교육사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공장·광산·기업소의 기능공학교는 일종의 직전(職前)교육기관으로서 직업에 갖 참여한 고등중학교 졸업생, 제대군인, 가정부녀 및 기업소 종업원을 대상으로 생산경험과 전문기술지식을 전수하여 계획적으로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북한에서는 기능공 양성이 필요하여 물적·기술적 조건을 구비한 공장·광산과 기업소에 기능공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형식은 주로 공장·광산과 기업소에서 운영하는 기능공학교와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능공학교로 나눌 수 있다. 공장·광산과 기업소에서 관리하는 기능공학교의 구체적인 운영은 해당 공장·기업소에서 직접 책임지며, 지역에서 관리하는 기능공학교의 구체적인 운영은 유관 상급기관에서 책임지고, 중앙노동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지도·감독한다. 기능공학교는 양성반과 재직반으로 구분되며, 각 반의 학생 수는 주로 30명 정도이다. 예를 들어 중형기계와 중요한 설비를 조작하는 기능공 양성반의 경우, 각 반의 학생 수는 20명

이상 이여야 하며 재봉 등 경공업부문의 기능공 양성반의 경우 3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학제는 6개월, 1년, 1년 6개월 등으로 달리하고 있다. 6개월제 양성반에서는 학습기한을 거쳐 시험에 합격된 자에게 해당 직종의 최저급별을 수여한다. 1년 혹은 1년 6개월제 양성반도 학습기한을 거쳐 시험에 합격된 자는 원상태에서 2급씩 오르고, 재직반은 학습기한을 마친 후 성적이 합격되면 학제를 막론하고 모두 원상태에서 1급씩 오른다.

북한 기능공학교 설치운영의 절차와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공의 수요를 예측하고 양성방법을 확정한다. 기능공의 수요를 예측할 때 우선 직종에 따라 부족한 기능공의 수요를 파악하며, 매년 직종의 조절 등으로 인한 기능공 인수의 변화를 계산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기능공의 수요를 예측한다. 이에 기초하여 양성대상의 우선 순서와 양성 방식을 확정한다. 둘째, 학교를 설치한다. 공장·기업소는 학교 설치의 장소를 정하고, 校舍를 建造하며 각종 설비를 준비하며, 교원과 예비교원을 선발한다. 그리고 각 직종에 따라 교수요강을 제정하며, 학교 설치운영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방노동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상급부문에서 중앙노동행정부에 보고한다. 셋째, 학과위원회를 조직한다. 학과위원회는 본 학교의 실정에 근거하여 3명 이상의 교원(겸직교원, 실습교원과 지도교원을 포함)으로 구성되며, 명칭은 학과나 실습내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북한 기능공학교의 교육요강은 학교의 사명과 양성목표 및 지위와 특성에 기초하여 학교교육사업의 내용·조직형식과 집행방법을 규정한 법률적인 문제이다. 교육요강에는 과정안과 교수요강이 포괄된다. 교육요강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칙을 구현하며, 북한의 구체적인 실정에 입각하여 학생들이 생산과 건설의 실제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교육과 실천을 상호 결합시키는 방침을 관철한다. 또한 학생들의 정치사상 수준과 문화·기술 수준에 근거하여 교육사업을 계통적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정안은 과정을 선정하고, 수업시간을 배치하며, 수업의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 문건이다. 교수요강은 각 과정의 강의목적·임무·내용·범위·분량과 시간을 규정하는 기본 문건이며, 기초기수·교수요강·전업기술 및 교수요강 등으로 구분된다. 교육요강의 편찬 준비사업은 공장의 기사가 책임지며,

광범한 기능공학교 교원, 공장대학과 공장고등전문학교의 교원, 기술원과 고급기능공이 초청되어 참여한다. 충분한 준비사업의 기초 하에 공장·기업소에서는 개교 3개월 전에 교육요강초안의 편찬사업에 착수한다. 교육요강초안은 교육요강심의 소조와 군중의 심의를 거친 후 공장지배인이나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북한의 교수사업은 교무 행정사업과 교수의 조직으로 구분된다. 교무 행정사업의 조직이란 학교의 전반적 사업을 계획화·정규화 함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우선 사업계획 즉 학교의 학년·학기·월분과 개인의 사업계획을 제정하여야 한다. 학교의 책임자와 기업의 영도자는 “국가로력배치규정”에 근거하여 개학 1개월 전에 지방노동행정기관과 함께 학생 모집 사업계획을 제정하며, 기능공학교 시험규정에 따라 입학시험을 준비한다. 학생모집이 결정된 후 기능공 양성계획과 학생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반급을 편성한다. 이어 학생들의 연령과 정치사상 수준, 교원의 사회부담과 수업량 및 생활조건과 성별에 근거하여 課任교원을 선택한다. 교육요강 제정의 구체적 조치, 엄격한 교육규율과 주일 사업계획은 교무행정사업의 중요한 연결 고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행정부문은 교원을 지도하여 과정 교수계획과 교수 진도표를 제정하여야 하며, 물적 조건의 보장과 교육설비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수업에 대한 검사도 행정부문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교수 조직사업이란 교수준비·교수·시험·교수에 대한 검사를 가리킨다. 교수준비를 보면, 교수준비사업에는 당의 정책연구, 과정안의 제정, 직관교편물의 준비 등이 있다. 기능공학교의 교수방식에는 전업이론과, 실험, 실습, 학과토론, 연습과 견습 등이 있다. 그 중 실습은 기능공학교의 기본 교수방식이며, 교수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능공학교의 시험에는 입학 시험, 학과목 시험, 학기말 시험, 기술진급 시험과 졸업 시험 등이 있다. 기능공학교의 기본 교수방법은 계발식 교수법이다. 계발식 교수의 형식에는 강의해설, 문답, 토론과 변론, 직관과 실물수업 등이 있다.

기능공학교 교원의 첫째 임무는 교육사업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생활을 책임·지도하여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높은 기능을 구비한 소위 사회주의건설의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또

한 교원은 교수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 구현, 노동자계급의 주인공적인 태도 수립, 교수계획 제정, 교수준비를 잘하며, 직관수업과 실천수업 강화, 수업내용과 방법 개선, 학과위원회 사업 참여, 조직생활에 자발적 참여, 자신의 정치업무 수준 제고, 진급시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교원의 업무능력을 제고하는 과정으로는 공개수업, 시범수업, 과정안의 토론, 시청강의, 모의수업과 경험교류 등이 있다.

한편 북한의 주장을 보면, 기능공학교 관리사업의 강화는 양호한 학습환경의 마련을 전제로 한다. 기능공학교의 관리사업은 당의 학교사업에 대한 영도를 보장하며, 소위 “군중로선”을 관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교사 : 초임 교사는 학교소재지를 잘 선택하여야 하며, 학교건물을 건설·조절한다. ②교실 : 실내의 조명을 책임지며, 빛을 가리는 건축물을 허물고 통풍과 采暖설비를 설치한다. ③책걸상 : 책걸상을 잘 갖추어 학생들의 체격에 적응되게 한다. ④교수자료 : 각 과목의 교수 자료연구실을 설립하며, 문헌자료·직관물·표본·양품·모형·패도 등을 마련한다. ⑤실습장소(실습공장, 실습생, 실습목장 등) : 필요한 실습장소를 보장하며, 설비의 표준화·현대화와 일정한 수량을 확보하고, 규장 제도를 제정한다. ⑥녹화 : 지역의 특성과 임지의 조건에 근거하여 학교내외의 녹화를 보장하며, 환경을 미화하고, 바람·더위·소음을 방지한다.

다. 「일하면서 배우는」교육체계의 직업교육훈련

(1) 산업체 부설형의 직업교육훈련

북한의 산업체 부설형의 직업교육훈련은 행정적으로 교육성 고등교육부의 지도를 받으며, 경제적 지원은 해당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서 책임진다. 주요한 형태로는 근로자고등중학교, 공장대학과 공장고등전문학교, 농장대학과 어장대학, 간부 재교육체계 등이 있다.

북한은 1960년부터 주요한 공장·광산·기업소 등에 4년제 고등기술전문학교와 5년제 공장대학들을 설치하였으며, 북한 특색의 「일하면서 배우

는」교육체계를 추진하였다. 북한에서는 6.25전쟁시기인 1951년에 평안남도 성천군의 군수공장에 야간전문학교와 공장대학을 설립하였으며, 60년대 이후 이 유형의 학교는 매우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수요에 의해 기술일군과 관리간부가 절실히 필요하였으며, 이는 전일제 일반고등교육체계 만으로는 사회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웠다. 따라서 북한은 직업고등교육체계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또한 중등의무교육의 보급에 따르는 사회의 고등교육 기회의 급증도 직업교육체계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공장대학과 공장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에서는 그 학제를 전일제 교육기관보다 1년 더 연장하였다. 즉 공장고등전문학교의 학제는 3년제로 하고, 공장대학은 5년제로 규정하였다. 공장대학은 교육시설을 갖추 수 있고 교원·학생원천이 많은 공장과 기업에 설치하였다. 학교장은 학교를 설치한 공장·기업소 등 단위의 영도간부들이 직접 담당하였으며, 전업과정의 교원은 본 단위의 기술자·전문가들이 겸임하고, 일반과 교원은 학교 소속 지역에서 초빙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1970년에 이르러 공장대학은 41개교로 발전하였으며, 1983년에는 77개교로 학생 수는 전체 대학생수의 41%를 차지하였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11년제 의무교육의 보급과 함께 농촌 청년의 문화수준도 고등중학교 수준으로 보급되었으며, 또한 북한은 과학영농과 농장간부양성의 수요로부터 출발하여 청산리농업대학과 운천농업대학 등 농장대학들을 창설하였다. 또한 수산부문에서도 신포수산대학 등 어장대학들을 창설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북한의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의 학생 수는 전체 대학생 수의 반수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의 산업체 부설형의 직업교육훈련은 학교교육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발전하여 왔으며,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해당 산업체에서 지원함으로써 교육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 종사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으며, 각 지역의 생산체계에 교육기관을 병행함으로써 교육기회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고, 각 지방에서 산업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 개인의 개성을 계발하면서도 집단과 사회의 이익에 맞게 하였으

며,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기본적인 중점을 두고 있다(김면희, 1996).

(2)통신교육형의 직업교육훈련

북한의 통신교육형 직업교육훈련으로 전일제대학의 야간 및 통신학부, 텔레비전방송대학, 인민대학습당, 재직통신연수생교육 등을 들 수 있다(리종찬, 1996).

1948년 2월 북한에서는 최고학부인 김일성종합대학에 야간대학을 설치하였으며, 동년 9월에 통신사범대학을 병설하였다. 그 후, 기타 대학에도 야간 및 통신대학을 설치하였다. 1950년 초에 이르러 북한에는 야간대학 3개교 18개학과, 통신대학 5개교 32개학과에 학생 수는 6,015여명에 달하였다. 통신교육기간은 5년으로 주로 라디오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1년에 두 차례의 출석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6.25전쟁 이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57년 8월에 「기술자 및 전문가 양성 전망계획 작성에 관하여」라는 내각명령을 하달하여 고등교육기관들을 계획적으로 늘이는 동시에 기술교육기관들과 새로운 대학들을 창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리하여 통신교육과 야간대학들이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1960년대에 들어 대학의 야간부와 통신부는 이미 하나의 교육망을 이루어 제도화되었다. 1961년에 북한에서는 교육성의 고등교육부에 「통신교육지도국」을 설치하고, 동시에 일반교육부에 「공장 및 통신교육국」을 설치하여 직업교육을 책임·관리하게 하였다. 1962년 말에 이르러 북한 통신교육망에 50개교의 대학과 365개교의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및 중등전문학교를 설치하였으며, 학생 수는 약 13.3만명에 달하였다(정성진, 1984: 70). 197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은 1973년 4월 15일에 방송통신대학을 설치하였으며, 매년 1,260차례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의시간은 아침 5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이다. 1982년에는 텔레비전방송대학을 창립하였으며, 통신대 학생들이 있는 전국의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 5~20명으로 구성된 학습반을 조직하였다. 학습시간은 매주 3차례로 매번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 90분간으로 하였다. 1985년

에만도 37개교의 대학에서 700여 개의 수업 시청 장소를 설치하였으며, 1986년에는 텔레비전대학의 교수방법을 개선하여 시청률을 이전의 3배 이상으로 제고하였다고 한다(『조선중앙통신사』, 1986: 221-223).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은 평양 인민대학습당에 전 사회를 향한 최신과학기술강좌·자문강좌·재교육강습 등을 개설하였으며, 1997년에만도 연간 100만여 명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과학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강의와 강습을 2만 5,000여 시간 진행하여 6만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을 보급하였으며 1만 1,000여명에게 현장강의를 하여 현직 근로자들과 과학자·기술자들의 수준과 실천능력을 높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사』, 1998: 223-224).

3. 북한 직업교육훈련 기관과 시설 및 내용

현재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기관과 시설은 기능공학교와 각종 업여전업학습반, 근로자 고등중학교, 공장대학과 공장고등전문학교, 농장대학과 어장대학, 간부 재교육체계, 일반대학의 야간 및 통신학부, 재직통신연구생교육, 텔레비전방송대학, 직업교육훈련의 시설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능공학교와 각종 업여전업학습반

기능공학교는 일종의 직전(職前)교육기관이다. 이는 사업에 갓 참여한 고등중학교 졸업생·제대군인·가정부녀 및 기업소 종업원을 대상으로 생산경험과 전문기술지식을 전수하여 계획적으로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기능공학교는 양성반과 재직반으로 구분되며, 학제는 6개월, 1년, 1년 6개월 등으로 달리하고 있다. 6개월제 양성반에서는 학습기한을 거쳐 시험에 합격된 자에게 해당 직종의 최저급별을 수여한다. 1년 혹은 1년 6개월제 양성반은 학습기한을 거쳐 시험에 합격된 자는 원상태에서 2급씩 오른다. 재직반은 학습기한을 마친 후 성적이 합격되면 학제를 막론하고 모두 원상태에서 1급씩 오른다. 1993년 말에 이르러 북한에서는 이미

1,000여 개의 공장기능공학교를 설치하였다. 기능공학교에서는 직장 근로자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기층간부도 배양한다.

이외에 북한에는 직장·기관·농장에서 관리하는 각종 업여전문학습반이 있다. 산업체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습할 기회가 없는 근로자·기술원과 간부들을 위하여 각종 업여전업반을 조직하고 있다. 매월 다섯(10시간) 차례의 학습과 매년 2~3차의 고찰을 진행한다. 직장마다 학습실이 있으며, 근로자들은 퇴근 후 학습실에서 기사와 원로 기술원의 강의를 받는다.

나. 근로자고등중학교

1977년 9월에 북한에서는 근로자중학교를 근로자고등중학교로 개칭하였다. 학제는 3년이며, 성인고중의 의무교육을 보급 목적으로 한다. 초급중학교정도의 노동자·종업원·농민 등을 모집하여 고급중학교 과정을 강의하며, 기술과목도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단과교수·단과합반(결업)의 형식을 취하며, 수업 기한을 마친 후 시험합격자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11년제 의무교육의 보급과 함께 1985년에 이르러 이 유형의 학교는 점차 없어지고, 1990년에는 모든 성인들이 중등교육을 완수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근로자고등중학교를 폐지하여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다. 공장대학과 공장고등전문학교

이 유형의 학교는 1960년에 창설되었다. 공장대학과 공장고등전문학교는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 종사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곳으로서 11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후 사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인원을 양성한다. 공장대학의 수업연한은 5년이고, 공장고등전문학교 수업연한은 4년이다. 공장대학은 교육시설을 갖추 수 있고 교원·학생원천이 많은 공장·기업에 설치하였다. 학교장은 학교를 설치한 공장·기업소 등 단위의 영도간부들이 직접 담당하였으

며, 전업과정의 교원은 본 단위의 기술자·전문가들이 겸임하고 일반과 교원은 학교 소속 지역에서 초빙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김면희, 1996). 수업과정에서 근로자 및 기술인원들은 전문기술지식과 기초이론 학습을 위주로 하고, 관리일군들은 일반 전문지식 이외의 기업관리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교육에서 대상별 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실천과 학습을 결합하여 실천 속에서 배운 이론을 더 깊이 체득할 수 있게 하였다.

라. 농장대학과 어장대학

이는 1980년대 이후에 창설된 고등교육 차원의 학교 운영 방식이다. 1981년 12월 1일 북한은 농업전형단위인 청산리에 첫 농장대학인 청산리농업대학을 창설하였다.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4년 6개월 내지 5년 6개월 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업내용은 전일제 농업대학과 동등하며, 교원은 대학교원을 위주로 우수한 농예사와 전문가도 초빙한다. 학원은 중등중학교 졸업의 농장원을 위주로 하며, 수업기간은 농한기에 두고 있다. 북한은 1994년까지 약 10개의 농장대학을 설립하였다.

한편 어장대학은 1979년에 최초로 함남 신포에 신포수산대학을 설립하였으며, 이후에 남포·원산 등지의 수산대학에도 어장대학을 설립하였다고 한다. 이는 전문 어민들을 위하여 설치한 대학이다. 학생선발방법은 공장대학이나 농장대학과 같으며, 고기잡이가 잘 안 되는 계절에는 육지에서 수업하고, 어로기에는 원양선에서 현장 수업을 받는다.

이상의 성인고등교육체계의 학생은 졸업 후 일반대학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시험위원회의 통일시험을 거쳐 합격자에게 대학·전문학교 증서를 발급하며, 준 전문가·준기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마. 간부 재교육체계

북한에서는 전체 간부들의 정치사상 수준, 과학기술 수준, 경영관리 수준의 제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각급·각 유형의 간부 재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양성교

육과 장기적인 연수교육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단기적인 양성교육은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매년 1개월씩 진행하며 이미 제도화되었다. 장기적인 연수교육은 중견간부거나 업무경험이 부족한 간부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진행하며, 연수 시간은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김일성고급당학교, 인민경제대학, 공산대학과 군당학교 등이 있다.

김일성고급당학교는 북한 최고급의 간부재교육학교이다. 교육대상은 중요하게 중앙고급간부(부국급간부 이상), 인민군간부(장군급 이상), 내각고급관원 등이다. 수업연한은 6개월 반, 1년 반, 2년 반과 3년 반이 있다. 교수 내용에는 「당의 주체사상연구」, 「당의 정책연구」, 「남북조선 통일연구」, 「경제분석」 등이 있으며 교육·교수방법에는 집중 강의와 토론을 상호 결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인민경제대학은 1964년에 내각간부학교로 창설되어서 1954년에 인민경제대학으로 개칭하고, 현재 평양시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각급 정부와 공장·기업소의 경제관리 등 방면의 간부들에게 계통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최고 경제관리 간부학교이다. 수업연한은 4년이며 입학대상은 각급 정부의 경제부문·공장·기업소의 주요간부들이다. 여기에는 국가건설, 국민경제계획, 통계, 농업경제, 상업경제, 재정금융, 회계 등 과정을 설치하였다.

직할시·도 공산대학은 북한의 각도 직할시의 간부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간부학교이다. 입학대상은 당·정 기관, 공장·광산·기업소·협작농장 등 단위의 간부들이다. 수업연한은 3개월과 6개월제 과정의 강습반, 1년제 과정의 재직반, 3년제 과정의 양성반, 4년제 과정의 통신반으로 구분된다. 기본과정에는 철학·경제학·당사·당 건설 등이 있고, 일반과정에는 수학·역사·문학·체육 등이 있다.

군당학교는 각 군에 설치되어 있는 당정간부학교이다. 이는 각 단위의 초급간부 배양과 재직교육의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공업반, 농업반과 관리반으로 구분된다. 수업연한은 1-2년이다. 교육대상은 중요하게 공장·광산·기업소의 작업반장, 지도원, 군내 주요책임자 및 우수모범당원 등이다.

한편 혁명기유자녀학원은 북한에서 항일전쟁과 6.25전쟁에 참여하였던 혁명투사 자녀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히 혁명유자녀학원을 설치하였다. 1947년 10월에 북한에서는 평양 만경대에 만경대유자녀학원을 개설하였으며, 1958년 9월에는 남포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해

수 혁명유자녀학원, 평양 외국어혁명학원을 개설하였다. 1958년부터 혁명유자녀 학원은 11년제로 개편되어 학원들로 하여금 고등중학교까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1960년대 후반기에는 혁명학원을 정치대학으로 개편하고, 대학반을 새로 두었다. 이리하여 혁명가유자녀들이 혁명의 핵심골간, 당 및 근로단체 일군으로 자라날 수 있게 튼튼한 조건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일반대학의 야간 및 통신학부

전일제대학의 통신 및 야간학부는 1948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북한에서는 조건이 가능한 모든 전일제대학과 고등전문학교에 통신 및 야간학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학생은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수업연한은 3-4년이다. 수업과정은 전일제대학의 예술과, 체육과 외 기타 과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전일제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의 통일교재를 사용한다. 야간 및 통신학부에서는 정치과와 실습과, 체육과를 설치하지 않으며 전업(전문)과목만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학원은 통신교육과정을 마치면 일반대학의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의 통신교육생들의 비율은 전일제 대학의 학생수와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한다(『조선중앙통신사』, 1986: 221).

사. 재직 통신연구생 교육

북한에서는 고급기술인재의 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고등교육을 강조하고, 1960년부터 재직통신연구생(대학원)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82년에 연구생 30,000명중 재직통신연구생이 반수 이상을 점한다고 한다. 입학 자격은 대학졸업(혹은 동등학력)의 실천(현장)경험이 상당한 자로서 재직통신연구생시험에 합격 해야만 입학할 수 있다. 재직통신연구생원의 학제는 이탈학위연구생보다 1년 더 연장되어 있으며, 입학한 후 지도교원의 지도하에 『개인학습계획안』을 작성하여 연구생원에 제출하며, 통과된 후 본 단위로 돌아가 배우면서 연구한다. 교수는 정기적인 집중강의와 학년 집중강의의 두 가지 형식이 있으며, 기타

시간에는 재직연구생이 본직사업의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자아 배치한다. 대학연구생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지도교원과 지도소조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진행한다. 재직통신연구생은 졸업 후 이탈연구생(전일제 대학원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학위논문이 통과되면 원상태에서 1급 승급한다. 졸업 후 재직통신연구생은 일반적으로 본 단위에 남아 사업하며 특수 경우에는 본 단위와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아. 텔레비전방송대학

북한의 텔레비전방송대학은 1982년에 개설되었다.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에 두고 국내대학의 통신생 및 기타 업여고등교육의 학원들을 위해 복무한다. 강의 기초과정에는 수학·물리·화학·외국어 등 고등기초과목이 있으며, 교원의 다수는 초빙을 통하여 해결한다. 북한에서는 통신대 학생들이 있는 전국의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 5~20명으로 구성된 학습반을 조직하였으며, 학습시간은 매주 3차례로 매번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 90분간 텔레비전을 통하여 학습한다. 1985년에만도 37개교의 대학에서 700여 개의 수업 시청장을 설치하였으며 1986년에는 텔레비전대학의 교수방법을 개선하여 시청률을 이전의 3배 이상으로 제고하였다고 한다(『조선중앙통신사』, 1986: 221-223). 현재 북한의 텔레비전방송대학은 자격증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다.

자. 기타 직업교육훈련 기관

북한은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시설과 장소로 평양과 직할시 및 각 도에 학생소년궁전을 설립하였다. 예컨대 평양소년궁전, 만경대소년궁전, 개성소년궁전 등이다. 그중 비교적 우수한 평양소년궁전은 총 건축면적이 50,000평방미터에 달하며, 동시에 10,00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 이 안에는 극장, 체육관 및 각종 연구실, 실험실, 연습실, 각종 회의실이 약 500여 개 있다. 여기에서는 몇백 여명의 전일직·점직교원이 있으며 박사·학자와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지도하기도 한다. 이외에 자동차와 손잡이 트랙토르(트랙터) 운전 연습실·재봉실·민악연습실·제조실·천체연구

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이용은 모두 무료이다. 매일 오후와 휴식 시간에 소년궁에 오는 학생들은 학교나 학급에서 조직적으로 오며, 다수의 학생들은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다. 이외에 북한의 학생도서관·아동영화관·청년극장·각종 야영소 등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하여 강연회를 진행하고, 과학토론회와 논문발표회 및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사상정치교육의 직업교육훈련 시설과 장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은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사상교양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혁명박물관, 조국전쟁기념관, 역사의적, 역사박물관, 군중문화관, 군중도서관, 영화관, 극장 등에서 청소년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상정치교육, 애국주의와 집체주의교육, 혁명전통과 문화전통교육, 국방교육과 통일교육 및 문화오락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은 교육훈련 시설로 인민대학습당을 1980년 10월에 개관하였다. 이는 도서관, 열람실, 방송교육, 정보교류 등을 포함한 현대화한 종합적인 직업교육훈련장소라고 볼 수 있다. 인민대학습당은 각 계층의 광범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강연·도서대출·직장 현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건축면적은 10만 평방 킬로미터로 강의실, 열람실, 통신통보실, 음향실 등 60여 개의 방과 3,000여만 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또한 자문실과 대강당에서 통신생을 대상으로 직접강의를 진행하며, 내용과 시간은 미리 방송과 텔레비전을 통하여 전국에 통고한다. 각 대학과 대학습당의 강사들은 통상적으로 현재 인민군중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과학과 기술, 경영관리 등의 관심 문제를 강연하고 있으며, 각 계층 인사들의 환영과 호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민대학습당에서는 생산현장에 강사를 파견하여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4. 북한의 자격 체제

가. 자격 체계

북한에서는 자격을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격이 국가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자격 체계는 <그림 III-1>에 보는 바와 같이 기능 자격, 준기사(과거의 기사), 기사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

북한의 자격은 각급 학교의 교육 훈련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해야만 하며, 대학을 졸업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무급의 기사 자격을 부여한다. 준기사의 경우에도 기사와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무급의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기능 자격의 경우에는 기능공학교나 양성소 등의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현장 경력을 쌓은 후에 별도의 검정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능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한 현장 경력을 쌓으면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별도의 시험 검정을 통해 기사나 준기사 등 기술 분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취득하기 어렵다고 한다.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자격 종목은 급수별로 각급 학교와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용접공, 설계원(의류), 영화 기사 등의 자격은 상위 등급의 경우 전문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취득할 수 있으나 하위 등급은 기능공학교, 양성소를 졸업한 자나 현장 경력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자격 종목 및 등급

북한의 자격 종목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표 III-1>에 보는 바와 같이 기능 자격, 준기사, 기사 등의 자격별로 다양한 분야의 자격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기술 분야 자격 종목을 보면 남한의 국가 기술 자격 종목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인민경제사, 준경제사, 반도체전문가, 경제사 등과 같이 남한에는 없는 자격 종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 분야 자격 종목의 경우에는 남한과 거의 유사하며 업무 영역도 매우 유사하나, 자격 취득자의 직무 특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무선수 자격은 자격 소지자만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남한과 동일하게 면허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남한의 열관리 자격 및 보일러 취급과 같은 열관리 공은 남한과 달리 면허적 자격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조정윤 외, 1999).

<표 III-1> 북한의 자격 종목 및 등급(북한 이탈 주민 면담 조사 결과)

구 분	자격종목	급 수	해당분야 (남 한)	비 고
기 능	목공기능공*	5~1급	건축	
	미장기능공*	4~1급	건축	
	불도저*	4~1급	기계	
	사 진*	5~1급	산업응용	
	열관리공*	5~1급, 특급	에너지/기계	2급이상 전문학교졸업
	무선수*	3~1급, 특급	통신	
	용접공 5급*	1~8급	기계	전문학교졸업 4급
	영화기사*	1~6급	산업응용	전문학교졸업 3급
	철기원(선로원)*	1~7급	무	
	전기공*	1~7급	전기	
	전기기기조립공*	1~8급	전기	전문학교졸업 5급
	유전기재 수리공*	1~8급	통신	체신대학졸업 7급
	설계사(의류)*	1~5급, 고급1~3급	섬유	상업전문학교 5급 평양상업대 고급 1급
	편집공*	1~7급	섬유	
	미용*	1~5급	위생	
준기사	기관차 승무원*	5단계직책	기계	직책으로 구분
	금속*	단 일	금속	
	농기계*	단 일	기계	
	과수원예*	단 일	농림	
	행정경리(부기)*	단 일	사무서비스	
	조산원**	6~1급	국가	
	인민경제사	단 일	무	인민경제대학 졸업
기 사	준경제사	단 일	무	
	농산*	5~1급	농림	
	연구사(육종 및 병리)*	5~1급	농림	
	전기철도*	3~1급	전기	준기사(3~1급)
	건축설계원*	6~1급	건축	
	항만 및 수로건설*	6~1급	토목	
	설계원*	5~1급	토목	준기사(4~1급)
	화학*	5~1급	화학	
	반도체전문가***	단 일	무	
	전문가자격(불어)**	1~4급	국가	
경제사***	4~1급	무	정준택경제대학 졸업	

주 * :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에 해당

** : 남한의 국가자격에 해당(국가)

*** : 남한에 해당자격 없음

자료: 조정운 외(1999). 북한 이탈 주민의 취득 자격 및 경력 인정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사, 준기사, 기능은 다시 여러 단계의 급수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기사는 6~1급의 나뉘어져 있으며 종목에 따라 3~1급, 5~1급 등의 급수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기사 자격의 급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급수의 자격을 나타낸다. 특히 5~6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격은 매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최고 급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5~18년의 현장 경험이 요구되고, 매 급수마다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남한의 기술사 수준의 자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 자격은 주로 단일 급수로 이루어져 있다.

준기사도 6~1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주로 단일급, 3~1급, 4~1급 등이 많아 기사 등급보다 적게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준기사의 급수는 기사 자격 급수와 유사하게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 자격을 나타낸다.

기능 자격은 기사, 준기사 자격보다 더욱 급수가 세분화되어 최대 1~8급까지 나뉘어져 있으나 급수 체계는 기사, 준기사 자격처럼 내림차순으로 일정하게 되어있지 않고, 자격 종목에 따라 다르다. 일부 자격 종목의 경우에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데 내림차순보다 급수의 구분이 크게 나뉘어져 있다. 대체로 오름차순으로 급수의 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급수가 8급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자격은 남한의 기능장 수준의 기능이 필요한 분야의 자격 종목이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접공의 경우 전문학교 졸업시 4급을 취득하고, 7~8급 자격 소지자는 국가차원에서 자격자를 관리하며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들을 동원하여 중요 업무를 부여한다.

북한의 자격이 모두 등급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기관차 승무원 자격은 등급이 아닌 직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업무 특성상 전 시에는 평상시의 직책이 바로 군대 계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 자격과 달리 직책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고 한다.

다. 자격 응시 요건 및 검정

북한의 기능 자격은 거의 대부분 응시 요건으로 관련 분야의 교육 훈련

이나 현장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미용, 사진 등과 같이 특별한 응시 요건이 없는 경우도 있다. 교육 훈련은 관련 분야의 양성소와 기능공 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경력자는 현장 책임자에게 현장 근무 경력 및 능력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모든 자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성소 및 기능공학교를 졸업한 자는 현장 경력자보다 상위 등급에 응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1급으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미장기능의 경우 양성소 및 기능공학교를 졸업한 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3~2급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장 경력자가 응시할 경우 4급부터 응시해야 한다. 그러나 용접공(1~8급), 미용(1~7급)등의 경우에는 현장 경력자, 양성소 졸업자가 모두 정해진 특정 급수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시험의 성적에 따라 최고 4급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상위 등급의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종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응시 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지만 응시할 경우 현장 책임자 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물론 시험의 내용과 수준은 등급의 수준이 올라갈 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대체로 기능 자격은 학력 응시 요건이 없는 경우가 많다.

기능 자격이라도 단일 체계의 기능 자격은 급수에 따라 전문학교, 대학 졸업자가 상위 급수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전문학교 졸업 시 용접은 4급, 영화기사는 3급, 설계사(의류)는 5급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열관리공 자격은 5~1급과 특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급 이상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학교(열관리공 전문학교 등)를 졸업해야 한다. 열관리공 자격을 제외한 다른 기능 자격의 경우 전문학교 및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자격 시험 합격을 통해 최상위 급수까지 취득할 수 있으므로 기능 자격에는 학력요건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기능 자격의 응시 요건을 정리하면 교육 훈련 및 현장 경력을 요구하는 자격과 자격 응시 조건이 없는 자격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학력 조건은 없으나 급수에 따라 전문학교 및 대학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급수가 있다.

준기사, 기사자격은 남한의 산업기사, 기사 수준에 해당되는 자격으로

남한의 경우와는 다르게 전문학교 및 대학교에서 관련 전공 학과를 졸업한 자만이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물론 검정 시험 제도라는 것이 있어 준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정규 대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을 쌓은 후 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 자격 소지자가 전문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을 쌓은 후 준기사 자격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검정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서 검정 시험을 통해 준기사 및 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자격 검정의 내용을 보면, 남한의 경우와 같이 이론과 실기 시험으로 나누어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론 시험은 작업 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관식 서술형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용접공 시험의 경우 산소 용접, 전기 용접 등 해당 급수의 수준에서 필요한 실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진다. 또한 급수가 올라갈수록 시험의 내용, 범위, 수준은 이에 비례하여 어려워진다. 실기 시험은 단편적인 개인의 업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을 통해 자격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불도저의 경우 단순히 운전하는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불도저를 운전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실기 시험을 실시한다. 미장의 경우, 직접 건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실기 시험을 실시하고, 보통 3일 동안 자격 시험을 실시한다.

전체적으로 기능 자격은 필기보다는 실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상위 등급의 자격 시험은 실기뿐만 아니라 이론도 중요하게 간주하여 시험에서 이론 부분이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남한의 자격 시험과 달리 북한에서는 관련 전문학교 및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각각 무급의 준기사 및 기사 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무급 자격은 자격 취득 후 산업 현장에 배치를 받아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쌓은 다음에 가장 낮은 단계의 급수로 바뀐다. 물론 무급의 준기사, 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이때 대학 자체에서 실시하는 졸업 시험, 논문, 실기 시험 등을 통과해야 하며 이것을 일종의 자격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졸업 시험은 외국어와 전공 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논문은 마지막 학년에 실시하는 관련 분야의 현장실습(약 6개월)기간 동안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학교도 필기 시험(외국어, 전공 등)을 치르고, 논문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대학과 달리 실기시험을 실시하기도 한다. 전문학교에서의 논문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기 시험은 주로 현장 실습 기간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준기사 및 기사 자격의 경우 상위 급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보통 3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있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이때는 주로 필기 시험(외국어, 전공)과 현장에서의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급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합격에 가장 커다란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업무 실적이다.

라. 자격의 운영 및 관리

기능 자격의 관리는 남한 경우와 같이 특정 전문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운영하지 않고 자격 종목마다 관리·운영하는 기관이 다르며, 동일 종목의 자격에 있어서도 급수에 따라 관리·운영 기관이 다르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여러 급수로 세분화되어 있는 용접(1~8급), 유선기재수리공(1~8급), 전기기기조립공(1~8급) 등의 자격 종목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용접 기능의 경우 1~4급은 해당 기업소, 5급 이상은 정부의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7~8급 자격 소지자는 국가 차원에서 엄정하게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관리·활용한다. 유선기재수리공의 경우는 1~5급까지는 군단 노동 행정부에서, 6~8급까지는 인민무력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자격은 남한의 국가기술자격과 같이 특정 전문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종목별, 급수별로 해당기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기능 자격일지라도 고급 급수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인력을 관리·활용한다.

낮은 급수의 기능 자격은 양성소와 같은 교육 훈련 기관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큰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자격 검정을 실시한다. 그러나 시험 문제는 국가에서 출제한 것을 가지고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격

취득자가 기업소를 옮길 경우, 기존 취득 자격의 등급이 이동한 기업소에
서 하향 인정되기도 있다.

자격 유효기간의 측면에서 목공기능공, 전기기기조립공 등의 자격은 1
년에 한번씩 급수 유지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험은 자격 취득자의
현재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격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자격에 대해 급수 유지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준기사나 기사 자격의 경우에도 기능 자격과 유사하게 자격 종목 및 등
급마다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즉, 항만 및 수로건설기사(6~1
급) 자격은 대학 졸업자가 배치되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고, 5~6급은
관련 정부 기관(전기석탄공업성), 1~2급은 중앙의 전력공업부, 자원개발
부에서 관리한다.

5. 북한 학생들의 진로 경로

북한에서도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상급 학교 진학, 직업 세계
진출, 군 입대 등 개인에 따라 다양한 진로 경로를 밟는다. 북한 학생들
의 진로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북한 학생들은 인민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고등중학교에 진학
한다. 북한은 학령 전 1년(유치원 높은 반)을 포함하여 고등중학교 때까
지 11년 동안을 의무 교육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
민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고등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고등중학교에 진학하지만, 인민학교에서 성적이 우수
한 학생은 해당 시·군의 선발 시험을 거쳐 제1고등중학교에 진학하기도
한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직업 세계에 진출하거나 군에 입대하며 또
한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하는 등 세 가지 진로를 밟게 된다. 북한의 경우
고등중학교 졸업 이후 만 16세 정도부터 진로 분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고등전문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 등의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학업 성적과 출신 성분이 우수한 학

생들로 북한에서는 이들을 ‘직통생’이라고 부른다. 이런 직통생들은 전체 학생의 약 5%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등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대학 진학자가 10%정도이고, 약 50%정도가 직장 배치를 받고 군 입대자가 4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01).

대학 진학률은 지역과 학교의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도시에 있는 제1고등중학교 등의 영재 학교 출신자들이 대학 진학률이 높다. 그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여학생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각 분야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중앙급 대학은 경쟁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생들이 고등전문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에 각각 어느 정도 진학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는 진로도 보통 학생들에게는 선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군인들이나 제대 군인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고, 군대에 근무하는 기간에도 대학 진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3년 이상 모병적으로 군 복무를 한 사람들 중에는 대학 입학 추천을 받을 수 있다(한만길, 1997).

다음으로 북한에서 학교 졸업 후 직업 세계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직업 선택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에 의한 사회 부문별 노동력 배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 제10조에는 ‘국가는 전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 사회적 로동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조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 경제 계획 차원에서 작성된 ‘노동 자원 균형표’와 공장·기업소별 ‘로력 대장’, ‘공정별 표준 로력 조직표’에 따라 노동력이 배치되고 개인의 직업 선택이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 10조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고 명시하여, 개인의 희망 사항이나 능력에 따른 직업 선택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실제로 개인의 직업 선택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주의적 계획 방침이나 개인의 희망과 능력보다 당성과 출신 성분이다. 어떤 부문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한가를 조사하여 사회적

노동력의 낭비를 없애고 적절한 인력 배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선호되는 좋은 직업은 당성이나 출신 성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의 희망이나 소질, 능력, 학력 등은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개인은 배치된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당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고, 직장 배치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때에도 당성과 출신 성분이 우선적으로 작용한다.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시·군내 기업소나 공장, 협동 농장 등으로 직장을 배치한다. 물론 2년 간의 직장 경력과 3년간의 군대 경력 이후 대학 입학 추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뒷배경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단 직장이 배치되면 시·군 노동과에서 파견장이 나와 데려간다.

고등 교육 기관 졸업생들의 경우는 직장 배치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배치되는 직업이 다르다. 우선 전문학교나 특수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시·군보다 높은 도행정경제위원회에서 직장을 배치하는데, 이들은 주로 기사장이나 작업 반장일을 담당한다. 대학졸업생들의 경우는 중앙 부서에서 관리한다. 졸업식이 끝나고 대학 당위원회에 내각 5사무국의 지도원들이 와서 개별 학생들을 면담하고 희망 사항에 대해 조사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졸업생들의 출신 성분, 학업 성적, 사상, 재학 중의 정치 활동 등을 참작하여 각 도별로 직장 배치를 한다. 졸업생들은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직장에 배치되는지 알지 못하고 해당 도에 가서야 구체적인 직장을 알 수 있다.

IV. 북한 직업교육훈련의 특성과 남북한 비교

1. 북한 직업교육훈련의 특성과 동향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 직업교육훈련의 특성과 동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당의 역할 강화와 중앙과 지방 및 산업체의 연계

북한의 노동당과 정부 당국은 소위 혁명과 건설의 수요에 의하여 매 시마다 직업교육훈련의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북한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사업을 완전히 국가교육사업 안에 두고 있으며, 또한 국가에서 책임지고 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는 사립과 공립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없다. 직업교육의 구체적인 관리방면에서 산업체와 정무원 각 부위 및 교육성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동시에 교육성 고등교육부의 간접적인 지도를 받고 있다. 경제적인 지원은 해당 기업소에서 책임지며, 교육성은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을 관리한다. 또한 통일적인 교재를 사용하며, 전국적인 통일시험을 진행한다. 또한 각 산업체의 지도부가 학생들의 숙식·시간·교통·실습 등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은 중앙과 지방 및 산업체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국가의 교육경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 해당부문의 예측에 의하면, 1개교의 공장대학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1개교의 전일제대학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전일제대학과 공장, 기업소 및 농장, 어장에 부설되어 있어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기술교육을 진행하며 또한 공장의 순수익의 일부를 교육경비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예산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직업교육훈련에서 기초교육과 기술교육의 연계 강조

북한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소위 문화수준이라고 하는 기초 능력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야만 근로자들이 기술교육을 더욱 잘 받을 수 있으며 문화기술수준을 제고하여야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습득하여 발명·창조를 하고 근로자계급의 역사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직업교육을 발전시킴에 있어 특별히 근로자의 기초교육 수준 제고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동시에 기술교육을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제고시키자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예컨대 1970년대에 검덕광산 “4.5”갱에서는 공장대학졸업생들이 70%이상의 기술혁신항목을 창조하였으며, 1977년에만도 북중기계공장의 생산중에 사용되는 기술혁신방안의 80%이상을 공장대학의 학원들이 제출하였다고 한다.

다. 직업교육의 다양화와 업여교육 및 정규교육의 연계 강화

북한에서는 각 지방의 조건과 직장근로자들의 지식수준에 의하여 다양한 형식의 직업교육을 조직하고 있다. 신입 고등중학교 졸업생과 제대군인 등 신인들은 대부분이 공장기능공학교에 입학하여 반년 혹은 1년 동안 학습을 진행한 후 업무를 분배받으며, 소수는 「일하면서 배우는」업여전문 학습반에서 학습한다. 고등중학교 졸업 정도이상의 근로자들은 추천과 시험을 거쳐 성인고등교육기관에 들어가 계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습할 기회가 없는 근로자들은 각종 업여 전업학습반에서 학습한다. 고등교육이상 수준의 근로자들은 한 급 높은 전업학습반 혹은 기술연구소조에서 학습·연구와 능력 제고를 한다. 현재 북한에서는 업여교육과 정규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계속교육을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 학력구조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기술교육과 사상교양의 결합

북한의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은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사상교양에 관한 과목과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직업교육훈련에서 사상교양과목의 비중을 일반학교 교육정도로 중시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에서 각종 강습회, 강의회, 자습회 등을 통해 간부들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학습교육과 재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마. 기술교육과 관리교육의 결합 및 간부교육의 강화

북한은 간부들의 정치사상수준, 과학기술수준, 경영관리수준의 제고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각급·각 유형의 간부 재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양성교육과 장기적인 연수교육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단기적인 양성교육은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매년 1개월씩 진행하여 제도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보면, 간부들이 앞장서 학습함으로써 근로자 교육사업의 강화에 힘쓰고, 동시에 직업교육의 수준과 간부들의 적극적인 학습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함과 동시에 소위 기술고찰(기술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승급 혹은 강급(기술심사제도)에 활용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학교규정의 시험에 참가하며, 시험성적을 각 산업체 교육관리부문에 보낸다. 산업체 교육관리부문에서는 해당 단위의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관련 서류를 만들어 관리한다. 해당 단위의 업여전업학습반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매년 2~3차의 심사(고찰)를 받으며, 성적은 기술직함 평의와 승급의 주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업여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승급하기 어려우며, 대학·전문학교의 졸업증서가 없는 근로자는 기술직함을 얻기 어렵다. 북한에서는 이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공장기술연맹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의 기술고찰 및 승강급 등을 책임지게 하였으며, 산업체마다 기층위원회를 두어 시험을 주최하고 기술직함과 승강급 문제를 결정하게 하였다.

북한에서는 기사 직함을 모두 5급으로 나누며, 5급은 제일 낮은 등급

이다. 이외 특수공헌의 1급 기사가 있으며, 국가에서 특급기사 직함을 수여한다. 전일제 고등교육기관과 근로자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들은 준기사 직함이 수여되며, 현장 실습을 거쳐 통일시험에 합격된 자에게 5급 기사 직함을 수여한다. 이미 급별을 수여 받은 기사들은 1~2년에 한번씩 시험에 참여하여 시험과 사업(실습), 정치학습성적이 모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한 등급 오르며 시험에 불합격인 자는 한 등급 떨어진다. 한편 성적이 일반적인 자는 원상태를 유지한다. 5~2급의 기사는 반드시 1종의 외국어를 익혀야 하며, 1급 기사는 2종의 외국어를 익혀야 한다.

북한의 직장근로자는 모두 8급으로 나누며, 8급은 제일 높은 등급이다. 기능공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갓 입사한 근로자와 1년간 현장 경험이 있는 근로자학생들은 1급공으로 정해진다. 1~4급공은 산업체 해당 부문에서 시험을 거쳐 심사하며, 5~8급공은 국가에서 통일적인 시험을 거쳐 수여한다. 업여학습에 참여하여 시험에 합격된 자는 모두 승급시험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승급시험에 합격되고 현장에서 큰 사고가 없고 정치학습성적이 규정에 도달하면 한 등급 오른다.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중대한 기술사고를 낸 책임자는 한 등급 내려간다. 근로자들은 직함의 승강급에 따라 연금도 증감하며, 기술직함에 따라 규정된 대우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직장근로자들의 적극성 유도와 직업교육훈련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남한과 북한의 직업기술교육과 자격 체제 비교 분석

남한과 북한은 반세기 이상 분단된 가운데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발전시켜 왔다. 즉,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제반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직업기술교육과 자격 분야에 있어서도 각각의 체제에 맞는 서로 다른 제도를 형성·발전시켜 왔다. 여기서는 남한과 북한의 직업기술교육과 자격 제도를 비교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제도의 특성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서로간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 평화 공존 속에서 교류와 협력,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가. 교육 전반의 비교

남한과 북한의 직업기술교육과 자격 체제를 비교하기에 앞서 우선 교육 이념 및 목표, 교육 제도,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 행정 및 정책 등 교육 전반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직업기술교육도 전체 교육의 일부로서 교육 이념과 목표 아래 전체 교육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표 IV-1> 참조).

<표 IV-1> 남한과 북한의 교육 전반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교육 이념	• 홍익 인간의 이념과 민주주의 교육 이념 구현	• 공산주의 이념 구현을 위한 인간 양성
학 제	• 6-3-3-4제	• 4-6-4(6)제
의무 교육 연한	• 중학교까지 9년	• 유아 교육 높은 반부터 고등중학교까지 11년
유아 교육	• 개인의 성장 발달 중시 • 자율 선택적 교육 • 의무 교육에 포함시키지 않음	• 공산주의적 인간 육성 중시 • 국가 사회적 지원 • 낮은 반 1년과 높은 반 1년으로 편성하고 높은 반 1년은 의무 교육에 포함.
초등 교육	• 초등학교 6년	• 인민학교 4년
중등 교육	•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 전·후기 구분	• 고등중학교 6년 • 전·후기 구분 없음.
고등 교육	• 전문대학 및 기능대학 2~3년 •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4년 • 종합대학의 성격	• 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3년 • 단과 대학 4년 • 종합대학 및 중앙급 대학 4~6년 • 특성화 대학의 성격
사회 교육	• 직업능력 향상과 교양 함양을 위한 계속교육훈련 • 다양한 기관과 매체를 통해 교육	• 직업능력 향상과 정치 교양 함양을 위한 계속교육훈련 •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등 산업체를 기반으로 한 교육 중심
교육과정 및 내용	• 기본적인 학습 능력과 주지주의적 지적 능력 중시	• 실제 생활에서의 응용 능력을 중심으로 교육과 노동의 결합, 학습 활동과 실생활의 연관성 강조
교육 행정	• 중앙 집권형 • 교육 자치 지향 • 교육 행정의 전문성 중시 • 지방의 경우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이 분리	• 권위주의적 중앙 집권형 • 당 중심의 정치 예측 • 지방의 경우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이 통합

먼저 남한과 북한의 교육 이념 및 목표를 비교해 보면, 유사성보다는 상당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남한은 민주주의 교육 이념을 지향하고 있고, 북한은 공산주의 교육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남한은 교육 기본법에서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공민으로서의 자질,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에 기여할 것을 교육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 교육은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의 존중이라는 개인적인 덕목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교육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의 헌신이라는 집단적인 측면과 대비된다. 또한, 남한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개성의 존중, 개인의 자율과 책임,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중시하는 교육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 당과 혁명에 헌신하는 집단적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한만길, 1997).

다음으로 남한과 북한의 교육 제도를 비교해 보면, 학교 단계별 교육 연한에 있어서 남한은 초등 교육 6년, 중등 교육 6년, 고등 교육 4년인데 비하여, 북한은 초등 교육 4년, 중등 교육 6년, 고등 교육 4(6)년으로 초등 학교 단계가 남한보다 2년 짧게 편제되어 있다. 의무 교육 연한에 있어서도 남한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인데 비하여 북한은 유아 교육 높은 반 1년부터 고등중학교까지 11년으로 남한보다 2년이 더 길다.

유아 교육 단계에서 남한은 개인의 성장 발달을 중시하고 자율 선택적 교육으로 의무 교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공산주의적 인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의무 교육에 포함시켜 국가 사회적 지원을 통해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중등 교육 단계에서 남한은 전기와 후기를 각각 3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은 전기와 후기 구분 없이 6년 동안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다.

고등 교육 단계에서 남한은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합 대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목적으로 특성화된 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 체계로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발달해 있다. 남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내 기술 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북한에 비해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다. 남한

은 계속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교육 기관이 발달해 있다.

한편으로 남한과 북한의 교육과정 및 내용을 보면, 남한은 주지주의적 학습 능력의 함양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에, 북한은 실제 생활에서의 응용 능력을 중심으로 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진리 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 창조적 활동과 합리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과 활동에서 기본적인 학습 능력과 지적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지적인 탐구심과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교과 활동이나 과외 활동을 막론하고 교육과 노동의 결합, 학습 활동과 실생활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만길, 1997).

남한과 북한은 교육 행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과 북한 모두 중앙 집권적인 교육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 교육 자치를 지향하여 많은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교육 행정을 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교육 행정의 전문성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교육 행정의 전문성보다는 당의 정치 방향을 우선시 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경우 지방의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데 반해 북한은 통합되어 있다.

나. 직업기술교육 체제 비교

남한과 북한의 직업기술교육 체제를 비교해 보면 유사한 면도 많지만 상당히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표 IV-2 참조).

남한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교양적 차원에서 기초적인 직업기술교육을 하며 중등 교육 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단계부터 졸업 후 직업 세계에 취업하고자 하는 실업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직업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반해 북한은 의무 교육 단계인 고등중학교 때까지는 기초 직업기술교육에 중점을 두며 중등 이후의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전문 직업기술교육을 한다.

이렇듯 학교급별로 전문 직업기술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를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늦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령으로 보면 같은 시기(남북한 모두 만 16세)에 전문적인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교육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의 결합을 통한 통합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 초·중등 교육에서 직업기술교육을 소홀히 다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한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기초 직업기술교육을 강조하는 추세여서 엄밀한 의미에서 남북한 모두 본격적인 전문 직업기술교육은 중등 교육 이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2> 남한과 북한의 직업기술교육 체제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기초 직업기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1학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중학교까지
전문 직업기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계고교와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전문대학 및 기능대학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전문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 및 중앙급 대학
계속 직업기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사설 학원 야간 및 방송통신 대학 사내기술대학, 기술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현지학습반 기능공학교, 양성소 야간 및 방송통신 대학
진로 분화의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 후기 교육 단계: 고등학교 진학 시 만 1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 이후 교육 단계: 고등중학교 졸업 이후 만 16세

중등 교육 이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직업기술교육을 보면, 남한은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을 중심으로 산업대학, 일반대학에서 실시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에는 유사하게 고등전문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 및 중앙급 대학 등에서 본격적인 전문 직업기술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남한은 대체로 종합 대학의 성격을 띠고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는 계속 직업기술교육 차원에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고등 교육 체계를 중시하여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해, 남한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교육 훈련 기관으로 사내 기술 대학이나 기술 대학 등이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에는 공공 기관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기술계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기술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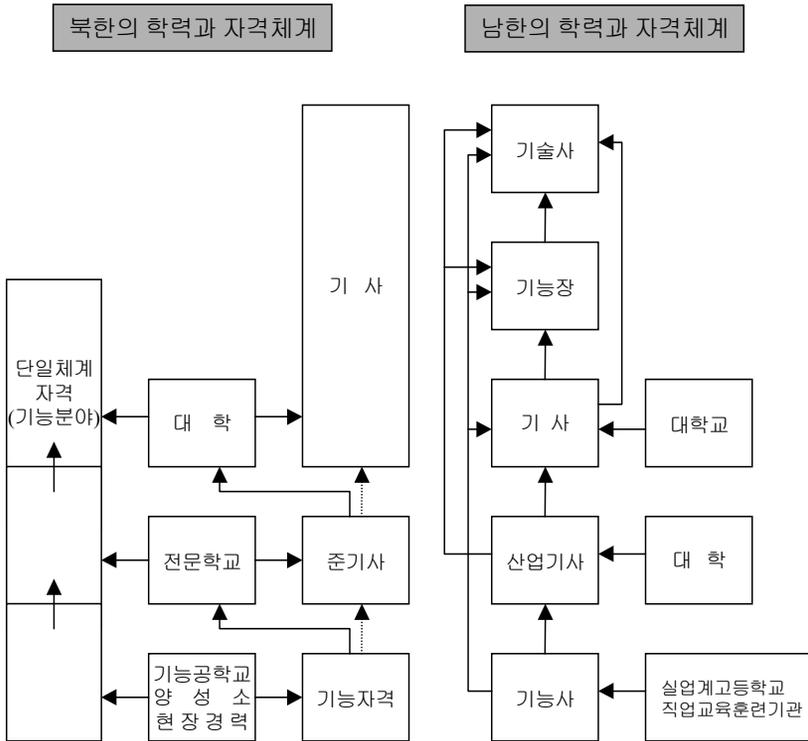
다. 자격 체제 비교

남북한 자격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은 응시자격과 자격의 등급에 있다. 북한의 경우 장기간의 현장경력을 갖고 있어도 전문학교 및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기능에서 준기사나 기사 자격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력에 관계없이 현장 실무경력만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은 정부에 의해서 동일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북한은 자격종목에 따라 다양하게 자격의 급수가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자격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한의 학력체제를 자격의 응시조건으로 고려하여 남한의 국가기술자격과 북한의 자격체제를 비교하면 <그림 IV-1>과 <표 IV-3>과 같다. 즉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중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는 북한의 기능, 준기사, 기사와 동일 수준의 자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지 북한의 경우 남한의 기술사와 기능장에 해당하는 자격이 없지만 기사 및 단일체계의 기능자격을 고려하면 각각의 최고급수에 해당하는 자격이 남한의 기술사와 기능장에 해당되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단일체계의 기능 자격 중 학력 조건은 없지만 설계사(의류), 영화기사, 용접 등의 자격은 기능 자격이라 할지라도 급수에 따라 전문학교 및 대학 졸업자에 수여되는 급수가 있으며, 최고의 수준의 급수는 고급기술자로 분류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때 기능장에 해당하는 수준으

로 판단된다. 기사의 경우 설계원(토목)은 5~1급으로 되어있고 상위급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최소 실무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가장 단기간에 취득하더라도 2급을 취득하는데 최소 9년이 소요된다. 또한 자격 검정방법에서도 해당 분야에서 실적과 이론시험, 외국어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설계원 2급 이상의 급수는 남한의 기술사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검정시험을 통한 자격응시

<그림 IV-1> 남한과 북한의 자격 체제 비교(기능·기술분야)

<표 IV-3> 남한과 북한의 자격 체제 비교

구분	남한*	북한
자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기술 이외 자격, 민간 자격은 공인자격, 비공인 자격으로 구분됨.) • 국가기술자격 체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자격 (남한의 기준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과 국가기술 이외 자격으로 구분됨.) • 기능 자격, 준기사, 기사
자격 종목 및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700여 개 • 자격별 등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종목수 정확히 파악 안됨. • 자격 종목에 따라 자격별 등급수가 다름.
자격 응시 요건 및 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별로 일정 학력과 현장 경력이 있는 자 모두 응시 가능 • 시험 검정, 일부 필기 시험 면제 • 필기(이론)와 실기 시험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별로 일정 학력과 현장 경력자 모두 응시 가능하나, 준기사나 기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정 학력 소유자만 취득 가능 • 자격별로 무급의 경우에는 교육 훈련 기관 졸업과 동시에 무시험 검정 • 시험 검정 시에는 이론과 실기 병행, 실기 시험 시에는 실제 작업을 통해 능력 평가
자격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전문 기관(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종목별로 운영 및 관리 기관 다름.

* 주: 남한의 경우에는 주로 국가기술자격의 내용임.

검정방법에 있어서도 북한의 기능 자격은 필기시험과 실제 작업의 평가를 통해 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학교 및 양성소를 졸업하지 않고 경력을 통해 자격에 응시하는 종목 가운데에는 실기만 실시하는 종목도 있으나 자격 수준의 특성상 이론보다 실기능력의 중요함을 이해한다면 남한 자격으로 인정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남한의 경

우도 대부분 기능자격은 필기와 실기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장, 조적, 건축목공, 비계 등의 종목과 같이 이론적인 면보다 기능이 중요한 분야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준기사 및 기사 자격은 졸업 시 해당분야에 대한 이론시험, 외국어, 논문 등을 통과해야만 무급의 자격 취득하고, 급수의 자격은 1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학력, 자격, 산업현장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자격체제를 남한의 자격체제와 비교하였을 때 두 체제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북한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학생들의 진로 경로 비교

남한이나 북한의 청소년들 모두 학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 모두 중등 교육을 마친 후에 직업 세계에 진출할 것인지 아니면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하여 학습을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들은 진로 선택에 있어 기본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개인의 진로 선택이 대개 적성에 맞는 일과 사회적 성취를 목표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한 자율적인 선택보다는 국가의 인력 배치 계획이나 당성, 출신 성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직업 선택에 있어서 남한은 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스스로 원하는 직업 세계에 지원하는데 비해, 북한은 국가에서 인력 수급 계획과 개인의 당성, 출신 성분,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다시 말해 남한은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실질적으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진로 경로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특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들 모두 중등

교육을 마친 후에는 직업 세계에 진출하거나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하지 군대에 입대한다. 그런데 남한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직업 세계 취업자가 33%, 고등 교육 기관 진학자가 64%, 군 입대자를 포함한 기타가 3%정도인데 비해, 북한의 경우에는 직업 세계 취업자가 50%, 고등 교육 기관 진학자가 10%, 군 입대자가 40%정도이다.

남한의 청소년들은 중등 교육 졸업 후에 곧 바로 직업 세계에 진출하기 보다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하여 계속적으로 학업을 이수한 후에 직업 세계에 진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입직 연령이 늦은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청소년들은 중등 교육 졸업 후에 직업 세계에 배치를 받는 사람들이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하는 사람들 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군 입대자도 40%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극히 소수만이 고등중학교 졸업 후에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하여 전문 엘리트 코스를 밟고 대다수는 곧 바로 직업 세계나 군대에 배치를 받으며 그 중 일부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 속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다.

V. 남북한의 각 분야에서 연계 사례와 시사점

그 동안 남북한은 오랜 분단과 불신으로 상호 대화가 적었지만, 최근 들어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접촉과 교류 및 협력 노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비정치적 영역을 중심으로 그 동안 이루어졌던 남북한간 연계사업과 내용 및 과정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남북한 연계사업의 의의

남북한 간 교류협력 및 연계사업의 추진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시키기 위한 개방유도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한간 신뢰구축, 그리고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 이질성의 해소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술분야의 공동연구사업이나 이산가족상봉·방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사업, 제조업분야의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경제 협력사업의 활성화는 북한의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한간 연계사업에 있어서 연계사업사안의 선정¹⁸⁾은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한 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급적 쉽고 현실적인 문제부터 출발하고, 정치·이념성을 배제한 민간차원의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되었다.

2. 남북한 연계사업 현황

가. 학술·교육 분야

학술분야는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만,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18)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통일부, 1996, pp. 29~30을 참고할 것.

제3국을 통한 교류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연변지역의 교포학술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연구원 상호교환 등으로 상호 유대를 강화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 근거한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남북한간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의 건립을 추진하는 등, 그 범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으나 대학간 교류, 교원단체간 교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은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구 연변과기대 후원회)이 1998.6.5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나진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사업이 있다. 시기별로는 주로 하계방학인 7·8월에 집중되며, 점차 다양화, 정례화 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89년 6월부터 1996년 11월까지의 학술분야 북한 주민접촉신청은 431건으로 이중 400건이 승인되었고, 116건이 성사되었다. 남북한 왕래교류로는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등 4건이 이루어졌다(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통일부, 1996, 61쪽을 참고할 것).

학술분야 교류는 여성학, 한국학, 역사학, 경제학, 통일·안보, 과학기술, 언어분야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사업형태로는 정기적인 학술회의 및 토론회 개최, 공동세미나 개최, 업적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초기에는 남북한 인사들의 만남과 교류라는 면이 더 강조되어 일회성이 강한 행사들이 치러졌으나, 최근에는 그간 분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접근이 어려웠던 고조선, 발해영토유적에 관한 자료를 공동탐사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등 학문적인 교류가 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학자들이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차이가 두드러진 언어, 맞춤법 등을 서로 비교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작업이나, 한글 전산화, 표준화 작업 및 컴퓨터 자판의 통일과 같은 남북한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⁹⁾.

19) 남북한 간 학술 교류 현황 및 공동으로 실시된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의 표 1~8을 참고할 것.

나. 문화예술분야

문화 예술 분야는 주로 음악회의 공동개최, 상호 방문공연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남북왕래로는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와 평양범민족 통일음악회 2건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북한측의 소규모적 자세, 문화예술에 대한 남북한 기본 인식상의 상충, 대규모의 인원·비용·시간 등이 소요되는 공연물로서의 특성 등으로 말미암아 교류가 정례화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류의 폭도 넓혀나가지 못했다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1998년 이후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문화예술분야와 경제적 실리를 연결시키려는 북한측의 입장변화로 인하여 현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1998년 이후로는 「리틀엔젤스」(한국문화재단)와 「윤이상음악회」(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의 평양공연이 성사될 수 있었다. 1999년 초부터는 다양한 음악을 주제로 하는 방북공연이 이루어졌다. 1999.12.5(주)코래콤과 SBS가 주최한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 로저 클린턴 평화공연」이 평양에서 열렸고, 12.20에는 SN엔터프라이즈와 MBC가 주최한 「민족통일음악회」가 역시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1991년 이후,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모두 4개 단체에 대해 사회문화협력사업(자)승인을 하였는데 1건의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승인이 1998년에 이루어졌고(남북공동사진전), 1999년에는 3건('99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서울 공연(클래식), 남북대중음악회(대중가요), 평양교예단 한국방문공연)의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 분야의 협력사업은 다른 사회문화협력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북측의 사업상대자, 또는 협상의 초기 창구로 하고 있다. 금강산 국제 그룹이 이 「아태평화위」와 남측 사업자를 연결하는 중재자로 나선 경우도 많았다. 1998년 8월에 처음 발족한 북한 민족화해 협의회(「민화협」)가 공연사업 등의 상대자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제3국에서 이루어진 행사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우리동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외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문화 예술 분야의 연계사업 추진은 주로 음악회, 영화제 공동개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가인원이나 출품작 등의 규모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89년 6월부터 1999년 12월말까지 문화예술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은 신청 328건에 282건이 승인되었으며 이중 93건의 접촉이 성사되었다(남북한 인적 교류 및 각 행사의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을 참고할 것).

다. 종교분야

남북한간의 종교 교류는 1991년 광선회(소망교회)목사, 1992년 권호경(KNCC 총무)목사, 1995년 김상진 신부 등 기독교·천주교계 인사들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진 가운데 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종교 행사 공동 참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일상적인 내용은 FAX를 이용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종교분야의 연계사업은 주로 남북한 종교 교류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종교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밖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과 현지에 교회 및 사찰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89년 6월부터 1999년 12월말까지 종교분야의 북한주민접촉신고건수는 331건으로 이중 277건이 승인되어 114건이 성사되었다(구체적인 자료는 부록을 참조).

라. 체육분야

1989년부터 1999년까지의 남북 왕래로는 「남북통일축구대회」, 「세계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평가전」,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통일농구대회」 등 8건이 이루어졌다.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등으로 활기를 띠었으나, 북한이 1991년 8월 유도선수 이창수의 망명을 구실삼아 기함의된 체육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99년 8월과 9월에 평양에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통일농

구대회」가 개최된 바가 있으며, 특히 1999년 12월에는 북한 남녀 농구 팀이 남한을 방문하여 교환경기를 가졌다. 이에 따라 축구·농구 등 민간차원의 교류가 보다 확대·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995년 세계군인 체육대회('95.9), 아시아야구연맹총회('95.9), 제5회 동아시아 호프스 탁구대회('96.8), 제19회 윌리엄존스배 국제농구대회('96.8) 국제 프로복싱대회('98.8), 제8회 동아시아 호프스 탁구대회('99.8), 국제 프로복싱대회('99.8) 등에서 남북한 경기가 있었다. 1989년 6월부터 1999 12월 까지 체육분야의 북한주민접촉신고건수는 192건으로 이중 181건이 승인 되어 58건이 성사되었다.

주요 대회의 추진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남북통일축구대회

남북통일축구대회는 1990년 10월 서울·평양간 교환경기로 처음 개최되었다.

북한을 개방과 변화로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남북체육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1990년 9월 남북체육장관회담 및 실무회담 등 수차례 접촉을 통해 1990년 9월 28일 남북통일축구대회를 정식합의 하였다.

평양대회는 10월 11일 5.1경기장에서, 서울대회는 10월 23일 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행사 내용은 부록을 참조).

○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1990년 11월 29일부터 1991년 2월12일까지 남한측 장충식 수석대표와 북한측 김형직 단장 등 양측 체육회담 대표들이 4차례의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한 결과,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탁구종목에서는 1991년 2월 2차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통해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1년 3월16일 대한탁구협회 회장을 협력사업자로 하여 제41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 및 참가를 협력사업으로 승인하고 경비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최초의 남북간 협력사업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북한 교류협력정책이 구체적 사업으로서 결실을 맺었다는데 그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1990~1991년 남북 체육회담을 통해 합의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한 실무문제 협의를 위해 1991년 2월 2차에 걸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수선발 및 동 대회 단일팀구성·참가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합의하였다.

1991년 4월 30일 정부는 제1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협력사업자로 승인함과 더불어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구성·참가를 협력사업으로 승인하였다.

○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1990~1991년 남북체육회담을 통해 합의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한 실무문제 협의를 위해 1991년 2월 2차에 걸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수선발 및 동대회 단일팀 구성·참가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합의하였다(주요일정은 부록을 참고할 것).

○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이후, 민간차원에서의 첫 남북간 교환 경기는 1999년 남북 노동자간의 축구대회로 성사되었다. 남측의 「민주노총」과 북측의 「조선직총」은 남북 노동자간의 축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 8월 10일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37명의 선수단 및 관계자가 방북하여 2회에 걸쳐 남북간 경기 및 남북 혼합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하였다(경기 내용은 부록을 참고할 것).

○ 통일농구경기대회

1991년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서울·평양 평가전 교환 경기 이후 8

년만에 체육교류가 재개되어 교환경기로 개최되었다.

「현대」-「아태」간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민간급 체육교류에 관한 합의서」체결('98.10.29)을 통해 농구경기 개최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평양대회는 1999.9.28~9.29간 평양체육관, 평양농구관에서 서울대회는 1999.12.23~12.24간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남녀 혼합팀 2경기 및 남녀 대항 2경기를 각각 치렀다(행사내용은 부록을 참고할 것).

마. 언론 출판분야

언론, 출판분야에서는 두드러진 바는 없다. 1997년 말에는 중앙일보사 통일문화연구소의 '북한지역 문화유적답사 및 조사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자승인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1998년에는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등이 두 차례씩 방문하여 언론교류와 문화교류에 대하여 북한측과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언론·방송분야에서는 모두 6건의 협력사업자 승인이 있었고,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와 경향신문사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 스포츠아트가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1989년 6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언론·출판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268건, 승인 229건이고, 이중 54건이 성사되었다.

언론사의 방북증가와 함께 영상물의 방영, 기사 게재, 사진작품의 전시, 방북기 출판 등이 증가하였으나, 북한이 공개하는 지역은 평양, 개성, 묘향산, 백두산, 금강산 등 일부 관광지로만 한정되어 있었고, 촬영 역시 북한측의 안내와 허용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출판사업에서는 1992년 여강출판사의 「리조실록」, 출판계약 이후, 비교적 이념성이 적고 전문성이 있는 북한 서적을 비공식 경로로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어졌다. 일례로 1998년에서 1999년에 걸쳐 누리미디어에서 중국을 통해 「고려사」, 「팔만대장경」, 「발해사연구」, 「동국이상국집」등 고문헌을 들여와 CD롬으로 출간, 대학도서관등에 공급해왔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새한정보시스템이 바둑프로그램 「은별」을 조선컴퓨터 센터(KCC)로부터 판권을 넘겨받은 일본의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수입추천을 받아 출시한 바가 있다.

출판분야에서는 북한과의 직계약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9년 말, 북한측에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조선인포뱅크”에서는 조선 출판물수출입사에서 직접 인터넷 상거래로 북한의 서적들을 팔고 있다. 조선 출판물 수출입사는 거의 모든 북한 내 출판물의 대외판권을 지니고 있다고 추정되는 기관이다.

바. 관광분야

활발한 외자유치와 개발현황, 장기계획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량관광을 위한 관광 인프라와 프로그램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남북한 관광사업의 추진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한간 이질성 회복과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면서 관광수입을 통해 북한의 경색된 경제상태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당국 또한 외화 획득을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의 금강산 사업을 들 수 있다. 추진 경과를 보면,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은 1989년에 북한을 방문하고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추진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한 바가 있으나, 그 이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998년 초부터 정부의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아 북측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협의를 재개하였다. 1998년 6월16일~23일간 정주영 명예회장 일행은 북한을 방문,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관광문제를 협의하고 1998년 6월22일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대-아·태간 수차례의 실무협약에서 ‘관광객 신변안전보장문제’, ‘통신보장문제’, ‘공동해난구조문제’ 등이 합의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98년 9월7일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한간 최초의 관광분야 협력사업으로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남북경제 협력사업으로 승인하였다.

<표 V-1> 금강산 관광사업 협력사업 승인현황

기 업	사업내용	투자규모	복측회사	투자지역
현대상선/현대건설 /금강개발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9,583만달러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금강산지 구

자료 : 통일부, 2000,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p. 132.

현대는 금강산 관광선의 출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북측과 금강산지역의 종합개발(관광, 시설투자 및 건설사업)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여 1998년 10월 29일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새로 체결하였다(합의서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부록을 참고할 것).

개발의 성과로 1999년 2월 28일에는 온정리에 휴게소, 공연장, 상품 판매소가 마련되었다. 11월에는 온천장을 개장하였고, 장전항에는 4개의 선좌를 가진 부두를 완공하였다.

금강산 관광선은 1998년 11월 18일 첫 출항 한 이후부터 1999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278회 운항되어 약 158,628명의 관광객이 관광을 다녀왔다. 초기에는 『금강호』와 『봉래호』를 통해 매주 4회 운항하였으나, 1999년6월 10일부터 『풍악호』가 추가로 투입되면서 매일 운항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1999년 6월 21일 관광객 억류사건이 발생하여 8월 4일까지 약 45일간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으나, 꾸준히 계속되어왔다.

<표 V-2> 월별관광객현황

'98.11	'98.12	'99.1	'99.2	'99.3	'99.4	'99.5
2,957	7,597	9,985	11,852	14,339	11,429	16,134
'99.6	'99.8	'99.9	'99.10	'99.11	'99.12	총계
11,847	14,770	15,498	16,923	12,817	12,480	158,628

자료 : 통일부, 2000,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p. 135

3. 시사점

첫째, 남북한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계에서 정치적 변수가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 사례는 대부분 비정치적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교류 및 협력에 변수로 작용하는 정치적 환경의 변동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계는 가능한 정치적 요인을 제거하고,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남북한이 상호 협조하고 연계를 한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는 상호 보완을 통한 남북한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 동안 남북한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계는 지속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대부분 일회성이거나 한 두 번의 접촉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남북한간 연계의 연례화나 제도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속성이 떨어지면, 남북한간 연합단계의 추진이 어렵고, 상호 불신이 쌓일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남북한 연계는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제도화를 달성하여 상호 신뢰감의 구축과 이를 통한 타 분야에 대한 기능적 파급효과를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간 연합단계를 추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 남북한 연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 평화공존과 연합단계를 추진하는데는 우선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하다. 위 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문화·체육 등 비정치적이면서 남북한 주민의 접촉을 통한 민족적 동질감 확보에 수월성이 높은 분야일수록 연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남북한 연계는 우선 남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위 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대부분의 남북한 연계는 남한의 재정적 지원과 양보가 연계를 성사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의 경제적·재정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후에는 연계에 필요한 비용을 상호 대등하게 지출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남북한 연계도 우선은 북한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의 직업교육훈련분야는 시설과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의 부족과 열악한 수준으로 주민에 대한 양질의 직업교육훈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 및 민간 단체 등이 인적·물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에서 남북한의 당국자간 접촉을 통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위 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교류 및 협력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책임 있는 관계자간 양해각서 등 관련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즉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남북한간 연계의 제도화를 위해서 남북한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 있는 기관 및 기업의 담당자간에 접촉의 연례화와 관련 분야의 연계를 위한 협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의 선정과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위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경우 남북한 접촉에서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대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북한과 접촉 및 협력에서 북한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남북한간 연계를 대비하여 이에 관련한 전문 인력을 시급히 양성·배치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남북한간 각 분야의 연계는 우선 상호 적극적인 자세와 신뢰감의 구축이 필요하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 등 연계의 노력은 대개 그 동안 남북한간 오랜 세월의 분단과 불신에서 그 성과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분야는 비정치적이고 남북한이 상호 보완을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상호 신뢰감 구축이 필요하다. 즉 남한의 적극적인 지원과 북한의 협력적인 수용을 통한 상호 신뢰감을 쌓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 동안 남북한 연계 결과에서 이상의 시사점은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에 많은 경험적 도움이 될 것이다.

VI.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상호 연계 방안

1. 연계의 기본 목표

가. 새로운 직업의식 전환 유도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의 특성인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획경제는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직업선택이 어렵고, 지속적인 능력개발 교육훈련보다는 사상교육의 강조 등으로 노동생산성과 작업몰입 등 직업의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급변하는 직업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북한 사회의 고립이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북한 주민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 가능한 방안은 우리가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 주민의 직업의식에 대한 전환적인 발상을 유도·정착시키는 것이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 연계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나. 전반적인 직업능력 향상

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전반적인 분석에서 이론적·형식적으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현재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직업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원인은 직업기술교육과 관련한 시설 및 장비의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등 매우 포괄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남북한간 연계 및 지원은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는 정보화·신기술의 시대라고 일컫는 만큼 전 주민은 정규제도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계속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속적인 평생교육훈련은 북한 주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향상된 직업능력은 직업의 안정을 가져와 결국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동안 낙후된 직업능력으로 인하여 지역간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남북한간 연계를 통한 특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데는 정부뿐만 아니라 범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의 직업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한의 지역간 경제적 차이와 소득의 격차를 줄여서 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정책의 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 기능 및 기술 수준의 적정화

현재 북한에 진출한 기업의 경험에서 보면,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및 기능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및 기능 수준은 바로 제품의 질과 생산성 등과 연계되어 우리 진출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 연계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기술 및 기능 수준을 적정화하여 단기적으로는 북한 진출 기업의 이익 창출 효과를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및 기능 능력을 향상시켜 남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및 기능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기본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라. 남북경협에 따른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

기본적으로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는 양질의 산업인력 양성 과 원활한 수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질의 산업 인력은 바로 북한 진출기업의 성장과 이익창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각종 통계비교와 분석 결과를 보면, 북한의 산업과 노동력 수준은 상당히 낙후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북한 진출 기업 및 북한 지역에 있는 산업시설에 양질의 산업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정책목표가 달성된다면, 통일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연계 목표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 인구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고, 현지주민을 현지에서 교육훈련 시켜 현지의 산업을 발전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계의 기본 방향

가. 인도적 차원의 북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식량부족 등과 같이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동질성에 터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남북한 연계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근로자들은 높은 수준의 기술 및 기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직업교육훈련의 부족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점은 북한 진출 기업의 관계자 및 탈북자들의 증언 등에서 알 수 있다(강일규, 2002). 따라서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의 기본방향은 인도적 차원의 연계 지원이 되어야 한다.

나. 정치적 성향의 배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는 기본적으로 비정치적 내용으로 남북한이 최대의 정치적 접근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중국의 경우도 초기의 교류 및 협력은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면서 상

호 체제와 입장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는 비정치적인 영역임을 강조하고, 이 영역에 대한 지원과 교류 및 협력의 당위성·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치적 교류 및 협력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그 파급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연계의 주체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여 점차적으로 연계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다양성과 연계성의 존중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 및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호 다양성과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남북한간 연계와 지원 및 협력의 주체는 정부 혹은 기업 등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 다양한 방법,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도록 상호 인정해야 한다.

또한 관련분야와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개발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제·무역·교육·문화·예술·체육분야 등과 상호 연계하여 지원 및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남북한 인력의 구조적·질적 발전을 통한 보완효과 극대화

직업교육훈련은 사회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사회 변동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물결과 사조가 유입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떤 사회변동이 유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를 통한 남북한 인적자원개발의 기본 방향은 남북한 전체의 직업교육훈련을 구조적·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

로 삼고, 상호 보완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발전·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단계별 지원 연계 전략

가. 1단계 -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를 위한 상호 교류의 추진과 활성화

북한에 대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지원 연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직업교육훈련에 관련한 북한의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한 북한의 자료와 정보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파악하고, 상호 협력하여 지원 가능한 분야와 영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관계자 접촉을 통한 지속적인 논의의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결국 1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한 지속적인 지원과 연계를 통한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나. 2단계 -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1단계 과정을 거친 후, 북한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교사 인력이나 자문단 등을 파견하고, 북한의 교사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지원을 한다. 또한 북한의 교육훈련생들을 초청하여 교육훈련 기관에서 직접 실시한다.

물적분야에서는 북한지역의 교육훈련기관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신설 혹은 기자재 및 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지원·보급한다.

한편 2단계에서 남북한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실질적인 연계를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인 연계 발전 방안을 상호 논의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다. 3단계 - 북한 인적자원의 활용과 관련 제도의 정착화

이상과 같이 1·2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3단계에서 남북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정착시키고, 양성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남북한이 상호 협력한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축을 같이하여 연해주와 연변지역의 한민족을 포함하는 동북아 한민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

4.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연계의 주요 방안과 내용

가. 직업교육훈련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및 개최의 정례화

앞에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제도 및 정책의 변동을 살펴 본바와 같이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제도와 정책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책적인 측면은 아래 표와 같이 상호 상반되는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의 증진과 변동에 따라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아래 특성들은 각각 국내적으로 적용하고, 상호 공감할 수 있는 협력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정책에서 남북한의 당국자간 접촉을 정례화하고, 관련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동시에 상호 협정을 체결하여 정책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부터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 진출기업에 대한 북한 인력의 공급을 위한 상호 공동 투자를

통한 인력양성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양성된 인력은 현지 기업에 공급하고, 특별히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1>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비교

구분 내용	북한	남한
정책이념	사회주의 직업교육이념, 주체사상, 전체주의, 평등성	자본주의 직업교육이념, 자유민주사상, 다원주의, 형평성
정책과정	폐쇄적, 고정적, 단기적, 강제적	개방적, 탄력적, 장단기적, 자율적
정책목표	사회주의 건설, 집단의 실적 향상	직업의 안정, 복지사회 건설, 개인의 능력향상
정책환경	변수의 단순성, 환경의 소극적 수용	변수의 복잡성, 환경의 적극적 수용
정책결정	일인 혹은 소수(비합법적, 정치적)	다단계(합법적, 합목적적)
정책추진	급진적, 공급자 중심, 기계적	점진적, 수요자 중심, 탄력적
정책내용	교육훈련의 일치, 이론과 실기의 결합, 정치사상의 강조,	교육과 훈련의 분리, 이론과 실기의 불균형, 신기술 강조, 수
정책형태 및 대상	공급자 위주, 대외 선전지향적 집단주의 지향, 집단 및 계급	요자 위주, 대내 내질지향적 개인주의 지향, 개인 및 계층
정책평가	주관성 지향	객관성 지향
정책방향	사회(경험)교육훈련→학교교육	학교교육→사회(경험)교육훈련

자료: 강일규(1999).

나. 직업교육훈련 대상의 상호 교류를 통한 연계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의 한 방안으로 교육훈련 대상자들을 상호 교환 방문 및 북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대상은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계층 10-20%, 고등중학교 졸업 후 취업자 30%(남성중 30%, 여성중 90%), 군 제대자 및 현역 근로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통한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만약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당국에서 당 성향 및 학력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제한된 요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기준과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을 통한 연계

앞에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기준을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점차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이 상호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기준 등을 개발할 수 있다.

남한의 직업훈련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 양성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재훈련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남북한의 연계는 초기 단계의 필요 인력과 훈련대상자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으로 제한됨에 따라 산업수요에 의해 예상되는 훈련직종과 북한체제에서의 사회진출 분화과정 등을 고려하여 양성훈련·향상훈련·주부 및 여성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보급·활용한다면 연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직업교육훈련 직종 및 훈련기간의 공동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연계

직업교육훈련의 직종 선정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여건과 향후 발전을 위한 미래 산업의 정책 등이 고려되어 선택되어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 규모와 수준은 저개발국으로 평가되며 경제구조가 극히 열악하지만, 세계의 산업발전 속도와 우리 나라의 발전 경험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개방이 지속되면 산업발전 속도가 더욱 단축되어 우리 나라의 과거 1970년부터 21C현재의 산업이 모두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도 그 준비를 위해 단순 임가공에서 단순조립·중화학공업·신기술 및 지식기반분야 이르기까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계층별

다양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장기적 발전측면에서 특히 신기술 및 지식기반분야의 인적자원개발에도 강한 희망을 표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직종은 남북경협과 제3국의 투자계획이나 현재의 북한 산업발전 수준과 입지적 발전 잠재력, 그리고 현 북한 인력의 수준이나 북한의 산업발전 계획 등이 고려된 장·단기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 주민들의 사회진출 분화과정과 연계하여 각 계층별 훈련유망 직종분야를 제시한다면, 첫째, 대학을 졸업 한 엘리트의 고 학력자는 신 산업분야 중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신기술 및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유망한 CT(Culture Technology)산업 직종분야가 검토될 수 있고, 둘째, 고등중학교 졸업 후 취업대상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성 훈련직종으로는 우리 나라 70-80년대 주력 양성직종이었던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화학분야와 건설관련 직종과 비교적 적은 기초수학능력이 요구되는 일부의 신기술 직종, 관광관련 등 서비스 직종, 남북경협 및 제3국에서의 기업유치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한 직종이 유리할 것이며, 셋째, 현직자에 대한 향상훈련은 관련분야의 신기술 직종 및 기업유치에 따른 수요직종이 유리할 것이고, 넷째, 중·장년층 및 주부여성들을 위한 훈련직종은 단순조립 제조업 직종 및 임가공 분야가 적합하며, 특히 많은 자원이 있는 여성인력은 봉제·완구·신발·서비스 분야 훈련이 유리할 것이다.

마. 직업 훈련 내용 및 방법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연계

북한 주민들을 위한 각 직종별 훈련내용은 과정별로 북한 주민의 수준에 맞게 별도 편성하여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현재의 북한 경제·사회·교육수준 등 광범위한 검토가 요구됨으로 현 단계에서는 남한 내에서 기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에 준용하여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훈련방법은 교육훈련을 남한 및 연변지역의 교사가 연계되어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훈련방법도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론·실기 4단계 지도 기법에 의한 모듈 훈련방법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은 훈련대상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 훈련대상에게 학습 시작 전 직업훈련에 대한 필요성 및 의욕고취, 국·영·수의 기초 수학능력 수준의 차이, 전문 용어에서 영어·한문 등의 외래어 사용, 북한의 교육훈련 방법(토론식, 문답식, 실천교육방법)과 남한의 훈련방법의 상이, 남북한 이질화된 언어 등이 학습 성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사전 준비와 해소방안을 검토한 후 교류 활성화를 통한 훈련방법이 선택되어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 훈련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연계

먼저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확보·운영 연계 방안은 현재 북한의 기존 교육훈련 시설의 활용 또는 신설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북한에 있는 기존 시설의 사용은 장비와 기자재 등이 부족하거나 낙후되어 있어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설 방안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 교육훈련시설은 대단위 공단에 인접한 위치에 설립하여 산학 협동 훈련 등이 용이토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한편 장비와 시설의 확보는 남한에서 대부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급속한 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최근 남한 내 훈련기관과 생산현장에서 일부 잉여되는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 직업교육훈련 관련 교재의 공동 개발 및 활용과 교원 연계

직업교육훈련 교재는 남북한이 상이하기 때문에 남북한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과 훈련교과내용이 남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에 의해 실시될 경우, 남한에서 기 개발된 교재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은 외국어·언어·기초학력 수준 등이 고려된 통일된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점을 고려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교원도 남북한이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북한의 유경험 교사나 남한의 유경험 교사(구조조정시 퇴직자 포함) 및 현장경력자 중 유자격자를 선발하여 연계 배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나, 학습성과를 한층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훈련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 훈련방법과 차이점, 국·영·수 및 기초수학능력의 수준차이, 전문용어의 상이, 이질화된 언어, 북한주민의 성격 특성 및 생활 습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숙지하여 준비된 교사가 참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재교육 및 훈련 후 배치(교사 또는 보조교사 형태)하는 연계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아.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훈련 주체간 연계

현 단계에서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를 담당하는 주체간 연계 방안은 첫째, 투자기업에서 필요 인력을 직접 사업 내 직업훈련으로 양성하는 방안.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지역과 상호협약에 의해 양성 지원하는 방안. 셋째, 우리 나라 직업훈련의 전문(공공훈련)기관이나 연변 교육훈련기관이 담당하는 방안. 넷째, 코이카(KOICA) 및 자선기관과 NGOs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투자하는 업체가 각기 필요 인력을 양성할 경우, 직업교육훈련 양성의 전문성 결여와 직업교육훈련 관리를 위한 비용 증가, 그리고 사업전념에 지장 초래 등이 우려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코이카 등도 전문성 결여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풍부한 직업훈련의 전문성과 훈련교재·기자재·교사 등 지원이 원활하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직업훈련의 지원 경험 등이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운영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최근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생산성 저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실시 후

경협에 의한 특수 지역이나 연변지역의 남한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훈련의 성과와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 자격의 상호 연계

남북한 자격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은 응시자격과 자격의 등급에 있다. 즉 북한의 경우 장기간의 현장 실무경력을 갖고 있어도 전문학교 및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준기사나 기사에 응시할 수 없다. 반면에 남한의 경우, 국가자격의 일부를 제외하고 학력과 관계없이 현장 실무경력만으로 모든 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은 정부에 의해서 법률로 동일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북한은 자격종목에 따라 다양하게 자격의 급수가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의 자격체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학력요건을 자격의 응시조건으로 고려하여 남한의 국가기술자격과 북한의 자격을 비교하면 남한의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는 북한의 기능, 준기사, 기사와 동일 수준의 자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북한에는 남한의 기술사와 기능장에 해당하는 자격은 없지만 기사 및 단일체계의 기능자격을 고려하면 각각의 최고급수에 해당하는 자격이 남한의 기술사와 기능장에 해당되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자격체제를 남한의 자격체제와 비교하였을 때 두 체제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북한자격을 남한자격과 연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남북한자격의 연계 방법으로 ①자격응시 조건상의 학력을 기준으로 북한의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 ②남한의 기술사 자격은 인정자격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해당분야의 경력은 인정하여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 ③남한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종목에 한하여 북한자격을 인정, ④단일체계의 기능자격을 전문학교 및 대학 졸업시 취득하는 등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남한자격의 등급(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으로 인정, ⑤남한 기능장 자격의 인정은 8단계 이상의 기능급수가 있는 북한 기능자격의 최고위 등급(7~8급)에 한하여 인정, ⑥단일급수의 기사, 준기사를 제외한 무급 자격은 남한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으로 인

정하지 않고 이들 등급에 대한 응시자격을 부여, ⑦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의 인정은 북한자격의 응시자격과 검정내용의 비교를 통해 해당 정부부처로부터 인정받는 등의 연계방법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북한주민의 자격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교육훈련 및 검정을 면제하고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 ②단기 교육 훈련 이수 후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 ③검정을 면제하고 자격을 인정한 후 일정시간의 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는 등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방안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은 일정 기간의 자격관련 교육훈련 이수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훈련 내용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실시된 자격과 관련된 모든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제3안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기간에 대한 결정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1999.6.15. 개정 예규 제425호)』의 제14조 ‘훈련기준의 내용’과 제 16조 ‘훈련과정별 훈련기간 및 시간’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자격종목별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VII.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는 북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한 연계가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남북한 주민 모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참여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재정적인 측면은 지원과 연계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의 결과,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는 주체적 차원에서 크게 기관과 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과 단체는 남북한 연계의 주체가 됨으로 이들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정부, 기업, 종교단체, NGOs, 국제기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연계를 위해서 어느 장소를 사용하느냐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즉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가하는 문제이다. 물론 북한이나 남한의 생산현장이나 교육훈련기관이 가장 좋겠지만, 현재 남북관계 및 기타 변수로 인하여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연변지역이나 개성공단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휴전선지역을 통한 연계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험적 관점에서 보면, 인적차원의 연계는 북한의 경우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계층 10-20%, 고등중학교 졸업 후 취업자 30%(남성 중 30%, 여성 중 90%), 군 제대자 및 현역 근로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직업교육훈련은 북한 당국에서 당성향 등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제한된 요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훈련과정 차원의 연계는 남한의 직업훈련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해 양성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재훈련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산업수요에 의해 예상되는 훈련직종과 북한체제에서의

사회진출 분화과정 등을 고려하여 양성훈련·향상훈련·주부 및 여성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연계 직종 선정은 북한의 개방 속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 북한의 개방 수준에 따라 우리 나라의 과거 1970년부터 21C 현재의 산업이 모두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도 그 준비를 위해 단순 임가공에서 단순조립·중화학 공업·신기술 및 지식기반분야 이르기까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계층별 다양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특히 신기술 및 지식기반분야의 인적자원개발에도 강한 희망을 표할 것으로 보여진다. 남북한 연계를 위한 각 직종별 교육훈련내용은 북한 수준에 맞게 별도로 과정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현재의 북한 경제·사회·교육수준 등 광범위한 연구 검토가 요구됨으로 현 단계에서는 남한 내에서 기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에 준용하여 운용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훈련방법 차원의 연계는 교육훈련을 남한 교사가 주체가 되어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훈련방법도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론, 실기 4단계 지도 기법에 의한 모든 훈련방법이 유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 장비분야의 연계는 북한의 인력양성을 위한 기존 장비나 북한 내 생산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북한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관련 장비가 매우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경협(또는 제3국)에 의해 신설되는 현장의 장비와 크게 상이할 것으로 보아 남한에서 대부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최근 남한 내 훈련기관과 생산현장에서 일부 잉여되는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연계의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교재는 훈련교과내용이 남한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에 의해 실시될 것이므로 남한에서 기 개발된 교재활용이 적절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남북한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외국어·언어·기초학력 수준 등이 고려된 교재로 재편되었을 때 훈련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교사의 연계는 현재 남한의 유경험 교사(구조조정 시 퇴직자 포함) 및 현장경력자 중 유자격자를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나, 학습성과를 한층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훈련 방법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 훈련방법과 차이점, 국·영·수 및 기초수학능력의 수준차이, 전문용어의 상이, 이질화된 언어, 북한주민의 성격 특성 및 생활 습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숙지하여 준비된 교사가 참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재교육 및 훈련 후 배치(교사 또는 보조교사 형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한 연계는 북한 당국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북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은 체제의 안정을 우려하여 모든 교육훈련에서 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 연계는 기술·기능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직업의식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남북한간 관련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논의를 마치면서 언급하고 싶은 점은 이 분야에 대한 북한의 자료와 정보의 부족 등으로 남북한간 연계 방안의 실효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좀더 북한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환과 교류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의 도출이 요구된다.

2. 정책 제언

가. 전담기구의 설립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남북한간 교류 및 협력과 지원 등 연계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 전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남북문제는 거의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고, 각 부처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전담기구가 없어 업무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등에 전담 팀을 조직하는 방안과 반관반민 형태의 기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반관반민 형태의 조직은 대만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양안관계에서 이런 형태의 조직으로 많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남북관계를 반영하여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비정치성과 남북경

협에서 우리 기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나. 전문인력의 양성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연계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우선 남북한간 연계에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할 전문가의 양성과 실제로 북한 인력 양성에 투입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담당 전문 교원의 양성이 필요하다. 행정 담당 전문 인력은 북한학 개설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이론과 실무를 익히도록 한다. 한편 북한 교육훈련생을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은 현재 남한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서 퇴직자 및 명예퇴직자나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들 중에서 지원자를 선발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여 북한 교육훈련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이 북한에 파견될 경우, 인센티브를 주어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다. 재정 확보

남북한 연계와 지원에 필요한 재정 확보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은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특히 대북정책에서 지원 재정의 확보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항목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는 당분간 남한의 지원이 주를 이룰 것임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의 마련은 조성의 용이성, 실현가능성 등으로 고려하여 볼 때, ①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조성 ②국제기구로부터 재정지원유도 ③기업의 출연기금 ④NGO의 모금 ⑤통일비용을 통한 조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개별적인 기금의 조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조성: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가 기타 민간출연금으로 조성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9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와 남북간의 대화 분위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의 구성을 보면 2001년 현재 총 1조 7,243억원이 조성되었는데, 정부출연이 55.4%, 민간출연 0.1%으로 대부분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²⁰⁾.

따라서 북한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같은 북한 산업구조 및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사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지역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과 국내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의 일부를 북한근로자 직업훈련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적 저항이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 다른 활용가능 기금으로는 대외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자금 등이 있다.

둘째,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북한의 낙후된 기술 수준을 개선하여 노동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현재 북한이 처한 경제난국을 극복케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근로자 직업훈련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UNDP, UNICEF, ILO, ADB, IBRD 및 IMF 등으로부터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지원을 유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로부터 차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이 전제조건이다²¹⁾.

20)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한되어왔다. 이는 대북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정부가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협에 관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 진출 중소기업이 제3국 수출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내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하여 과다한 물류비, 당국간 제도적 보완장치의 미비 등으로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전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지원범위는 소요재원의 50%이내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출연기금을 들 수 있다. 대북진출 희망기업 또는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만의 경우와 같이 기금 또는 재단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일차적으로 북한에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는 북한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기금조성에 보다 적극적이거나 비교적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순차적으로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분담이 필요하므로 그들에 대한 분담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담금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²²⁾.

넷째, NGO의 모금을 들 수 있다. 통일 전에 서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동독지역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매우 미온적이었다. 따라서 동독지역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서독의 교회나 기타 민간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했으며 정부는 그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는 동독과 서독의 직업훈련체계의 상이성과 그 중요성을 인지

-
- 21) 국제기구의 지원에 의한 직업훈련사업은 과거에 우리 나라가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70년대와 80년대에 국내 공공직업훈련 시설 및 교사양성 사업에 활용하였던 방법이다. 이는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여건과 매우 흡사하므로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제휴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며 동시에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적 노력은 가시화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역할이 적극성을 떨 경우 상당한 실현가능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 22) 각 기업이 직접적으로 분담금을 부담케 되는 경우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독일의 경우처럼 세제감면과 같은 혜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의 출연금을 통한 직업훈련비용의 기금조성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업의 출연에 의한 기금조성은 북한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방법, 둘째, 대만의 경우와 같은 각 기업들에 직업훈련의무제도를 도입하여 북한지역 진출기업의 경우 그 지역에서 거둔 사업실적의 일정비율을 직업훈련비용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 셋째, 북한 진출기업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에 진출한 동종의 업종과 관련한 국내 모든 기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한 분담액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후 동독지역 출신자들의 자격증을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일정한 재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북한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처럼 남북경협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 1차적으로는 종교단체나 기타 민간단체의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지역의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인도적 지원사업차원에서 접근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교단체보다는 덜 참여적이기는 하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대북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타 시민단체로는 순수민간단체 이외에 대학 등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단체의 경우 실질적인 기금의 조성에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부담하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통일비용을 통한 조성 방법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에는 경제환경의 변화가 필연적이며 이 과정에서 실직자의 급격한 증가와 노동환경의 변화 등을 겪게될 것이다. 이는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직업훈련사업은 장래 한반도의 경제적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통일 이후 독일의 경우와 같은 북한 출신 근로자들에 대한 재교육비용을 사전에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통일비용 조성을 위한 통일세(가칭)를 신설하여 북한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비용을 조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조세항목의 신설은 조세저항과 함께 사회적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목적세의 신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득세의 일부를 직업훈련비용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기금사용이 부족하면 통일채권·통일복권 등 정부차원의 조달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라. 북한 당국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관련 협정 체결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연계 추진은 우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감을 구축하고, 다음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연례화·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상호 필요성에 의해서 제도화 단계에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세부적인 실천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즉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부 및 기업체간, 직업교육훈련기관간, 혹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등 구체적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음으로서 사업이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및 직업교육훈련 관계 기관은 북한측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추진하여 어떤 형태든지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협약을 해야 할 것이다.

마. 타 분야 및 재외동포와 연계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 및 연계는 타 분야와의 연계와 재외동포의 협조가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 관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주변의 대북 정책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에서 화교들이 양안관계에 기여한 것처럼 재외동포들의 역할을 활용하면,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연변지역의 조선족 동포는 지리적·역사적으로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이 중간적 교량 역할을 한다면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남북문제에 관련한 각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와 자료의 공유는 물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협의회 설치와 재외동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는 현재 외교통상부 산하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을 활용한다면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이들을 활용하는 추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시범기관의 선정과 준비

현재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주로 북한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남북한간 연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와 상공회의소 관할의 직업훈련원, 기타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중에서 몇 개교를 선정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를 준비하도록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강일규(1999). 통일 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_____(2000).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공보경(2001). “통일논의의 이념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새로운 남북관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6차 정책포럼 발표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1세기정치학회.

김면희(19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에 대하여”, 성인교육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_____. “공장대학·어장대학·농장대학에서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성인교육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김의곤(2001). “한반도 안보와 일본의 역할”.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통일문제연구협의회 주최 제46차 학술회의 발표문.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김창진(2000). 남북한 관계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 석사논문.

남궁영(2000). “남북한 통일방안 재고찰: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경제. 10월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남승희(1996). “북한의 사회교육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교육학 연구. 34(1).

동북아평화연구회(1999).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리종찬(1996). “통신 및 야간교육과 재교육사업에 대하여”, 성인 교육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류길재(2001). “대북화해협력정책 3년 평가와 향후 과제”.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5차 정책포럼 발표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한국정치학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999). “2000년 한반도정세 전망과 정책과제”.민주평통 정책연구보고서.

_____ (2000). “2001년 한반도정세 전망과 정책과제”.민주평통 정책연구보고서.

박형중(2000).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전략 구상. 민족통일연구원.

배정호(2001). “남북화해 정착을 위한 한·미·일 공조방안”.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인하대학교 국제관계 연구소·통일문제연구협의회 주최 제46차 학술회의 발표문.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백학순(2001).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변화전망”. 새로운 남북관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6차 정책포럼 발표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1세기정치학회.

사회과학출판사편(1973).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서주석(2001). “북한의 대내외정책·전략 선택과 대응”.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5차 정책포럼 발표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한국정치학회.

손계림(1995). “북한 교육의 발전 과정과 최근의 개혁 동향: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개발. 97호와 98호.

_____(1999). “김정일의 ‘선군 정치’와 ‘수재-엘리트’ 교육 체제”. 김정일 체제 관리론의 분석과 전망.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창립 1주년 국제 학술 대회 발표 논문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1994). 아·태 통일수첩. pp. 46~52.

양영식(2001). “남북관계 상황 및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제9기 해외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보고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홍모(1983).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분석”. 안보연구. 제13호. pp. 21~38. 동국대 안보연구소.

_____(1988).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분석”. 민족지성. 4.

오승렬(2000).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관계의 전망. 제37차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이규건(1994). 북한의 대학교육 실태. 입법조사월보. 1994. 5월호.

이규환 외(1990). 북한의 고등교육 체제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상문(2001). “정상회담 후 남북경협 의 과제와 국제협력”. 국제환경 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통일 문제연구협의회 주최 제46차 학술회의 발표문.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이영복(19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육,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이은영(1993). 북한 공장대학 연구: ‘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종석(199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대북 포용정책”. 아태평화재단 주최 23회 학술회의 ‘새천년을 위한 한국사회의 비전’ 발표문.

이종오(2000).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남북관계의 전망”. 경제와 사회. 제47호. 한울.

전인영(200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새로운 남북관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6차 정책포럼 발표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1세기정치학회.

전현준(2001). “『6·15남북공동선언』 1년과 남북한 관계의 변화”.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민족 발전전략.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7차 정책포럼 발표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한국동북아학회·호남정치학회.

정성진(19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식분자대군의 양성,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정옥임(2001). “부시행정부의 정책인식·방향, 한국의 대안”.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5차 정책포럼 발표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한국정치학회.

정철영(2000). “통일을 대비한 북한 농업교육의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2).

정희태(1997).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과 경제 통합”, 남북한 사회 통합론, 서울: 삶과 꿈.

조 민. “남북연합 형성과 추진과제”. 통일연구원 2001년 협동연구 제1차 워크숍 자료집(2001. 4. 30)』.

조선중앙통신사(1984). 조선중앙연감.

_____ (1986). 조선중앙연감.

_____ (1998). 조선중앙연감.

조정윤 외(1999). 북한 이탈 주민의 취득 자격 및 경력 인정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차성수(2001). “남북평화협력 실현을 위한 NGO의 역할”. 새로운 남북 관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6차 정책포럼 발표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1세기정치학회.

통일교육원(1999). 북한 문제 이해: 실태와 변화 가능성.

통일부. 월간남북협력동향. 각월호. 통일부.

_____. 통일백서. 각호. 통일부.

_____ (1999). “남북관계 현안보고”. 통일외교위원회 보고자료.

_____ (2000).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통일연구원(19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한국교육개발원(2001). 북한 교육의 현실과 변화 전망. 2001년 북한 교육에 관한 세미나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북한 관련 신문 기사 모음.

한만길(1997). 통일 시대 북한 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한만길 외(1998). 북한 교육 현황 및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 외국문헌

Bermier. I.,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f Federalism* (London: Longmans, 1973).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s, 1966).

Ernst Haas. *Beyond the Natio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Fenwick. G., *International Law*, 4th ed. (New York: Appleton, Sterling Publishers, 1983).

Gould. W. L.,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New York: Harper, 1957).

Groom. A. J. R. and Paul Taylor. *Functionalism : Theory and Pract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1975).

Kelsen. H.,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 (New York: Holt, 1967).

Vernon·Bogdanor (ed.), *The Blackwell Encyclopaedia of Political Institutions* (Oxford: Blackwell Reference, 1987).

3. 기타

- 미디어 -

동아일보-통일네트(www.tongilnet.net)

문화일보(www.munhwa.co.kr)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조선일보-NKchosun(nk.chosun.com)

중앙일보-북한네트(nk.joins.com)

코리아스코프(www.koreascope.org)

통일뉴스(www.tongilnews.com)

한겨레신문(www.hani.co.kr)

- 주요기관 -

국가정보원(www.nis.go.kr)

남북회담사료DB(dialogue.unikorea.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www.acdpu.go.kr)

외교통상부(www.mofat.go.kr)

통계청(www.nso.go.kr)

통일부(www.unikorea.go.kr)

- 남북관련 단체 및 연구소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ifes.kyungnam.ac.kr)

국토연구원(www.krihs.re.kr)

대한무역투자공사-북한경제정보(www.kotra.co.kr/main/info/nk)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www.kcrc.or.kr)

세종연구소(www.sejong.org)

아태평화재단(www.kdjpgf.or.kr)

통일연구원(www.kinu.or.kr)

한국개발연구원-북한경제리뷰(www.kdi.re.kr)

현대경제연구원-북한정보뱅크(www.nk-infobank.com)

<부 록>

남북한 연계사업 현황

차 례

<표 1> 학술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 현황	132
<표 2> 학술분야 남북한 왕래 현황	132
<표 3> 한국학	133
<표 4> 역사학	134
<표 5> 경제학	135
<표 6> 통일안보	137
<표 7> 과학기술	139
<표 8> 언어학	140
<표 9> 문화예술분야 북한주민접촉 현황(1989.6.12~1999.12.31) ...	140
<표 10> 문화예술분야 남북공동행사 개최현황(제3국 제외)	141
<표 11> 제3국 개최 남북문화예술전 현황	142
<표 12> 뉴욕남북영화제('90.10, 뉴욕) 북한출품 작품	143
<표 13> 송년통일전통음악회('90.12,서울)	144
<표 14> 남북코리아서화전('91.5,북경)	144
<표 15> '92 통일예술축제('92.8.사할린)	145
<표 16> 종교분야 북한방문 현황	145
<표 17> 종교분야 북한주민접촉 현황	146
<표 18> 종교인 방북 내역	147
<표 19> 제3국 개최 남북종교회의 현황	150
<표 20> 체육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 현황	152
<표 21>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관련 주요 합의사항 ...	153
<표 22>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관련 주요 합의사항 ..	154
<표 23> 남북통일축구대회 행사내용	157

<표 24>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주요일정	157
<표 25>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행사내용	158
<표 26> 통일농구대회 행사내용	158
<표 27> 언론·방송·출판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 현황	159
<표 28> 언론·방송·출판분야 북한방문신청현황	159
<표 29> 관광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 현황	160
<표 30>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주요 변경 내역	160
<표 31>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	161
<표 32> 2000년 월별 이산가족 교류현황	161
<표 33> 연도별 이산가족 상봉 성사현황	162
<표 34>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내용	163
<표 35> 교류협력부속합의서 발효 후 대북제외현황	166

**<표 1> 학술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 현황
(1989.6.12~1999.12.31)**

(단위 : 건(명))

구분	신청		승인		접촉횟수	
	1989	11	(11)	10	(10)	
1990	50	(30)	47	(298)	13	(193)
1991	77	(505)	71	(498)	21	(449)
1992	71	(319)	65	(308)	10	(150)
1993	35	(190)	34	(190)	9	(50)
1994	28	(209)	22	(195)	6	(93)
1995	36	(367)	37	(339)	19	(383)
1996	44	(513)	39	(280)	21	(179)
1997	34	(414)	28	(399)	13	(321)
1998	49	(173)	46	(175)	21	(74)
1999	44	(621)	42	(314)	21	(276)
계	479	(3,623)	441	(3,006)	154	(1,976)

<표 2> 학술분야 남북한 왕래 현황

행사명	주최	참가자수	비고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세미나('91.11.25~29. 서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세미나 실행 위원회(남)	남한 : - 북한 : 15	북한 여성계인사의 최초 남한 방문
평양동북아 경제 포럼('92.4.28~5.4. 평양)	대외경제 경제 협력추진 위원회(북) 동아시아 경제 연구원(미) 평양국제회의 일본실행 위원회(일)	남한 : 18 북한 : 47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구상안에 대한 토론 및 현지 사찰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평양세미나('92.9.1~6. 평양)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세미나 실행 위원회	남한 : 30 북한 : -	남한여성계인사의 최초 북한 방문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국제 토론회('93.11.6~9. 평양)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대책 위원회 (북)	남한 : 2 북한 : 11	종군위안부 피해보상 분체 협의

<표 3> 한국학

행사명	주최	참가자수	비고
제3차 조선학 국제 학술 토론회 (‘90. 8.2~5. 오사카)	오사카 경법대 아세아 연구소 북경대 조선문화 연구소	남한 : 145 북한 : 11	북한학자 160여명 참가 예정이었으 나 11명만 참석
구주 한국학회 제15차 학술회의 (‘90. 3.22~26. 프랑스 듀르당)	구주 한국학회	남한 : 15 북한 : 3	북한은 제13차 런던회의(‘89)부터 참가
고려학 소장학자 학술토론회 (‘91.7.29~31. 연길시)	국제 고려학회, 길림성 사회과학원	남한 : 75 북한 : 12	조국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학술 토론회 제의
조선학국제 학술 토론회 (‘91.8.12~14, 연변대학)	연변대학	남한 : 45 북한 : 3	남북한 어문학 교류 및 독립운동 사 연구 제의
제4차 조선학국제 학술토론회 (‘92. 8.20~22, 북경)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 오사카까경법대 아세 아 연구소	남한 : 90 북한 : 29	국제 고려학회 가입문제 등 논의
통일을 지향하는 철학 학술회의 (‘94. 2 20~23, 북경)	국제 고려학회	남한 : 10 북한 : 4	통일에 이바지 하는 철학과 종교 에 관한 논의
코리아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학술회의 (‘96. 8. 19~20, 북경)	숭실대 사회과학 연구원 국제 고려학회 아세아 분회	남한 : 12 북한 : 12	언어, 문학, 법학, 철학, 역사, 경제, 사회복지, 지역 개발 등 8개 분과 논문발표

<표 4> 역사학

행사명	주최	참가자수	비고
아시아학회 창립총회 (’90. 3.15~18, 일본)	아시아사학회 창립 위원회	남한 : 3 북한 : 2	남북한, 일본, 중국 이 참가하는 아시 아사학회 창립
제2차 아시아 사학회 (’91.5.20~28, 길림성)	길림성 고고연구소 길림성사회과학학회	남한 : 16 북한 : 2	고구려유적 공동답사
동북아 조선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세미나 (’93.4.15~17, 연변대학)	경희대 아시아·태 평양지역연구소 연변대 동북아 정 치연구소	남한 : 11 북한 : 4	언어·풍속 등 민족문화 관련 학술토의
러시아연해주발해유적 발굴 (’93.5.27~6.13, 러시아 우스리스크시)	대륙연구소 러시아 극동역사 연구소	남한 : 3 북한 : 5	러시아 발해 유적 발굴
고구려문화 국제 학술 회의 (’93.8.11~14, 집안시)	연변대 중국조선족 연구회	남한 : 7 북한 : 5	무용총 등 집안일 대 고구려유적 답 사 및 학술회의
동아시아 역사연구 국제 학술회의 (’94.8.1~5, 상해)	재단법인 천원· 한국신학연구소 상해 사범대학	남한 : 10 북한 :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아시아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원시·고대문명의 재검토 학술회의 (’95.8.4~6, 오사카)	오사카 사범대	남한 : 10 북한 : 4	고조선사 연구 발표

<표 5> 경제학

행사명	주최	참가자수	비고
제3차 동북아 경제공동체 국제 심포지움 ('94.10.9~12 북경)	국민대 중국문제 연구소 중국 아·태 경제 연구소	남한 : 5 북한 : 3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형성에 관한 논의
동북아지역 경제 발전과 협력회의 ('91.1.28~2.1, 장춘, 연길)	길림대학	남한 : 13 북한 : 8	동북아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연구 성과 교류 등 합의
동북아경제 협력민간 협회 창립총회 ('91.7.17~19, 북경)	동북아 경제 공동체 추진연구회	남한 : 1 북한 : 2	동북아경제협력 민간협회 총본부 서울 유치 등 협의
동북아경제기술발전 국제 연토회 ('91.8.29~31, 장춘)	중국 아·태 연구회, UNDP,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남한 : 19 북한 : 3	두만강유역 동북아 경제기술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
동북아국제협력세미나 ('91.8.27~9.1, 심양)	요녕성	남한 : 21 북한 : 4	동북아지역간 경제협력방안토의
환동해경제권 국제 심포지움 ('91.11.22, 오사카)	아사히 신문사	남한 : 1 북한 : 2	남북한·일본·소련·중국의 경제 교류협 의 및 두만강 개발 계획 논의
동북아경제협력 국제 학술 회의 ('92.2.3~5, 삿포르)	NIRA, NPRARC	남한 : 2 북한 : 2	동북아경제 협력 문제 논의
동북아지역개발 비교 연구 국제 학술회의 ('92.7.10~12, 연변)	연변대 동북아 경제 연구소	남한 : 21 북한 : 5	동 회회의 연례개최 및 관계자료 교환 협의
동북아지역경제협력포럼 ('92.8.25~28, 블라디보스톡)	하와이 아·태연구소, 블라디보스톡 해양연구소	남한 : 10 북한 : 4	자유무역지대 설치 및 두만강 유역개발 등

<표 계속>

행사명	주최	참가자수	비고
동북아 경제협력 민간 협회 제2차 전체이사회 ('93.4.18~20,천진)	동북아 경제협력 민간협회	남한 : 3 북한 : 3	'황해 및 발해지역 자원 공동개발', '나진·청진, 선봉항개발', 연구과제채택 제3차이사회 평양 개최 제의
동북아 지역경제 발전과 경제 협력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 ('94.7.16~25,연길)	길림대학	남한 : 6 북한 : 4	두만강개발 현황 논의
21세기 동북아시아 지역국가간 협력방안의 전망 학술회의 ('94.8.18~19,심양)	경희대 아·태 연구소 요녕대학	남한 : 8 북한 : 5	동북아 국가간 경제 협력방안 논의
21세기 동북아 국제 학술회의 ('95.7.18~21, 심양)	경희대 아·태 연구소 요녕대학	남한 : 7 북한 : 5	21세기 동북아의 경제 발전과 도덕성에 관해서 논의
니이가타 동북아시아 경제회의 ('96.2.7~9,니이가타)	니이가타현 환일본해 경제연구소 UN	남한 : 10 북한 : 5	동북아시아 경제 교류문제 논의
발해만 경제협력의 전망 학술회의 ('96.5.8~12,심양)	사회과학원,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요녕대학	남한 : 6 북한 : 5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 및 산업시찰
니이가타 동북아 경제 회의 ('98.2.17~19,니이가타)	니이가타현 환동해 경제연구소	남한 : 6 북한 : 5	동북아시아지역 협력방안, 수송네트워크, 관광개발등 논의
제8차 동북아 경제 포럼 ('98.7.28~29,도토리)	도토리경제연구소	남한 : 31 북한 : 4	북한 임태덕 「대외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두만강 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발언

<표 6> 통일안보

행사명	주최	참가자수	비고
제2차 아세아·태평양지역 대화·평화·협력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 ('90.9.4~6 블라디보스톡)	소련 과학아카데미	남한 : 3 북한 : 5	아세아태평양 지역 정치·경제 문제 논의
동북아 안보회의 ('91.3.23~25, 북경)	미조지아공대 전략연구소 중국세계관찰 연구소	남한 : 3 북한 : 3	남북한 경제 협력 및 한반도 안보문제 논의
동북아시아 국제 회의 ('91.5.27~29, 동경)	요미우리신문사 , 조지워싱턴대학 중소연구소	남한 : 3 북한 : 4	군축문제논의
제7회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국제 학술심포지움 ('91.5.31~6.2, 동경)	환태평양연구소 아사히 신문사	남한 : 3 북한 : 4	군축문제 논의
제1차 북한·미국 학술회의 ('91.6.3~7, 하와이)	하와이대 한국 연구소	남한 : 3 북한 : 3	군축문제 논의
제8회 한반도통일문제에 관한 국제 학술심포지움 ('92.5.17~18, 동경)	환태평양연구소 아사히 신문사	남한 : 11 북한 : 3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연례적 국제 학술 심포지움
북태평양 안보협력회의 ('92.5.22~23, 오타와)	캐나다평화안보 연구소	남한 : 2 북한 : 2	아시아·태평양지역 의 군비통제 및 신뢰구축문제 논의
하와이 6개국 국제 학술회의 ('92.6.23~25, 하와이)	Pacific Forum CSIS(국제전략 문제연구소)	남한 : 2 북한 : 3	한반도 통일문제 논의
'92 상해유엔 군축회의 ('92.8.17~19, 상해)	UN 군축국	남한 : 3 북한 : 2	화학무기군축 및 다자간 안보협력 논의
제2차 한반도 통일문제심포 지움 ('93.4.16~17, 버클리대학)	버클리대 한인 학생회	남한 : 5 북한 : 4	핵·군축 등 남북통일 문제 토론

<표 계속>

행사명	주최	참가자수	비고
세계 대학생 과학평화세미나 참가 (‘94.6.21~26, 북경)	세계대학원리 연구회	남한 : 27 북한 : 20	남북한 및 각국대학생 들이 한반도를 중심 으로 한 세계평화 논의
제1차 동아시아차세대 정치인 회의 (‘94.8.3~8,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국 민전선	남한 : 7 북한 : 4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번영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남·북한 및 해외한인학자 통 일 학술회의 (‘95.7.31~8.1, 북경)	서울대 한국 정치연구소 북한사회정치 학회	남한 : 16 북한 : 6	한반도 통일의 3대 원칙, 통일의 방식, 남북한 화해·협력 등 논의
제5차 한반도 통일문제 심포지움 (‘96.4.19~22, 버클리대학)	버클리대 한인 학생회	남한 : 3 북한 : 3	통일방안, 평화협정, 남북대화 및 교류논 의
‘96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 학술 토론회 (‘96.8.5~6, 런던)	한반도 통일연 구회	남한 : 4 북한 : 3	통일문제에 대한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들의 의견 발표
남·북한 및 해외 한인학자 통일학술회의 (‘96.9.13~15, 북경)	한국통일학술 포럼, 북한사회 정치학회	남한 : 21 북한 : 9	정치화해, 평화체제 및 군사문제, 경제사회 교류 및 협력 등 논의
제1차 북한·미국학술회의 (‘91.6.3~7, 하와이)	하와이대 한국 연구소	남한 : 3 북한 : 3	군축문제논의
제8회 한반도통일문제에 관 한 학술 심포지움 (‘92.5.17~18, 동경)	환태평양연구소 아사히 신문사	남한 : 11 북한 : 3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연례 적 국제학술심포지움
북태평양 안보협력회의 (‘92.5.22~23, 오타와)	캐나다평화안 보연구소	남한 : 2 북한 : 2	아시아·태평양지역 의 군비통제 및 신뢰구축문제논의
하와이 6개국 국제 학술회의 (‘92.6.23~25, 하와이)	Pacific Forum, CSIS(국제전 략문제연구소)	남한 : 2 북한 : 3	한반도통일문제논의
‘92 상해유엔군축회의 (‘92.8.17~19, 상해)	UN군축국	남한 : 3 북한 : 2	화학무기군축 및 다자간안보협력논의

<표 7> 과학기술

행사명	주최	참가자수	비고
현대물리학 국제워크샵 ('90.7.16~18, 북경)	연변대학	남한 : 18 북한 : 5	물리학분야 학술 교류
제11차세계자동제어 연맹 총회 ('90.8.13~16, 소련)	세계자동제어연맹	남한 : 2 북한 : 3	자동제어분야학술 교류
제6차 동해 및 동지나 해 해양학술회의 ('91.4.22~27, 후쿠오카)	일본구주대학	남한 : 25 북한 : 3	해양학분야 학술 교류
'91 국제 과학기술 학 술대회 ('91.8.19~24, 연길시)	조선족과학자협회 연변과학기술협회	남한 : 87 북한 : 45	세계한민족과학기 술자공동협의체구 성, '92 국제 과학 기술 학술대회 평 양개최 등 제의
'91 전자·정보·통신 국제 학술 대회 ('91.8.21~23, 연길시)	연변대학	남한 : 44 북한 : 10	'92전자·정보·통신국 제학술회의평양개 최 제의
'94 KOREAN 컴퓨터처 리 국제 학술대회(제1차) ('94.8.5~10, 연길시)	국어정보학회 연변과학기술협회	남한 : 24 북한 : 25	한글정보처리에 관한 학술발표 및 관련 기기 전시
'95 전자·정보·통신 국제학술회의 ('95.8.7~12, 연길)	대한전자공학회 연변과학기술협회	남한 : 72 북한 : 10	전자·정보·통신분야 학술논문발표
'95 KOREAN 컴퓨터처 리 국제 학술대회(제2차) ('95.9.14~16, 연길)	국어정보학회, 북한 과학기술총동맹, 연변과학기술협회	남한 : 35 북한 : 20	컴퓨터를 이용한 우리말 정보처리 논의
'96 OREAN 컴퓨터처 리 국제학술회의(제3차) ('96.8.12~14, 연길)	국어정보학회 북한과학기술총동맹 연변과학기술협회	남한 : 28 북한 : 10	정보처리용어, 자판 배치, 자모순, 부호계 등의 분과에서 남북 한사용권고안 채택
'99 KOREAN 컴퓨터처 리국제 학술대회(제4차) ('99.8.12~14, 연길)	국어정보학회 북한과학기술총동맹 연변과학기술협회	남한 : 25 북한 : 0	최초로 남북한 합 의에 의해 정보기 술용어사전 발간

<표 8> 언어학

행사명	주최	참가자수	비고
남북한 언어비교공동연구 (’91.6~’92.6)	이현복(서울대 교수) 로길용(혜산 사범대 교수)	남한 : 북한 :	남북한의 교과서, 신문, 잡지 등에 나타나는 이질화 된 언어의 추출, 검토 비교 연구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 와 철학 학술회의 (’93.8.28~31, 북경)	국제고려학회	남한 : 10 북한 ; 7	언어, 철학분야 한국학학술회의
KOREAN 규범문제와 관련한 국제학술토론회 (’95.8.3~4, 연길)	연변대학	남한 : 10 북한 : 4	한국어 언어규범 논의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 학술회의 (’96.8.5~7, 장춘)	국립국어연구원, 북한 국어사정위원회,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남한 : 5 북한 ; 6	맞춤법, 띄어쓰기, 분장부호에 대한 남북어문규범 논의

<표 9> 문화예술분야 북한주민접촉 현황
(1989.6.12~1999.12.31)

(단위 : 건(명))

구분	신청		승인		접촉횟수	
	건	명	건	명	건	명
1989	4	(4)	3	(3)		
1990	26	(78)	20	(72)	4	(50)
1991	66	(457)	44	(417)	8	(209)
1992	39	(142)	39	(142)	2	(81)
1993	19	(71)	18	(68)	2	(21)
1994	20	(126)	17	(112)	4	(32)
1995	25	(120)	22	(110)	9	(69)
1996	13	(51)	9	(48)	3	(40)
1997	20	(101)	18	(90)	9	(74)
1998	48	(167)	47	(172)	27	(75)
1999	48	(147)	45	(139)	25	(88)
계	328	(1,464)	282	(1,373)	93	(373)

<표 10> 문화예술분야 남북공동행사 개최현황(제3국 제외)

행사명	내용
평양범민족 통일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0.10.14~10.24(10박11일) ○ 장소 : 2.8 문화회관, 동평양대극장 ○ 방북 :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황병기 등 17명 ○ 공연내용 : 평시조 『마음이 지척이면』 등 16개 목록
90송년통일 전통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0.12.8~12.13 (5박6일) ○ 장소 :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 방남 : 평양민족음악단 단장 성동춘 등 33명 ○ 공연내용 : 옥류금 독주 『도라지』 등 20여 곡목
백두에서 한라까지 렌즈로 본 조국 (남북공동사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85.5.29~6.11 ○ 장소 : 서울(5.29~6.11), 부산(9.4~9.12) ○ 참가 : 한국사진학회, 조선사진가동맹중앙위원회 ○ 공연내용 : 남북사진작가들의 작품56점(남33, 북53) 전시 * 사진집(254점 수록)발간
리틀엔젤스 평양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8.5.2~5.12 (3회 공연) ○ 장소 : 평양 봉화예술극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 방북 : 리틀엔젤스 예술단 38명 포함 66명 ○ 공연내용 : 한국전통무용, 한국가곡, 세계민요 등
윤이상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8.10.30~11.7 (3회 공연) ○ 장소 : 평양 모란봉극장, 윤이상음악당 ○ 출연 : 안동혁, 윤인숙, 안숙선, 김덕수 등 14명(남) 국립교향악단, 윤이상관현악단(북) ○ 공연내용 : ‘그네’, ‘사랑가’, ‘광주여 영원히’ 등 18개곡 연주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로저클린턴 평양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9.12.2~12.8 (12.5 1회 공연) ○ 장소 : 평양 봉화예술극장 ○ 방북 : 패티김, 최진희, 태진아, 설운도, 핑클, 잭스키스 (남) 조혜경, 김명순, 석관희, 리영옥 등(북) ○ 공연내용 : 『이별』, 『사랑의미로』, 『봉선화』 등 20곡

자료 : 통일부, 2000,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p. 78.

<표 11> 제3국 개최 남북문화예술전 현황

행사명	내용
뉴욕남북 영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0.10.10~10.14 ○ 장소 : 뉴욕 ○ 참가 : 남측 31명, 북측 8명 ○ 내용 : 남북한 영화 각 7편 시사회 개최
남북코리아 서화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1.5.27~5.29 ○ 장소 : 북경 ○ 참가 : 남측 28명, 북측 10명 ○ 내용 : 남한작품 49점, 북한작품 27점 합동전시
환동해국제 예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1.5.2~5.5 ○ 장소 : 쓰루가 ○ 참가 : 남측 52명, 북측 60명 ○ 내용 : 중앙국립관현악단과 평양음악무용단의 합동공연
'91남북통 일 전통미용 풍속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1.8.17~8.18 ○ 장소 : 사할린 ○ 참가 : 남측 120명, 북측 80명 ○ 내용 : 농악·진도북춤 등 전통예술 합동공연
'92 통일 예술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2.8.16 ○ 장소 : 사할린 ○ 참가 : 남측 78명, 북측 42명 ○ 내용 : 남한의 대중가요와 북한의 전통예술단 합동공연
코리아 통일미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3.10.12~24 ○ 장소 : 동경·오사카 ○ 참가 : 남측 16명, 북측 3명 ○ 내용 : 미술작품 101점 전시(남37점, 북30점, 조총련34점)
코리아나 사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4.9.26~9.30 ○ 장소 : 연길 ○ 참가 : 남측 5명, 북측 3명 ○ 내용 : 사진작품 216점 전시 (남 85점, 북 85점, 조선족 교포 46점)

<표 계속>

행사명	내용
제4회 아태지구 분재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7년 ○ 내용 : 남측 3명, 북측 4명이 참가, 분재 전시
금강산 미술기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8.8.25~9.1 ○ 장소 : 금강산 ○ 참가 : 도서출판 학교재 ○ 내용 : 금강산 미술기행
제1차 원로화가 북녘산하기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9.8.31~9.6 ○ 참가 : 일본 「코리아평화미술전」참가 한국화가 ○ 내용 : 북한 방문, 전시회 개최
국제한민족 사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7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 ○ 장소 : 중국 ○ 참가 : 한국사진학회 ○ 내용 : 사진전시, 사진집 발간
공동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8년 ○ 장소 : 서울, 부산 ○ 내용 : 남북 사진작가 56점(남 33점, 북 53점) 전시, 총 254점 풍경사진을 담은 사진집 발간

자료 : 통일부, 2000,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p. 79.

<표 12> 뉴욕남북영화제('90.10, 뉴욕) 북한출품 작품

제목	감독	출연
도라지꽃	조경순	오미란·김령조
달매와 범달이	윤룡규	김용숙·조명선
조선아 달려라	박승복	김 철·조경숙
우리는 묘향산에서 만났다	오병호	홍영희·김 원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	엄길선	리인문·로복실

<표 13> 송년통일전통음악회('90.12,서울)

구분	연주곡명	노래 및 연주
여성민요독창 여성민요독창 남성민요독창 남성민요독창 여성저음독창 여성민요3중창	평북 영변가, 바다의노래 양산도, 능수버들 산천가, 영천아리랑 배따라기 통일의 길 신고산타령	백영희, 김진명 배윤희 이성훈 김진명 승영희 배윤희, 장애란, 백 순희
여성민요5중창 혼성민요5중창 혼성민요2중창 혼성민요제창 가야금독주와 병창 소합창 단소독주 옥류금독주	민요연곡 회양닐리리 “사랑가”(민족가곡<춘향전>중에서) 정방산성가, 박연폭포, 자진난봉가 옹헤야 우리소원 중모리, 안땅 도라지	승영희 외 4명 이성훈 외 4명 이순덕, 이성훈 김진명, 김관보 이순화 - 진동환 김길화

<표 14> 남북코리아서화전('91.5,북경)

분야	작가	작품명
유화	정관철(인민예술가) 장재식 김권봉 황태민 홍성철(인민예술가) 정영화 최중명, 김영제 한상인	홍원풍경 풍양회 강가에서 북포태산 봄 소나기 총석정 저녁 정오 국화
조선화	오영성 리석호 리석호 정종요(인민예술가) 김상호(인민예술가) 문화춘(공훈예술가) 김정원 리석호 정창몽(인민예술가) 리석호 안상목 정창목(인민예술가) 황 민 지승석	장미 소나무 구룡연 모란 들끓는 건설장의 밤 송도의 파도 묘향산 상원암 부영이 장벽을 넘어오는 철새 목단 일요일 분계선의 옛집터 위면암 칠성문
서예	리형규 렴태경 오광섭 최원삼(공훈예술가) 최원삼(공훈예술가)	통일 통일대하 별 노도 눈꽃

<표 15> '92 통일예술축제('92.8.사할린)

구분	작가
여성4중창	반갑습니다
남성독창(리성훈)	풍년가, 벌목부의 노래
여성독창(림화영)	기러기때 나르네
혼성4중창	3대 사랑가
남성중음독창(오경철)	소방울노래, 군밤타령
여성3중창과 혼성6중창	통일그네 쌍그네, 영천아리랑
여성민요독창	모란봉, 양산도
혼성합창	내나라 제일로 좋아
무용	손북춤 10인무
무용	3인무(남2명, 여1명)
무용	키춤 8인무
무용	쟁강춤 8인무
가야금독주(정선영)	옹헤야

<표 16> 종교분야 북한방문 현황
(1989.6.12~1999.12.31)

(단위 : 건(명))

구분	신청		승인		접촉횟수	
	건	명	건	명	건	명
1989	1	(1)	1	(1)	1	(1)
1990						
1991	1	(1)	1	(1)	1	(1)
1992	1	(1)	1	(1)	1	(1)
1993						
1994						
1995	6	(16)	3	(6)	2	(2)
1996	1	(1)	1	(1)		
1997	6	(19)	4	(11)	3	(4)
1998	20	(98)	18	(82)	10	(51)
1999	11	(45)	10	(42)	9	(39)
계	47	(182)	39	(145)	27	(99)

**<표 17> 종교분야 북한주민접촉 현황
(1989.6.12~1999.12.31)**

(단위 : 건(명))

구분	신청		승인		접촉횟수	
	건	명	건	명	건	명
1989	10	(10)	5	(5)		
1990	16	(97)	15	(96)	2	(51)
1991	40	(155)	37	(142)	13	(86)
1992	38	(140)	30	(117)	7	(54)
1993	19	(65)	16	(62)	1	(1)
1994	23	(97)	16	(85)	4	(68)
1995	42	(213)	33	(187)	12	(94)
1996	26	(249)	16	(203)	7	(133)
1997	30	(141)	26	(134)	13	(90)
1998	55	(214)	51	(202)	35	(150)
1999	32	(222)	32	(218)	20	(148)
계	331	(1,603)	277	(1,451)	114	(875)

<표 18> 종교인 방북 내역

방북자	방문기간	방문목적
대한제일기독교총회 총무 이대경목사	1989.7.29~8.12 (평양)	북한기독교회 관계자 면담 및 교회방문
소망교회 곽선희목사	1991.9.24~10.1 (평양)	평양 봉수교회설교 및 북한설교활동
KNCC 총무 권호경목사	1992.1.7~1.13 (평양)	남북기독교간 교류협력 방안협의
소망교회 곽선희목사	1995.8.22~8.29 (평양)	남북교회 선교 및 협력 방안협의
성베네딕도수도원 김상진신부 등 4명	1995.11.25~11.29 (평양)	나진·선봉지역 병원건립 등 의료선교가능성타진 및 현지사찰
은성교회 정봉규목사	1995.11.25~12.5 (평양)	남북교회선교 및 협력 방안논의
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창열	1997.6.14~6.21 (평양)	평양통일교회 건립예정 지역답사
KNCC 총무 김동완, 김영주목사	1997.9.23~9.30 (평양)	남북교회간의 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
활빈교회-두레마을 대표 김진홍목사	1997.11.18~11.19 (나진,선봉)	라진·선봉지역 식료품 공장 경영 및 두레마을 설립문제 협의
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최창무 주교, 오태순, 이기현신부(8명)	1998.5.15~5.22 (평양,금강산) * 장덕필 신부 방북 포기	평양 장충성당 미사집전 및 북한 내 성당복원 희망지역 답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 연회 김창수(감독), 은희곤(총무), 서형원, 김광원(목사4명)	1998.5.9~5.16 (평양)	교회복원예정지 실태조사 및 남북교회간 선교협력 방안 모색
KNCC(승인:6명, 철회:2명) - 목사(5명):김동완, 민병익, 박종화, 홍정길, 김상근 - 신부:이재정(통일위원장)	1998.5.26~6.2 (평양 등)	남북교회지도자 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

<표 계속>

방북자	방문기간	방문목적
광성교회 당회장 김창인, 안현수	1998.6.9~6.16 (평양, 금강산 등)	북한교회실태 파악 및 선교 협력방안 모색
민족통일선교협회 신현균(이사장), 구본홍, 이태희, 김기울(목사4명)	1998.6.30~7.7 (평양, 금강산 등)	북한교회 설교 및 북한 교회 실태 파악 등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11명,승인:9명,철회:2명) - 문규현(회장), 함세웅, 김 승훈, 전종훈, 박승원, 안 충석, 문정현, 리수현, 박 기호	1998.8.11~8.17 (평양 등)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주년 기념미사 참석 등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 (목사8명) - 은희곤, 김용주, 이호문, 전택수	1998.9.26~10.3 (평양, 원산 등)	북한지역 교회복원 예정 지역 답사 및 북한교회 실체 파악
KNCC(승인:8명,방북:7명) - 목사(5명):김동완, 이병돈, 박기수, 이동춘, 백중선 - 기타(2명):이성덕, 김희원	1998.9.22~9.29 (평양, 금강산 등)	남북교회간의 교류와 협력도모
광성교회(2명) - 김창인, 안현수	1998.11.17~11.21 (평양, 묘향산 등)	북한교회 실태 파악 및 선교 협력문제 논의
KCRP(2명) - 김몽은 신부(회장), 변진홍	1998.11.21~11.28 (평양, 묘향산 등)	남북 종교인 교류협력 문제 및 대북지원 물품 분배결과 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 (목사6명) - 김명기(감독), 은희곤(총 무), 황선용, 이승호, 한 영제, 김국도	1999.5.18~5.25 (평양, 묘향산 등)	북한교회 실태 파악 등 남북교회 교류 협력방안 모색

<표 계속>

방북자	방문기간	방문목적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 스님(3명):최지선, 오성조 한명진(방북포기) - 기타(2명):유정희, 김기창	1999.6.8~15 (평양 등)	북한불교실태 파악 등 남북한 불교교류문제 협의
대한 불교진각종(4명) - 김선관(통리원장), 김상균 (총무부장), 박종두(종의 회의장), 장지현 정사	1999.9.18~25 (평양, 묘향산 등)	북한불교실태 파악 등 남북한 불교교류방안 모색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 (목사6명) - 은희곤(총무), 조인익, 김연 수, 도건일, 서철, 임태중	1999.9.21~28 (평양, 묘향산, 신천)	북한불교실태 파악 등 남북한 불교교류협력방안 모색

<표 19> 제3국 개최 남북종교회의 현황

행사명	내용
제1차 기독교자 동경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0.7.10~7.13 ○ 장소 : 동경 ○ 참가 : 남측 35명, 북측 5명 ○ 내용 : 평화통일과 남북기독교 교류협의
제2차 기독교자 동경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1.7.9~7.12 ○ 장소 : 동경 ○ 참가 : 남측 24명, 북측 5명 ○ 내용 : 평화통일과 남북기독교 교류협의
아시아 종교인평화회의 제4차 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1.10.28~11.2 ○ 장소 : 카트만두 ○ 참가 : 남측 11명, 북측 2명 ○ 내용 : 아시아종교인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공동방안논의
남북한 불교대표자 연석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1.10.28~11.4 ○ 장소 : 로스엔젤레스 관음사 ○ 참가 : 남측 22명, 북측 4명 ○ 내용 : 남북불교 교류협의
제3차 기독교자 동경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2.10.20~10.22 ○ 장소 : 동경 ○ 참가 : 남측 36명, 북측 5명 ○ 내용 : 평화통일과 남북기독교 교류협의
제4차 기독교자 동경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4.5.31~6.2 ○ 장소 : 동경 ○ 참가 : 남측 63명, 북측 5명 ○ 내용 : 평화통일과 남북기독교 교류협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국제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5.3.28~3.31 ○ 장소 : 교토 ○ 참가 : 남측 31명, 북측 5명 ○ 내용 : 8.15 판문점 공동예배논의

<표 계속>

행사명	내용
미주평화통일 회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5.6.26~6.29 ○ 장소 : 로스엔젤레스 ○ 참가 : 남측 9명, 북측 7명 ○ 내용 : 평화통일 회년예배 및 통일세미나
광복 50주년기념 미주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5.7.19~7.24 ○ 장소 : 신시네티 ○ 참가 : 남측 35명, 북측 9명 ○ 내용 : 평화통일 회년예배 및 음악회개최
남·북·해외 천주교인 뉴욕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5.10.27~11.2 ○ 장소 : 뉴저지 ○ 참가 : 남측 3명, 북측 5명 ○ 내용 : 남북 천주교 교류협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국제 에큐메니칼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6.1.29~2.2 ○ 장소 : 마카오 ○ 참가 : 남측 18명, 북측 5명 ○ 내용 : 평화통일, 대북 수재지원방안 논의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6.2.26~2.29 ○ 장소 : 북경 ○ 참가 : 남측 19명, 북측 8명 ○ 내용 : 범종교단 차원의 남북종교행사로서 남북종교인들의 역할 논의
제5차 기독교자 동경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6.6.5~6.7 ○ 장소 : 동경 ○ 참가 : 남측 67명, 북측 5명 ○ 내용 : 평화통일과 남북기독교 교류협의
남·북·미 교회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7.3.17~3.19 ○ 장소 : 뉴욕 ○ 참가 : 남측 25명, 북측 5명 ○ 내용 : 남북교회간 교류협력방안 협의

<표 계속>

행사명	내용
통일과 나눔 남북교회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8.3.16~3.18 ○ 장소 : 호주 시드니 ○ 참가 : 남측 17명, 북측 54 ○ 내용 : 한반도의 통일 및 대북지원문제 협의
제6차 기독교 동경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8.10.8~10.10 ○ 장소 : 오사카 ○ 참가 : 남측 80여명, 북측 4명 ○ 내용 :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과 우리민족공동체의 미래협의
종교인 북경 평화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9.4.24~4.27 ○ 장소 : 북경 ○ 참가 : 남측 29명, 북측 5명 ○ 내용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 논의

자료 : 통일부, 2000,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p. 97~99.

**<표 20> 체육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 현황
(1989.6.12~1999.12.31)**

(단위 : 건(명))

구분	신청		승인		접촉횟수	
1989	1	(1)	1	(1)		
1990	15	(15)	15	(15)	1	(1)
1991	23	(89)	22	(86)	6	(46)
1992	16	(53)	13	(40)	2	(2)
1993	15	(35)	13	(32)	3	(6)
1994	11	(26)	11	(22)	2	(5)
1995	14	(15)	14	(15)	2	(2)
1996	14	(58)	14	(58)	6	(12)
1997	17	(74)	16	(71)	9	(20)
1998	36	(465)	34	(463)	13	(395)
1999	30	(96)	28	(79)	14	(29)
계	192	(927)	181	(882)	58	(518)

<표 21>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관련 주요 합의사항

- 선수선발(출전선수)
 - 남측 : 남자6명, 여자5명(11명)
 - 북측 : 남자6명, 여자5명(11명)
- 선수 훈련
 - 장소 : 일본
 - 기간 : 1991.3.26~4.23
 - 방법 : 합동훈련
- 선수단 구성
 - 단장 : 북측
 - 인원 : 남북 각 28명(총56명)
- 소요경비
 - 선수훈련 및 대회기간 중 소요되는 제 경비는 남북 합동부담
- 필요장비문제
 - 단복은 북측, 운동복 일체는 남측 준비
 - 개인지참용구(탁구라켓 등)는 남북 각각 확보
 - 공동사용용구는 공동구입

자료 : 통일부, 2000,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p. 108.

**<표 22>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관련
주요 합의사항**

- 선수선발(출전선수)
 - 선발방법 : 평가전(2회개최)
 - 선발인원 : 18명(남측9, 북측9)
 - 선발전 일시 : 제1차 1991.5.4(토) 서울,
제2차 1991.5.8(수) 평양
- 선수 훈련
 - 훈련장소 및 기간
 - 평양 강화훈련 : 1991.5.10~5.14
 - 서울 강화훈련 : 1991.5.16~5.20
 - 프랑스 강화훈련 : 1991.5.22~5.26 (남북 쌍방 추후 합의)
 - 딸롱 국제대회참가 : 1991.5.27~6.4 (남북 쌍방 추후 합의)
 - 포르투갈 강화훈련 : 1991.6.6~6.13
 - 훈련인원 : 72명(남측 36, 북측 36)
- 선수단 구성
 - 단장 : 남측
 - 부단장 : 북측
 - 인원 : 남북 각 31명(62명)
- 소요경비 부담
 - 평가전 및 강화훈련기간 중 제반 편의는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대회현지에서 소용되는 제경비는 남북이 공동으로 부담
- 결단식 및 해단식
 - 결단식 : 서울(강화훈련 직후)
 - 해단식 : 평양(대회귀환 직후)
- 필요장비등에 관한 사항
 - 단복은 북측, 운동복 및 기타 운동용품은 남측 준비
 - 평가전은 트레이닝복과 경기복은 장소제공측에서 준비

자료 : 통일부, 2000,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p. 110.

○ 남북축구 관련일지

- 1946.3.25=경평 축구대회(서울)
- 1966.3.11=북한, 66월드컵전 남북축구 교환경기 제의
- 1973.3.6=북한협회, 남북축구단일팀 구성 제의
- 1976.5.6=최초 남북축구대결, 방콕아시아청소년선수권 준결승(북한 1-0 승)
- 1976.5.6=김은하 대한축구협회장, 북한팀 서울초청제안
- 1978.12.20=남북 국가대표팀간 첫 대결 방콕아시안게임 결승 0-0 무(공동우승)
- 1990.9.28=남북체육장관, 남북축구 교환경기 합의(북경)
- 1990.10.11=제1차 남북통일축구경기 개최(평양), 남북여자대표팀 합동훈련(평양)
- 1990.10.23=제2차 남북통일축구경기 개최(서울)
- 1991.2.12=남북체육회담, 세계청소년선수권 남북단일팀 구성 파견 합의(지바)
- 1991.5.8=남북 청소년축구단일팀 1차 선발전(서울)
- 1991.5.12= " 2차선발전(평양)
- 1991.6.14=포르투갈 세계청소년선수권 남북단일팀 '코리아'출전, 8강진입
- 1996.1.15=북한, FIFA에 2002월드컵 남북공동개최 가능성 타진 공문 송부
- 1997.10.30=AFC, 북한돕기 자선경기 개최추진 결정
- 1997.11.24=아벨란제 FIFA회장, 2002월드컵 남북단일팀 출전 제안
- 1997.12.3=아벨란제 FIFA회장, 북한에 2002월드컵개최 동참 촉구하는 서한 송부
- 1998.3.9=FIFA, 98프랑스월드컵 개막식에 남북한 최고 지도자 초청
- 1998.10=북한 장웅 IOC위원, 블라터 FIFA회장 초청
- 1998.11.6=고건 서울시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기공식 때 평양시에 경평축구 부활 공식제의

1998.11.30=블라터 FIFA회장, 2002월드컵 남북분산개최 가능성
공식 인정, 99년 가을 방북 시사

1999.1~3=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방북 두차례 연기

1999.6.2=전 북한축구대표팀감독 윤명찬씨 귀순 확인

1999.6.14=정몽준 협회장, 7월 방북서 단일팀 제안할 계획 표명

1999.9.12~13=남북 노동자축구대회 개최(평양)

민노총 대표단(이갑용 위원장등 37명),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참
석차 방북(양각도 경기장)과 (김일성 경기장), 친선경기와 혼성경기
를 진행, 첫날 경기는 5:4로 북측이 승리, 둘째날은 4:4로 무승부 민
노총 대표단은 板門店을 통해 귀환

1999.11.15=정몽준 축구협회장 방북

1999.11.18=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북측에 2002년 월드컵 남북
분산개최 및 단일팀 제안

2000.2=블라터 FIFA회장, 방북 계획 북한사정으로 무기연기

2000.4=정몽준 축구협회장 아시안컵 남북단일팀 출전 제안

2000.5.16=AFC 집행위, 아시안컵 남북단일팀 출전 추진

2000.6.13~15=남북정상회담개최(평양)

○ 남북축구전적(1978~1993) 총 8전 5승 2무 1패

1. 78/12/20 방콕 아시안게임 결승 0 : 0 무
2. 80/09/28 쿠웨이트 아시안컵 준결승 2 : 1 승 정해원(2골)
3. 89/10/16 싱가포르 월드컵 최종 예선 1 : 0 승 황선홍
4. 90/07/29 중국 북경 다이너스티컵 1 : 0 승 황보관
5. 90/10/11 평양 남북통일 축구 1 : 2 패 김주성
6. 90/10/23 서울 잠실 남북통일 축구 1 : 0 승 황선홍
7. 92/08/24 중국 북경 다이너스티컵 1 : 1 무 홍명보
8. 93/10/28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3 : 0 승 김현석 고정운
하석주

〈표 23〉 남북통일축구대회 행사내용

구분	행사내용
남북통일축구대회평양경기 *남한체육인의 최초 북한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1990.10.9~13(4박5일), 5.1경기장 ○ 방문자 규모 : 총 7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단 : 이재명 단장 등 45명(임원7,남20,여18) - 인솔단 : 정동성 체육부장관 등 11명 - 보도진 : 20명 ○ 방문경로 : 북경→평양(조선민항)→판문점→서울(육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 북경 아시안게임 및 제1회 다이내스티컵 참가 후 곧바로 평양으로 출발 ○ 경기결과 : 북측 승리(2:1)
남북통일축구대회서울경기 *북한체육인의 최초 남한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1990.10.21~25(4박5일), 잠실주경기장 ○ 방문자 규모 : 총 7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단 : 이한복 단장 등 45명(임원7,남20,여18) - 인솔단 : 김유순 조선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등 11명 - 보도진 : 22명 ○ 방문경로 : 판문점 경유 ○ 경기결과 : 남측승리(1:0)

〈표 24〉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주요일정

구분	성사내용	주요일정
서울 평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 : 리명성 등 70명 ○ 방문기간 : 1991.5.6~5.9 ○ 방문경로 : 평양→판문점→서울 ○ 경기일시 및 장소 : 5.8(수)15:00~17:00, 잠실주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선수단 서울 도착 ○ 1차 평가전(5.7) ○ 북측 선수단 평양귀환(5.9)
평양 평가전 및 강화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 : 오완건 등 70명 ○ 방문기간 : 1991.5.10~16 ○ 방문경로 : 서울→판문점→평양 ○ 경기일시 및 장소 : 5.12(일).15:0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선수단 평양 이동 (5.10) ○ 2차 평가전 ○ 우리측 선수단 일부(35명) 서울 귀환(5.13)
서울 강화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 : 리명성 등 72명 ○ 방문기간 : 1991.5.17~21 ○ 방문경로 : 평양→판문점→서울 ○ 훈련장소 : 잠실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강화훈련진행(5.17~5.20) ○ 코리아축구팀 결단식 및 리스본 항발(5.21) ○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출전 (5.22~6.26)
평양 해단식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 : 장충식 등 33명 (추가 2명 포함) ○ 방문기간 : 1991.6.21~7.10 ○ 방문경로 : 서울→판문점→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귀환 및 해단식 개최 (6.28) ○ 우리측 선수단 서울귀환 및 환영식 개최(6.29)

<표 25>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행사내용

행사명	주요내용
통일염원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9.8.10~14 ○ 장소 : 양각도경기장, 김일성경기장(평양) ○ 방문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단 : 22명 - 인솔단 : 15명 ○ 방문경로 : 서울→북경→평양→관문집→서울 ○ 경기결과 : 8.12(민주노총 4: 직총 5) 8.13(연대팀 4: 연합팀 4)

<표 26> 통일농구대회 행사내용

행사명	주요내용
통일농구대회 평양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9.9.27~10.19(4박5일) ○ 방문자 규모 : 7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단 : 강명구 현대전자 부사장 등 42명(임원 17, 남 13, 여 12) - 현대관계자 : 31명 - TV 중계요원 : 6명 ○ 방문경로 : 북경경유 ○ 경기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8 혼합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 단결(104) : 단합(129) · 여자 : 단결(133) : 단합(112) - 9.29 대항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 현대(71) : 아태벼락팀(102) · 여자 : 현대(93) : 아태회오리팀(95)
통일농구대회 서울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9.12.22~12.24(3박4일) ○ 방문자 규모 : 6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단 : 송호경 아태부위원장 등 62명(선수단 38, 교예단 14, 위성중계기술자 2, 아태관계자 8) ○ 방문경로 : 북경경유 ○ 경기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3 혼합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 단결(138) : 단합(141) · 여자 : 단결(125) : 단합(133) - 12.24 대항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 현대(71) : 아태벼락팀(86) · 여자 : 현대(86) : 아태회오리팀(84)

<표 27> 언론·방송·출판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 현황
(1989.6.12~1999.12.31)

(단위 : 건(명))

구분	신청		승인		접촉횟수	
	1989	4	(32)			
1990	21	(49)	15	(43)	4	(22)
1991	31	(73)	28	(70)	13	(40)
1992	25	(148)	19	(136)	4	(24)
1993	14	(20)	10	(15)		
1994	39	(85)	36	(79)	2	(2)
1995	36	(79)	30	(58)	1	(3)
1996	17	(41)	15	(44)	3	(6)
1997	19	(43)	15	(32)	5	(11)
1998	31	(53)	30	(54)	13	(22)
1999	31	(77)	31	(72)	9	(17)
계	268	(700)	229	(603)	54	(147)

<표 28> 언론·방송·출판분야 북한방문신청현황
(1989.6.12~1999.12.31)

(단위 : 건(명))

구분	신청		승인		접촉횟수	
	1989					
1990						
1991						
1992	1	(2)	1	(2)		
1993	1	(2)	1	(2)		
1994						
1995						
1996						
1997	4	(12)	4	(12)	3	(11)
1998	12	(61)	10	(49)	10	(48)
1999	4	(9)	3	(7)	2	(5)
계	22	(86)	17	(68)	15	(63)

<표 29> 관광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 현황
(1989.6.12~1999.12.31)

(단위 : 건(명))

구분	신청		승인		접촉횟수	
	건수	명수	건수	명수	건수	명수
1989						
1990	3	(3)	3	(3)		
1991	29	(69)	25	(38)	9	(21)
1992	17	(78)	16	(85)	7	(43)
1993	22	(91)	21	(90)	2	(5)
1994	29	(77)	29	(77)	8	(10)
1995	14	(58)	11	(51)	2	(5)
1996	15	(44)	16	(48)	2	(6)
1997	11	(20)	11	(20)	4	(3)
1998	15	(43)	15	(43)	7	(23)
1999	11	(41)	11	(41)	6	(29)
계	166	(524)	158	(496)	47	(145)

<표 30>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주요 변경 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범위	○ 관광선에 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개발사업 추가 - 호텔, 해수욕장, 온천, 골프장, 스키장 등
권리내용	○ 특별한 언급 없음	○ 토지 및 시설물 이용권과 관광사업 권은 장기간 현대 측에게만 부여
대가지불	○ 4박5일 기준 관광객 1인당 300달러지급	○ 2005년 초까지 9억 4,200만달러 지급
특혜조치	○ 특혜조치 없음	○ 관세면제, 반출입 및 송금의 자유보장, 시설물 이용권 및 양도권 보장 등
투자방식	○ 합영(합영회사 설립)	○ 단독투자
투자금액	○ 9,583만 달러	○ 1억 33만달러 * 북측 투자분 인수
지역	○ 구룡연지구, 만물상지구, 삼일포 및 해금강지구	○ 삼일포지구, 해금강 및 금강산 해변지구, 온정리지구, 성북리지구, 장전만지구, 내금강지구, 통천지구, 시중호지구 등

<표 31>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

(1999.11.30, 단위 : 가족수)

구분	북한주민 접촉신청	생사확인	서신교환(통)	상봉	남북상봉
1989	1				
1990	62	35	44	6	
1991	275	127	193	11	
1992	267	132	462	19	
1993	743	221	948	12	
1994	651	135	584	11	
1995	311	104	571	17	
1996	231	96	473	18	
1997	761	164	772	61	
1998	3,726	377	469	108	1
1999.1~11	6,890	461	595	181	5
계	13,918	1,852	5,000	444	6

<표 32> 2000년 월별 이산가족 교류현황

(2000. 9, 단위 : 건)

*9월중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 : 10,141건

구분	접촉신청			생사확인			서신교환			제3국상봉			방북상봉		
	'99	2000	대비 (%)	'99	2000	대비 (%)	'99	2000	대비 (%)	'99	2000	대비 (%)	'99	2000	대비 (%)
1월	108	29	27	26	18	69	65	33	51	13	10	77	1	0	
2월	78	65	83	42	19	45	67	48	72	29	9	31	0	0	
3월	106	244	230	31	95	306	59	200	339	22	19	86	0	1	
4월	64	211	330	29	29	100	54	109	202	18	15	83	0	0	
5월	54	513	950	27	35	130	23	107	465	15	14	93	0	0	
6월	4,308	101	2	175	80	46	82	124	151	8	15	188	0	3	
7월	1,441	455	32	55	433	787	69	420	609	17	18	106	0	0	
8월	366	130	36	16	21	131	38	101	263	19	8	42	0	204	
9월	148	53	36	18	18	100	50	50	100	20	9	45	2	0	
계	6,525	1,748	27	401	394	98	457	1,142	250	141	108	77	3	208	

<표 33> 연도별 이산가족 상봉 성사현황

2000. 9. 단위(건)

연도별/ 구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2	소계 (평균)	'98 3-12	'99	2000 9	소계 (평균)	총계
민 간 차 원	생사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24	1,038 (119)	353	481	412	1,246 (482)	2,284
	서신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85	4,132 (475)	384	637	855	1,876 (726)	6,008
	제3국 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8	163 (19)	100	195	117	412 (159)	575
	방북 상봉											1	5	2	8	8
당 국 차 원	생사	65									65			336	336	401
	서신													1	1	1
	제3국 상봉	30									30			101	101	131
	방북 상봉	35									35			105	105	140

<표 34>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내용

일자	합의내용
1972.6.16 남북적십자 제20차 예비회담(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적십자 본회담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72. 7.10 남북적십자 제21차 예비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담은 쌍방 대표단을 각각 7명의 대표로 함
72. 8.29~9. 2 제1차 본회담(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 5개항의 확인·채택 ○ 7·4공동성명 정신과 적십자 인도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이산가족의 생사를 덜어주고 통일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할 것에 합의
72. 9.12~16 제2차 본회담(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로 설정된 문제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남북공동성명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정신을 철저히 구현 ○ 제3차 회담부터는 의제토의 진행 등
72.11.22~24 제4차 본회담(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사항 실행 위해 「남북적십자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설치 ○ 동기구의 기능·운영절차, 구성 등은 따로 토의 결정
74. 5.22 제8차 본회담위한 6차 대표회담(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개최에 관한 합의서 채택
74. 5.29 남북적십자 제7차 대표회의(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회의 일자·구성·운영절차 합의 등
84. 9.18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위한 절차 협의

<표 계속>

일자	합의내용
84. 9.29~10. 4 수재물자 인도·인수	○ 북한적십자사측이 보내는 물자를 대한적십자사측이 인수함(판문점·인천항·북평항에서 수재물자 인수).
84.11.20 제8차 본회담 개최 를 위한 예비접촉 (판문점)	○ 본회담 의제문제·장소·대표단 구성·상설 연락사무소 운영·운영절차 등 ○ 본회담 의제문제는 72. 6.16 제20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쌍방이 기합의한 5개항
85. 5.27~30 제8차 본회담(서울)	○ 의제 5개항 일괄적 토의 ○ 85. 8.15를 기해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실시 - 구체적 절차협의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개최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8.27 평양에서 개최
85. 8.22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 관련 남북적십자 제3차 실무대표 접촉 (판문점)	○ 방문단 규모 : 151명 - 단장 1명,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지원인원 20명 ○ 방문기간 : 9월20일~9월23일(3박4일) ○ 방문방법 : 동시교환 방문 ○ 방 문 지 : 서울·평양 ○ 공연회수 : 각2회
85.12. 2~5 제10차 본회담(서울)	○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86. 2.26 평양개최
89.10.16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판문점)	○ 방문단 교환일자(89.12. 8) 및 본회담 개최일자 (89.12.15)
89.11.21 제6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판문점)	○ 방문단 규모 - 우리측 : 고향방문단 350명, 예술공연단 150명, 취재기자 30명, 지원인원 40명, 인솔자 1명 (총 571명) - 북 측 : 고향방문단 300명, 예술공연단 200명, 취재기자 30명, 수행원 40명, 인솔자 1명 (총 571명) * 총 571명 범위 내에서 고향단, 예술단 규모를 각기 편리한대로 구성 ○ 공연내용 원칙 : 민족적인 내용, 건전한 내용,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는 내용 등 『3개원칙』

<표 계속>

일자	합의내용
92. 6.12 이산가족 노부모방문 단 및 예술단 교환방 문을 위한 제2차 실무 대표 접촉 (관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단 인솔책임자 - 우리측 : 쌍방 적십자사 부총재(부위원장) - 북 측 : 쌍방 적십자사 부위원장 「급」 ○ 방문단·사전답사반 교환시기 및 기간 - 사전답사반 : 1992. 8.16~8.18(2박3일) - 방문단 : 1992. 8.25~28(3박4일) ○ 공연내용 원칙 : 편의대로 표기 - 우리측 : 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다 - 북 측 : 비방·중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예술단 공연은 TV·라디오로 실황중계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 무산> ※ 북측이 제9차 접촉일자를 이미 쌍방이 합의한 방문단 교환실시 기간 중(8.25~28)으로 제의한 데 대해 우리측은 북측이 방문단 교환의 전제 조건을 철회할 때 직통전화를 통해 연락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차기접촉 일자에 합의를 못본 채 접촉 종료

<표 35> 교류협력부속합의서 발효 후 대북제의현황

일자	내용
92. 9.25 남북고위급회담 이동복 대변인, 기자회견	○ 제8차 고위급 회담에서 이인모 문제 해결을 위해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함 - 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설치 등
92.10. 1 및 10.5 남북고위급회담, 쌍방 대표접촉(판문점 통일각 및 평화의 집))	○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의 정례화, 판문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남북 동진호 선원 송환문제 및 이인모 송환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
92.10.21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 표 현승중 국무총리, 대북서한	○ 핵·이산가족 문제의 조속 해결, 일체의 비방·중상행위의 즉각 중지를 재촉구함
92.10.29 강영훈 「한적」총재, 대북통지문	○ 이산가족문제 실천 협의 위한 제11차 적십자 본회담 개최 제의
92.11. 2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 표 현승중 국무총리 대북전통문	○ 남북공동위원회 개최 촉구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준수 및 사리에 맞지 않는 요구 즉각 철회 촉구
93. 3.11 이인모 방북허용 발표	○ 남북간 신뢰회복, 이산가족 문제해결, 핵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를 기대함
93. 3.19 이인모 입북	○ 오전 11시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통해 입북
93. 3.26 - 29 한완상 부총리, 이산가 족 교류-핵문제 비연계 입장 표명	○ 이산가족교류 등 인도주의 영역은 핵문제와 비연계 추진 및 판문점 면회소 설치 표명
93. 4. 2 한완상 부총리 기자회견	○ UN의 대북 제재결의시 남북경협 중단의사 표명하며, 핵문제 해결전이라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하여는 대화를 가질 수 있음

<표 계속>

일자	내용
93. 5.12 김영삼 대통령, 대북성명	○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어떤 명분으로도 연기시키거나 거부해서는 안될 것임
93. 8.15 김영삼 대통령, 제48주년 광복절 경축사	○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 및 이산가족의 아픔 해소에 호응 촉구
93. 8.20 한완상 부총리, 이산가족 제3국 상봉추진 의사표명	○ 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 우편물 교환소 설치 위한 노력을 다하겠음. 판문점이 안된다면 중국 등 제3국 상봉 지원문제 검토할 것
93. 9.22 한완상 부총리, 제12회 이산가족의날 격려사	○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 실천,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해야 하며, 이것이 어려우면 제3국 상봉이라도 추진해야 함
93.10.25 김영삼 대통령, 제165차 정기국회 연설	○ 이산가족 면회소, 우편물 교환소의 판문점 설치를 비롯하여 제3국 상봉과 서신교환 추진 노력할 것
93.12. 3 강영훈 「한적」총재, 대북전통문	○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
94. 1. 5 이영덕 부총리, 기자회견	○ 이산가족문제 우선 해결 대북 촉구
94. 1.20 통일원 대변인, 논평	○ 이산가족문제 등 쌍방주민이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할 것을 촉구
94. 4.22 강영훈 「한적」총재, 대북전통문	○ 북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고 440여명의 남북된 우리측 인사들을 하루속히 송환하며, 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
94. 5. 9 강영훈 「한적」총재,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사	○ 1992. 5 기합의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교환사업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며, 적십자회담 또한 조속히 재개되어야 함.
94. 8. 9 국회의무통일위원회, 대북결의문 채택	○ 북한은 이산가족재회와 억류자 송환 등 인도적 문제를 위해 남북이 채택한 합의를 성실히 이행 실천해야 함.

<표 계속>

일자	내용
94. 8.12 강영훈 「한적」총재 성명	○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기합의한 노부모 방문단은 지체없이 교환되어야 함.
94. 8.15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49주년 경축사	○ 이산가족문제는 물론 억류자 문제의 해결에도 지체없이 협력해야 할 것임.
94. 9.14 이홍구 부총리, 제13회 이산가족의날 격려사	○ 북한이 이산가족문제 등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할 것
95. 2. 3 김덕 부총리, 대북성명	○ 이산가족들의 필요한 생활물자 등 교환방안을 쌍방이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
95. 5.15 김영삼 대통령, 국제언론인협회 제44차 총회 연설	○ 이산가족문제 해결 촉구
95. 8.12 강영훈 「한적」총재, 대북성명	○ 남북이산가족들이 서로 안부소식을 교환하고 상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야 함
95. 9.28 공로명 외무부장관, 제50차 유엔총회연설	○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산가족이 재결합할 때까지 서로의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96. 8.12 강영훈 「한적」총재, 대북성명	○ 이산가족문제 등 시급한 과제 협의 위한 쌍방 적십자 단체의 총재 또는 부총재가 어디에서든지 아무런 조건없이 회동할 것을 제의
96. 9. 2 강영훈 「한적」총재, 대북전통문	○ 이산가족 재회문제 협의를 위한 쌍방 적십자단체 총재 또는 부총재 회담에 지체없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
96. 9.17 강영훈 「한적」총재, 대북전통문	○ 북측의 출소공산주의자 송환요구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 인도주의 문제 협의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할 것을 제의
96.12.13 통일원 대변인, 성명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5주년 관련 기본합의서 성실이행 촉구

<표 계속>

일자	내용
97.10. 6 권오기 부총리, 제16회 이산가족의 날 격려사	○ 이산가족문제 해결 위한 회담재개 촉구
97.11. 8 정원식 「한적」총재, 전화통지문	○ 남북이산가족 상봉면회소 설치를 위한 남북 적십자 대표 접촉 제의
98. 2.25 김대중대통령 취임사 98. 3. 1 기념사 98. 8.15 경축사	○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상봉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북측에 촉구
98. 4.11~17 남북당국대표회담(북경)	○ 이산가족상봉면회소 설치를 적극 제의
99. 3.1 기념사	○ 출소남과간첩 등 관련, 「공정한 대화」를 통 한 논의 촉구
99. 6.22~7.3 남북차관급 당국대표회담 (북경)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